

목 차

<요 약 문>	435
I. 서 론	443
1. 연구의 목적	44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45
II.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에 대한 일반적 고찰	447
1. 의 의	447
2. 인터폴의 연혁, 법적 근거 및 지위	447
1) 연 혁	447
2) 법적 근거	450
3) 인터폴의 법적 지위	451
3.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단계 및 평가	454
4.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내용과 절차 및 한계	456
1) 내 용	456
2) 절 차	458
3) 한 계	459
5.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과 형사사법공조와의 비교	461
1) 의미상의 차이점	462
2) 주체상의 차이점	462

3) 객체상의 차이점	463
4) 절차상의 차이점	464
5) 소요기간상의 차이점	465
6) 법적 근거상의 차이점	465
6. 평 가	466
Ⅲ.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에 대한 주된 장애	469
1. 서 	469
2. 인터폴의 연성법적 체제	469
1) 연성법의 의의	469
2) 연성법적 근거	470
3) 인터폴 관련 규정의 연성법적 효력	473
4) 인터폴의 연성법 체제가 제기한 국제경찰협력의 장애	474
3. 적색수배서의 효력에 관련된 문제	475
1) 의 의	475
2) 적색수배서의 연혁 및 발행의 법적 근거	477
3) 적색수배서의 발행 절차상 신청서류의 검토 또는 심사권 여부	478
4) 적색수배서의 법적 구속력의 여부에 대한 각국의 현황	479
5) 적색수배서의 법적 구속력이 미약한 이유	481
6) ICTY, ICTR 및 ICC의 요청으로 발행된 적색수배서	489
7) 미약한 적색수배서의 효력이 제기한 국제경찰협력의 장애	491
4. 데이터보호 제도	493
1) 의 의	493
2) 데이터보호의 목적	495
3) 데이터보호의 법적 근거	496
4) 데이터의 내용	497

5) 데이터의 입력, 접근, 수정 및 삭제	505
6) 데이터보호에 관한 인터폴 사무총국과 NCB의 권리의무	508
7) 데이터보호에 관한 감독위원회	515
8) 데이터보호에 관련된 분쟁 해결	517
9) 데이터보호 제도에 대하여 유럽폴과의 비교	517
10) 느슨한 데이터보호 체제가 제기한 국제경찰협력의 장애	522
5. 평 가	523
IV.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방안	525
1. 현행 체제에서 국제경찰협력의 강화방안	525
1) 국내적 측면의 강화방안	525
2) 국제적 측면의 강화방안	534
2. 인터폴의 개혁을 통한 국제경찰협력 강화방안	540
1) 현행 체제에서 실효적 이행의 한계 및 개혁의 필요성	540
2) 개혁의 방향과 국제경찰협력의 강화	541
3. 평 가	546
V. 결 론	548
참 고 문 헌	552
부 록	562

표 목차

<표 1> 정부간기구와 비정부간기구간의 비교	453
<표 2> 국제경찰협력의 절차	459
<표 3> 범죄인인도 절차	464
<표 4> 국제형사사법공조와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비교	466
<표 5> 데이터보호에 대한 유럽폴과 인터폴간의 비교	521
<표 6> 범죄인인도와 강제퇴거의 비교	529
<표 7> 국제수배 및 해외도피사범 송환현황	530
<표 8> 대한민국이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의 현황	537

<요 약 문>

-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

21세기 국제사회의 현실은 교통·정보통신기술의 영향으로 ‘지구촌시대’, ‘정보화시대’라고 한다. 이것은 국경이 개방화된 국제사회로 진입했고, 국가간의 협력은 정치·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등 모든 방면으로 확대되어 어느 국가도 폐쇄된 형태로 생존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반면에 그에 대한 역기능으로 국경을 넘는 범죄의 흐름도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이다. 즉, 마약밀매, 총기류 밀반입, 각종 상품에 대한 밀수, 국제인신매매, 화폐·여권 위·변조, 신용카드 위·변조 및 사기, 돈세탁, 국제테러, 국제조직범죄집단의 유입, 국제사이버범죄 등이 각국의 치안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또 다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조직범죄집단의 조직원 등에 의한 범죄행위가 A국에서 행해지고 그 범죄행위자는 B국 또는 C국으로 도망가는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서 각 국가는 범죄자를 그 국가 및 국제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점과 자국의 치안유지의 확립을 위해서 타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문제에 있어서 관할권은 주권이라는 이름하에 그 국가의 국경으로 제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A국에서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범죄를 행하였다고 강하게 추정되는 자가 A국의 국경을 통과하여 B국의 영토에 막 진압하였을 때에 A국에서 그 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추적하고 있는 A국의 경찰은 형사관할권이라는 장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다. 이것은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추적하고 있었던 경찰이 갑자기 인위적인 장애물로 인하여 손발이 묶여 버리는 것과 다를바 없는 현실로서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활동은 타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例證하고 있다.

범죄진압이라는 국제적인 공통 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협력행위, 또는 형사사건에 관한 국가간의 협력행위,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협력행위를 國際刑事司法共助 또는 刑事司法共助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

의 형사사법공조는 외교채널을 통한 협력으로 ① 협의의 형사사법공조, ② 범죄인인도, ③ 형사소추의 이송, ④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이 있다. 필자는 네 종류의 형사사법공조의 범주에 국제경찰협력(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서 국가간에 형사사법공조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협력으로서 경찰당국이 주체가 되는 협력)을 포함시키고 있다. 즉 법무당국과 외무당국이 주체가 되어 외교채널을 통한 형사사법공조와 달리 인터폴채널에 의한 국제경찰협력도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목적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최광의의 형사사법공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은 외교채널에 의한 형사사법공조와 비교해 볼 때 6가지의 면(의미, 주체, 객체, 절차, 소요기간, 법적 근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국외도주 범죄인인도를 위한 수사 및 긴급구속요청,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교환 및 협력요청, 국외도주 범인 수배요청, 증거송부 및 이를 위한 증인신문 요청, 수사상 필요한 자료요청, 범죄경력 및 사실조회, 외국경찰 관계기관 방문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실종자 소재수사 요청, 각종 자료 요청, 내국인의 국외범죄에 대한 수사시 관련 수사기록 요청, 외국인 피의자 검거시 신원확인 및 범죄경력 조회, 내국거주 외국인에 대한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해외도피자 소재확인시 강제추방 또는 범죄인인도 요청 등이다. 이러한 국제경찰협력은 국가 대 국가의 一對一의 관계가 아니라 인터폴의 사무총국과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구성된 NCB란 기구를 통해서 협력을 행하고 있다. 즉 인터폴은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관할하고 있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수사요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범죄사건의 수사 등은 해당국가의 경찰요원이 행하고 필요한 정보, 자료, 국제수배요청, 각종 조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에 인터폴 사무총국과 각국의 NCB에 설치된 컴퓨터망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그 협력을 이행해 주는 間接履行體制(어느 한 국가의 경찰당국에게 위임하여 해당국의 경찰이 자국의 영역 내에서 범죄·경찰 정보수집 및 배포, 각종 조회, 수사 및 체포 등을 이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장점은 ① 회원국이 181개국이기 때문에 세계의 대부분 국가와 국제경찰협력을 행할 수 있다는 점, ② 컴퓨터망 등을 통하여 협력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된 기간이 외교채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다는 점, ③ 경찰당국 대 경찰당국간의 협력 또는 경찰당국 대 경찰당국간의 협력을 인터폴 사무총국이 중

계해 주거나 또는 필요한 협력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점 및 ④ 실무적인 측면에서 수많은 정보교환, 각종 조회 및 범죄인 강제송환 등을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반면에 그의 단점은 ① 상호주의에 의한 협력으로서 그 구속력의 정도는 각국의 국내법의 범주로 한정되고 있다는 점, 즉 ② 국내법과 국제법이 조화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경찰협력이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외교채널에 의한 협력보다 그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 ③ 정치적·군사적·종교적·인종적 성격의 범죄를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각국의 국내 정치상황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 ④ 데이터 보호제도가 선진국 및 유럽폴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또한 테러지원국을 통하여 데이터가 유출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단점은 인터폴을 통하여 실효적인 국제경찰협력의 이행을 저해하는 장애요소이다. 이러한 장애요소는 총론적인 측면에서 인터폴이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가 이루어진 대협력 단계가 아니라 중간협력의 단계에서 국제경찰협력이 이행되는 현실에서 제기되는 장애요소로 지적된다. 각론적인 측면은 연성법적 체제, 적색수배서의 효력 및 데이터보호 체제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간협력의 단계에서 실효적으로 국제경찰협력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장애 요소로 언급되고 있는 연성법 체제, 적색수배서의 효력 및 데이터보호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다.

첫째, 연성법(Soft Law)체제이다. 연성법은 서면의 형식으로 규정된 규범이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재량적이므로 그 성립조건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가국의 의사에 달려 있는 성질을 지닌 법이다. 즉 법이라는 흰 면과 非法이라는 검은 면 사이에 회색의 지역으로 존재하고 있는 부분, 법적 구속력이 완화된 형태로서 불완전한 또는 약한 구속력을 가진 법규범을 말한다.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이 연성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은 인터폴의 법적 지위의 모호성, 인터폴 헌장 제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적 범위에 의한 협력, 인터폴이 제정한 결의도 결국 권고적 성질을 지닌 규범이라는 점, ICTY·ICTR·ICC와 같은 국제재판소규정, 범죄인인도조약 및 기타 국제범죄에 관련된 다자조약 등에서 인터폴의 채널을 통하여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해도 그의 법적 구속력은 결국 각 회원국의 국내법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둘째, 적색수배서의 효력이다. 적색수배서는 수배서의 발행을 인터폴 사무총국에게 요

청한 국가가 자국의 사법기관에서 발행한 구속영장을 근거로 그 수배된 자를 기소하거나 또는 형을 복역하게 할 목적으로 각 회원국에게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하는 일종의 국제영장, 또는 각 회원국의 체포영장 또는 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배포하는 수단, 즉 범죄인인도의 목적으로 자행된 범죄에 대한 재판 또는 수배서 발행요청국에 의해서 이미 부과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배자의 긴급체포를 요청하는 수단을 말한다. 이러한 적색수배서 발행의 법적 근거는 각 회원국의 측면에서 각 회원국의 법집행기관이 발행한 구속영장 또는 법원의 판결이고, 인터폴의 측면에서 인터폴 총회의 결의이다. 적색수배서의 기재사항은 ① 수배자의 신상정보(이름, 출생지, 출생일, 국적, 육체적 특징묘사, 여권번호, 직업, 모국어 및 기타), ② 사법정보(사건개요, 공범여부, 혐의 사항, 위반된 법규정, 최대 형량, 기소의 유효기간 또는 구속영장이 만료하는 날자, 발부번호·일자·기관 및 발행 요청국, ③ 적색수배자를 체포했다면 통지해야 할 기관과 취해야 할 조치 및 ④ 수배자의 사진과 지문(채취된 경우) 등이다. 중요한 사실은 적색수배서를 근거로 현재 모든 인터폴 회원국이 이 적색수배자를 체포, 구금하여 범죄인인도 또는 추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취해야 할 조치도 전적으로 각 회원국 국내법 및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각 회원국의 재량사항에 속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터폴 사무총국은 각 회원국에게 적색수배서의 법적 지위, 즉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바 있다. 답변한 국가 110개국 중 적색수배서를 근거로 긴급인도구속이 가능한 국가가 36개국이고, 범죄인인도조약의 당사국이 발행한 적색수배서만을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는 국가가 43개국,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지 아니한 국가도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31개국이다. 국가마다 적색수배서를 바라보는 입장이 이와 같이 다른 이유는 인터폴의 연성법 체제, 국내법 범위의 국제경찰협력 이행, 중간단계의 협력의 한계, 쌍방가벌성의 원칙에 관련된 문제,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에 관련된 문제, 특정성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 형량의 문제 및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의 미비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색수배서의 효력은 범죄인인도조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범죄인인도조약의 당사국이 요청한 수배서만이 긴급구속요청서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다.

셋째, 데이터보호 제도이다. 데이터보호는 자료처리에서 발생하는 소망스럽지 못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예방조치, 또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때 적용되는 기준

및 그러한 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해서 따르는 관행이 포함된다. 문제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중인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보관중인 데이터의 유출 또는 데이터보호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터폴과 유럽폴간 데이터보호제도를 비교해 보면 크게 다섯 가지의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① 데이터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Hard Law v. Soft Law), ② 데이터의 안전조치에 관련된 규정, ③ 데이터보호를 위한 감독위원회, ④ 기밀유지에 관한 규정, ⑤ 데이터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이다. 다시 말해서, 유럽폴은 데이터보호에 관하여 철저하게 법적 시스템을 갖추어져 있는 반면에 인터폴은 느슨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방안은 인터폴의 현행체제에서 이행할 수 있는 방안과 개혁을 통한 방안으로 크게 분리할 수 있고, 현행 체제는 국내적 측면과 국제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고찰할 수 있다. 먼저 현행 체제에서 국내적 측면의 강화방안은 적색수배서의 효력을 위한 관련법 개정, 국제경찰협력의 강화를 위한 관련법의 개정, 검찰 등 여타 부서에서 KNCB에 협력관 또는 연락관의 파견, 해외주재 경찰관의 파견 증가, 국제경찰협력 관련 전문가 양성채용 및 보직순환제의 예외 검토 및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인터폴 전문가의 참여 등이다. 특히 적색수배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적색수배서가 국내법상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여 긴급체포 또는 강제추방조치를 취하기 위한 최대의 방안은 ① 형사소송법에서 200조의 3에 규정된 긴급체포 사유 또는 211조의 준현행범인의 유형에 적색수배자도 포함시키고, ② 범죄인인도법 제24조와 제26조를 개정하여 적색수배자는 대한민국의 범죄인인도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일치한다는 조건하에 범죄인인도요청서, 즉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를 명령하도록 하고, ③ 출입국관리법 제46조와 제11조에서 강제퇴거의 대상자 및 입국금지 자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차선책은 ① 위에서 언급한 범죄인인도법 제24조와 제26조를 개정하여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를 명령하도록 하고, ② 출입국관리법 제46조와 제11조에서 강제퇴거의 대상자 및 입국금지 자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최대 및 차선책의 현실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적어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서 강제퇴거의 대상자 및 입국금지 자로 적색수배자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물론 자국민이 해외에서 범죄행위후 국내로 도피한 경우에 적색수배서 발행요청국으로 추방할 수 없고, 적색수배자인 자국민

이 입국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다. 만약에 위에서 적색수배서의 효력과 관련된 법개정에 대하여 제시한 방안이 실현될 수 없다면 국제경찰협력법을 제정하여 적색수배자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국제적 측면의 강화방안은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터폴 활용규정 삽입,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확대, 인접 국가와의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조약의 체결, 인터폴은 적색수배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통일기준의 마련 등이다. 인터폴 개혁의 방향과 국제경찰협력의 강화방안은 경성법체제로의 전환, 국제수배서, 데이터보호, 통신체제, UN과의 관계 등이다.

인터폴 채널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은 외교채널에 의한 형사사법공조제도와 서로 보완하는 측면에서 국제경찰협력은 국내·국제적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관계기관간의 적극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즉 외교채널과 인터폴채널이 지니고 있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국내적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둘째, 대한민국에서 경찰의 지위가 검찰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과 관계없이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장점과 실효성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에서 긴급인도구속과 관련하여 인터폴의 채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약과 그렇지 아니한 조약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체결될 범죄인인도조약에서는 인터폴의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기존의 범죄인인도조약의 경우에 추가의정서 또는 교환문서를 통하여 인터폴 채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인인도시에 적용되는 기본원칙 중에서 쌍방가별성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이 적색수배서의 효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해외도피사범의 은신처로 알려지고 있는 러시아, 프랑스, 과테말라, 베트남, 볼리비아, 페루, 프랑스, 싱가포르 등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넷째, 경찰청은 외교부 및 법무부와 협의하여 앞으로 체결될 범죄인인도조약의 협상과정에 인터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

다면 한국 및 협상 파트너 대표들에게 인터폴 채널의 효용성에 관한 설명, 관련 자료 전달 및 협조공문을 보내고, 필요하다면 로비도 하여 인터폴 채널에 관한 규정이 삽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내에서 적색수배자가 발견되었을 때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준현행범) 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로 체포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과 범죄인인도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이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요청된다. 또한 국제경찰협력의 근거 규정인 국제형사사법 제38조, 관계당국이 적색수배자를 추방조치하거나 입국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제46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관련법의 개정이 용이하지 아니한다면 경찰청이 주체가 되어서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여섯째, 인터폴의 데이터 보호제도는 유럽폴의 제도와 비교해 볼 때 법적 근거, 안전조치, 감독위원회, 기밀유지 및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에서 매우 느슨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유럽폴 및 선진국들은 인터폴과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꺼리고 있고,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보호제도의 개선 및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곱째,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역동적인 국제협력체제(형사사법공조 및 국제경찰협력)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KNCB에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연락관 또는 협력관으로 하여금 상호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여덟째, 해외 경찰주재관은 교민들의 형사상 권익보호, 해외도피사범의 송환 업무 및 기타 협력을 위하여 파견되고 있으나 그 숫자가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비교할 때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교민들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 해외 경찰주재관을 파견하여 신속하게 국제경찰협력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요청된다.

아홉째, 국제경찰협력에 관련된 업무는 실무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언어, 국제법(국제형사법), 협상능력, 기타 등을 갖춘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특히 경찰대학에서 국제법(국제형사법) 교수가 없고, 경찰청 내에서도 국제법(국제형사법)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러시아, 일본, 중국과 체결한 약정서·협의문·합의서의 연성적 효력과 관련하여 입증된바 있다. 따라서 경찰대학뿐만 아니라 경찰청 내에서도 국제경찰협력과 관련된 국제문제를 담당하는 국제법(국제형사법) 교수 또는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물론 국제경찰협력에 관련된 전문가는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 관리의 측면에서 순환근무제에 대한 행정적 배려가 요청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1세기 국제사회의 현실은 교통·정보통신기술의 영향으로 ‘지구촌시대’, ‘정보화시대’라고 한다. 이것은 국경이 개방화된 국제사회로 진입했고, 국가간의 협력은 정치·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등 모든 방면으로 확대되어 어느 국가도 폐쇄된 형태로 생존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반면에 그에 대한 역기능으로 국경을 넘는 범죄의 흐름도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이다. 즉 마약밀매, 총기류 밀반입, 각종 상품에 대한 밀수, 국제인신매매, 화폐·여권 위·변조, 신용카드 위·변조 및 사기, 돈세탁, 국제테러, 국제조직범죄집단의 유입, 국제사이버범죄 등이 각국의 치안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또 다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조직범죄집단의 조직원 등에 의한 범죄행위가 A국에서 행해지고 그 범죄행위자는 B국 또는 C국으로 도망가는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서 각 국가는 범죄자를 그 국가 및 국제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점과 자국의 치안유지의 확립을 위해서 타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문제에 있어서 관할권은 주권이라는 이름하에 그 국가의 국경으로 제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A국에서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범죄를 행하였다고 강하게 추정되는 자가 A국의 국경을 통과하여 B국의 영토에 막 진압하였을 때에 A국에서 그 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추적하고 있는 A국의 경찰은 형사관할권이라는 장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다. 이것은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추적하고 있었던 경찰이 갑자기 인위적인 장애물로 인하여 손발이 묶여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활동은 타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범죄진압이라는 국제적인 공통 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협력행위,¹⁾ 또는

1) 박한철,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 -독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중심으로-”, 법무부 『해외파견검사연구논문

형사사건에 관한 국가간의 협력행위,²⁾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협력행위를³⁾ 國際刑事司法共助 또는 刑事司法共助라고 한다.⁴⁾ 이러한 의미의 형사사법공조는 외교채널을 통한 협력으로 ① 협의의 형사사법공조 ② 범죄인인도 ③ 형사소추의 이송 ④ 외국형사판결의 집행 및 ⑤ 국제경찰협력(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을 포함시키고 있다.⁵⁾

범무당국과 외무당국이 주체인 외교채널을 통한 형사사법공조와 달리 국제경찰협력은 경찰당국이 주체가 되어 행해지는 협력으로 세 가지 메카니즘이 있다. 즉 ① 전세계적 측면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CPO-Interpol, 이하 인터폴) ② 지역적 측면에서 유럽의 유럽폴(European Police Office : Europol)과 Schengen 경찰협력, 동남아시아의 ASEANAPOL(Asean Chiefs of National Police), 남아프리카의 SARPPCO(Southern African Regional Police Chiefs Cooperation Organization), 그리고 ③ 국가간의 측면에서 범죄인도조약에 인터폴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제경찰협력을 행하는 경우,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행하는 경우 및 신사

집』, 제6집(범무자료 제85집), 1987, p. 431.

2) 백충현, “형사사건에 관한 국제사법공조”, 『현대국제법론』 (이한기 박사 화갑논문집), 박영사, 1978, p. 197.

3) 김주덕, 『국제형법』, 도서출판 육서당, 1998, p. 82.

4) 형사사법공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 참조. 백진현·조근석,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6; 이훈규·신의기, 『범죄인인도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5; 신의기, 「형사판결집행에서의 국제공조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12; Geoff Gilbert, *Aspects of Extradition Law*(Dordrecht/ Boston/Lond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1); David McClean,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Oxford : Clarendon Press, 1992), pp. 119-171; Christine van Den Wyngaert and Guy Stessens, in John Dugard and Christine van Den Wyngaert(ed.),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Procedure*(Aldershot · Brookfield USA · Singapore · Sydney : Dartmouth, 1996), pp. 283-322; Lorna Harris and Christopher Murray,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Crime*(London : Sweet Maxwell, 2000); Ilias Bantekas, Susan Nash and Mark Mackarel, *International Criminal Law*(London · Sydney : Cavendish Publishing Limited, 2001), pp. 181-207.

5) 국제경찰협력이 국제형사사법공조에 포함되는 이유는 ① 공식적인 외교경로를 통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국제경찰협력도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 ② 인터폴의 관점에서만 볼 때 국제경찰협력은 협의의 형사사법공조와 사실상 동일한 의미이고, 범죄인인도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 범죄인 강제송환(퇴거)이 가능하다는 점, ③ Schengen acquis 등에서 경찰이 타국 영토의 일정 부분까지 추적할 수 있는 追跡權과 타국의 영역에서 범죄자의 동태를 감시할 수 있는 監視權이 인정되어 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경찰의 역할이 타국의 영토까지 외연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 등이 있기 때문이다.

협정을 체결하는 협력하는 경우로 나뉘어 진다.⁶⁾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국제수배제도와 통신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범죄정보교환, 국제수사공조, 각종 자료조회, 범죄인 강제송환 및 기타 등을 행하고 있으나 그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주된 장애 요소의 분석을 통하여 실효적인 국제경찰협력의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면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이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의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 국제형사사법공조 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경찰은 인터폴의 비효율적인 요소에 대한 개혁을 주창하여 선진 경찰로 한 걸음 더 도약하기를 기원하며, 대한민국 내에서 국제보통범죄의⁷⁾ 예방 및 진압 능력이 크게 향상되길 바란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80여년의 역사를 지닌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① 전세계적으로 181개국이 회원국이라는 점, ② 광범위한 관할범죄를 협력의 객체로 하고 있다는 점, ③ X.400과 같은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고, 좀더 신속하고 현대적인 통신 및 수배제도를 위해서 차세대 통신시스템인 GCS(Global Communication System)이 수행중에 있다는 점, ④ 긴급체

6) 인터폴, 유럽폴, Schengen 경찰협력, ASEANAPOL 및 국가간 협력 메카니즘에 대해서, 문규석, 『경찰의 지역간 협력 및 아·태폴 창설을 위한 기반 조성 방안』, 치안연구소(연구보고서 2001-10), 2001. 12, pp. 7-104 참조.

7) 모든 국제범죄자는 일정한 재판질차를 통하여 형벌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범죄의 개념도 형벌의 집행력이 행사되는 재판소를 근거로 국내재판소의 재판을 통해서 형벌이 집행될 수 있는 범죄(국제보통범죄)와 자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사실상 형벌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국제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보충적 관할권을 행사하여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범죄로 이원화하여 ICC의 물적 관할에 속하는 범죄 및 ICC의 물적 관할권의 확대를 통하여 국제형사범죄로 포함될 수 있는 기타 범죄를 국제형사범죄라고 하였다. 문규석, “국제범죄 개념의 이원론적 분류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7집(1999.12), pp. 537-586 참조; 따라서 본 논문에서 국제범죄는 국제보통범죄와 국제형사범죄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고, 국제보통범죄는 범죄의 실행행위는 물론이고, 범죄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모든 형사사법과정에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적 관련성을 가지는 범죄를 말한다.

포를 의미하는 적색수배서 및 각종 수배서가 발행되어 각 회원국에게 배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① 인터폴 설립헌장 및 일반규칙에서 각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정도가 미약한 軟性法(soft law)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② 적색수배서의 법적 효력이 미약하다는 점, ③ 느슨한 데이터보호 제도로 인하여 테러집단에게 범죄정보 유출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 등에서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II에서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통하여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III에서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인 이행에 대한 장애 요소로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 즉 연성법 체제, 미약한 적색수배서의 효력 및 느슨한 데이터보호 제도에 대하여 고찰한다. IV에서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방안을 현행 체제에서와 개혁을 통한 방법으로 나누어서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V에서 본 연구의 결론을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각종 문헌을 기초로 행하고자 한다. 이와 병행해서 대한민국 경찰청 외사업무 담당자와 면담, 인터폴에서 국제경찰협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요원과 E-mail을 통한 정보수집, 인터넷을 통한 자료조사,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및 독일 Max Plank Institute on Foreign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에서 자료조사 등으로 실증적인 연구가 되도록 시도하였다.

II.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의의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서 국가간에 형사사법 공조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협력으로서 경찰당국이 주체가 되는 협력을 의미한다.⁸⁾ 이러한 국제경찰협력은 국가 대 국가의 一對一의 관계가 아니라 인터폴의 사무총국과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구성된 NCB(National Central Bureau)란 기구를 통해서 협력을 행하고 있다. 즉 인터폴은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관할하고 있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수사요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생된 범죄사건의 수사 등은 해당국가의 경찰이 행하고, 당해 경찰이 필요한 정보, 자료, 국제수배 요청, 각종 조회 및 기타 사항은 인터폴 사무총국 및 관련 국가의 NCB에게 신속한 통신시스템(컴퓨터망, Fax, 국제전화 및 기타)을 통하여 일정한 협력을 요청한다. 그러면 사무총국과 각국의 경찰은 그 요청된 사항을 조사한 후에 그 경찰협력을 요청한 국가의 NCB에 통보해 준다. 이러한 협력을 間接履行體制라고 하며,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간접이행체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2. 인터폴의 연혁, 법적 근거 및 지위

1) 연 혁

인터폴의 연혁은 대략 네 가지 시기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시기로 태동기이다. 1914년 모나코 왕자 Albert I가 제1회 국제형사경찰회의(First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ngress)를 주최하던 시기이다. 이 회의에서 국제보통범죄의 진압을 위해서 모든 국가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범죄인 인도절차의 필요성

8) 문규석, “인터폴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국제법평론』, 1999-II(통권 제12호), 1999, p. 46.

과 표준화, 기록사무소(상설 사무국), 임시체포절차, 신속한 정보교환의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아울러 범죄의 진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각국 경찰당국간의 직접적인 연락 체제는 좀더 표준화되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1916년 8월 루마니아의 수도 Bucharest에서 제2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제2회 국제형사경찰회의는 무산되게 되었다.

둘째,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로 창설기이다. 당시 비엔나 경시청장이었고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수상도 역임한 Dr. Johann Schober가⁹⁾ 1923년 제2회 국제형사경찰회의를 개최했다. 이 때 당시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전쟁의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되고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간의 왕래도 빈번해지면서 국제보통범죄가 유럽대륙에서 다시 활개치던 시기이다. 이 회의에서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헌장에서 상임기관, 사무요원, 위원회의 본부 및 운영절차를 규정하여 國際刑事警察委員會(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mmission : ICPC)가 탄생하였다.

셋째,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인터폴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을 형성하던 형성기와 나찌 제국에 의해서 인터폴이 사유화되었던 암흑기이다. 즉 국제형사경찰위원회는 ① 1924년 국제형사기록사무소의 설립, ② 1928년 제5회 총회 이후부터 분담금의 납부, ③ 1930년 6차 총회에서 총재는 5년, 부총재는 2년의 임기로 다수결에 의한 선출, ④ Oskar Dressler에 의해서 “International Public Safety”가 영어, 불어, 독일어 및 이탈리아어로 발행, ⑤ 정확히 어느 해인지 몰라도 미국의 FBI가 수배서를 발표한 이후 곧 사무총장인 Oskar Dressler에 의해서 수배자의 목록과 논문이 “International Public Safety”에 게재되어 수배제도의 개시 및 ⑥ 1934년 범죄정보를 신속히 교환할 수 있는 무선통신망 개통 등으로 인터폴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틀을 형성하였다. 이와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되기 전과 전쟁 동안에 인터폴이 나찌 정권에 의해서 사유화되었던 암흑기이기도 하다.

넷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로 성장기이다. 인터폴은 1956년 6월 제25회 비엔나 총회에서 헌장이 개정되어 國際刑事警察委員會는 현재의 國際刑事警察機構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전하였던 시기이다. 주요 사항을 설명하면, ① 인터폴은 제27회 런던 총회에서 인구의 수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스위스 프랑을 기준으로

9) Dr. Johann Schober는 1921-1922 및 1929-1930년에 각각 오스트리아의 수상을 역임했다.

1단위(budget unit)에서 60단위 11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회원국이 사무총장과 협의해서 각 그룹을 선택함과 동시에 매 3년마다 평가하도록 했다.¹⁰⁾ ② 세계의 모든 대륙에서 집행위원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아프리카 3명, 아메리카 3명, 아시아 3명 및 유럽에서 4명의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¹¹⁾ ③ 1966년에 인터폴 사무총국을 파리교외에 있는 St. Cloud로 옮기고 1989년 11월에 다시 현재의 인터폴 본부건물이 있는 리옹(Lyons)으로 이전했다. ④ 1971년 UN경제사회이사회와 특별약정을 채택하여 협의자격(consultative status)을 가진 비정부간기구로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¹²⁾ ⑤ 1972년 5월 프랑스정부와 인터폴본부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인터폴이 법적 주체로서 조세면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인터폴의 본부, 문서, 요원 및 통신 등에 관한 특권과 면제권을 부여받았고, 이를 1984년에 개정하였다.¹³⁾ ⑥ 1949년에 문장과 기를 제정할 당시는 인터폴이 유럽지역 중심의 기구라는 지역적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가입함에 따라 세계적인 특성을 가진 旗章으로 1973년 제42회 비엔나 총회에서 바꾸었고, 인터폴의 이름과 旗章도 1980년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등록함으로써 법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였다.¹⁴⁾ ⑦ 1980년 5월에 처음으로 컴퓨터가 도입되었고, 현재는 (2002. 11) 차세대통신시스템인 GCS가 시험가동 중에 있어서 인터넷 시대에 걸 맞는 통신망의 첨단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⑧ 1984년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테러범죄도

10)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제70차 총회에서 분담금의 새로운 제도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동결의 (Resolution No AG-2001-Res-02)에 따르면, ① OECD국가는 최소한 현행 분담금을 기준으로 하고, ② 최소 분담금은 0.03%로 정했다. ③ 그 밖의 국가의 분담금은 UN분담금의 비율을 기초로 정하고, 매 3년마다 총회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 ④ 분담금의 변동폭이 5% 또는 이상인 경우에 총회에 통지하여 그 회원국의 분담금의 비율은 조정될 수 있고, ⑤ 이 제도는 2002~2006년 사이에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그 비율은 2006년에 개정된다.

11) Michael Fooner, *Interpol: Issues in World Crime and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New York and London : Plenum Press, 1989), p. 83.

12) 1971년 5월 20일(1579 (L)) UN과 인터폴간의 협력을 위한 특별약정(Special Arrang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제 5조 및 제6조 참조.

13) 1972년에 체결된 본부협정은 일반국제기구의 본부에서 인정되고 있는 정도의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고 있지 아니 하였으므로 1982년 11월 개정되어 프랑스 의회에 의해서 1984년 2월 14일 비준되었다. Fenton Bresler, *Interpol*(Auckland, Melbourne, Singapore and Toronto : Sinclair-Stevenson, 1992), p. 131, 171.

14) WIPO에 관한 자세한 것은 다음의 website 참조; <http://www.wipo.org/>

관할하게 되었고,¹⁵⁾ ICTY(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former Yugoslavia)와 ICTR(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의 소송절차 및 증거규칙 제39조 (iii) 및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규정 제87조 1항에 의해서 인터폴의 관할대상 범죄로 인도에 반한 범죄,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등이 포함되었다.¹⁶⁾ ⑨ 회원국 수는 1967년 100개국, 1991년 158개국, 현재(2002. 11)는 181개국으로 전세계의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해서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서 상호협력하고 있다.

2) 법적 근거

인터폴의 법적 근거는 인터폴 헌장과 각국의 국내법 및 국제적인 문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첫째, 인터폴은 각국의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형사경찰당국간에 최대한 협조를 보장·증진시키고, 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설립하고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⁷⁾ 또 각국은 인터폴 및 각 회원국들과의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인터폴의 활동에 충실히 참여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협조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을 근거로 NCB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¹⁸⁾ 그 외 인터폴이 제정한 규정들이 있다.¹⁹⁾

둘째, 각국의 국내법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① 대한민국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 동조에 따르면 인터폴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받거나 인터폴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 교환, 국제범죄의 동일 증명 및 자료조회, 국제범죄에 관한

15) Resolution No Agn/53/Res/7 및 Resolution No Agn/54/Res/1 참조.

16) 인터폴 총회 결의(Resolution No AGN/63/Res/9 and Resolution No AGN/66/Res/10) 참조.

17) 인터폴 헌장 제2조.

18) 인터폴 헌장 제31조 및 제32조; 대한민국의 경우 KNCB(Korea National Central Bureau)의 설치 근거는 경찰청 훈령 제301호(2000. 4. 1)인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대한민국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이다.

19) 인터폴의 통신에 관한 규정, 재정에 관한 규정, 국제경찰협력과 인터폴 문서의 통제에 관한 규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사실확인 및 그 조사 등이 이에 속한다. ② 일본의 경우 국제형사수사공조법 제17조, 스위스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9조와 제4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셋째, 국제적인 문서를 찾아보면 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제827호와 제955호에 의해서 설립된 ICTY와 ICTR의 소송절차 및 증거규칙 제39조 (iii)이다. ② 1998년 7월 17일 로마에서 채택된 ICC규정 제87조 1항 (b),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제16조 3항,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 회원국간에 체결한 범죄인인도협약 제22조 3항, 캐나다와 프랑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3조 1항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인터폴의 법적 지위

정부간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 IGO)는 “국제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자신의 의사에 따른 기관이 적어도 하나 이상이 창설되어 있는 국제적 합의에 기초한 협력의 형태”²⁰⁾ 또는 “조약이라는 형태의 자발적 합의에 의하여 결합된 국제적 실체로서 국제법상 상설적인 기관을 갖고 일정한 자치능력과 국가간의 협조능력을 가진 국제법상 법인격자”를 말한다.²¹⁾ 반면에 비정부간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는 국제적 공리를 위한 비영리 목적으로 어느 당사자의 국내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문서에 의해서 설립되어, 적어도 두 국가에서 영향력 있는 활동을 수행하며, 각 당사국의 영역에 지부와 어느 한 당사국의 본부에서 운영과 통제 등을 조건으로 하는 단체 (association), 재단(foundation) 및 다른 사적 협회(private institution) 등을 의미한다.²²⁾

정부간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① 국가간의 합의에 의한 설립조약의 체결로 탄생한다는 점, ② 회원자격이 국가라는 점, ③ 국제법상 법인격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 ④ 각국이 지불한 분담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 ⑤ ICJ(International Court of

20) Henry G. Schermers & Niels M. Blokker, *International Institutional Law*, 3rd ed., (The Hague/London/Boston : Martinus Nijhof Publishers, 1995), p. 23.

21) 김명기, 『국제법원론(상)』, 박영사, 1996, p. 290.

22) 비정부간기구의 법인격 승인에 관한 유럽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the Legal Personality of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제1조.

Justice)에게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⑥ UN헌장 제57조와 제63조를 근거로 UN과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 및 ⑦ 설립헌장 또는 본부협정의 체결에 의해서 정부간기구의 본부 및 직원이 특권과 면제 등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반면에 비정부간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① 정부간의 합의인 조약이 아니라 사인 또는 단체간의 합의로 체결된 定款과 같은 자체의 規約이라는 점, ② 회원은 국가가 아니라 사인 또는 각국의 국내법상의 법인이라는 점, ③ 국제법상의 법인격이 아니라 NGO의 본부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상 법인격을 향유하고 있고, 기타 회원국에 支部가 있는 경우에도 지부가 소재하는 국가의 국내법으로 법인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 ④ 기구의 운영은 국가가 지불한 분담금이 아니라 각 회원이 자발적으로 기여한 회비로 운영된다는 점, ⑤ 기구의 운영에 관련된 법률문제는 소재지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해결한다는 점에서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점, ⑥ UN과의 관계는 UN헌장 제71조를 근거로 약정을 체결하여 일정한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는 점, 및 ⑦ 본부는 소재지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서 설립되기 때문에 본부에 소속된 직원은 외교적인 특권과 면제권 등을 향유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점 등이다.

인터폴의 법적 지위는 정부간기구와 비정부간기구와 비교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① 인터폴헌장은 정부간에 합의한 조약이라고 볼 수 없지만 조약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점, ② 회원자격이 국가이지만 각국의 외무부 당국이 참여하지 아니하고 경찰 당국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 ③ 국제법상 명시적인 법인격에 관한 규정이 인터폴헌장 등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프랑스와 체결한 본부협정 제2조에서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④ 국가가 지불한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⑤ ICJ에게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지만 본부 소재지국인 프랑스와의 분쟁은 협의 및 중재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 ⑥ UN과의 관계 설정은 UN헌장 제71조를 근거로 비정부간기구의 Category I에 해당하는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²³⁾ ⑦ 인터폴 헌장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본부협정에서 인터폴 사무총장과 직원이 특권과 면제권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간기구와 비정부간기구의 법적 지위를 모두 누리고 있다.²⁴⁾ 다시 말해서, ① 회원자격이 국가라는 점, ② 회원국이 지불한

23) UN헌장 제71조를 근거로 경제사회이사회와 체결한 협의약정에 의한 Category I의 지위는 경제사회이 사회의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고, 잠정적 의제를 제출하거나 2000자 이내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일반적 협의지위의 자격을 말한다. 문규석, *supra note* 8, p. 57 참조.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③ 상설적인 사무국이 있다는 점, ④ 본부협정을 체결하여 특권과 면제권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 등은 외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간기구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반면에 인터폴은 ① 비정부간기구로부터 발전되어 왔다는 점, ② 인터폴 헌장은 명시적으로 회원국의 서명·비준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²⁵⁾ ③ 국제경찰협력은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조직된 NCB에 의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 ④ UN과의 관계는 UN헌장 제71조를 근거로 Category I에 해당하는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 ⑤ 국내법으로 조직된 NCB에 의해서 협력을 하고 있으므로 Soft Law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 내부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정부간기구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²⁶⁾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터폴은 정부간기구와 비정부간기구의 지위를 모두 향유하고 있는 국제기구로 볼 수 있으므로 준정부간기구로 분류할 수 있다.²⁷⁾

<표 1> 정부간기구와 비정부간기구간의 비교

구 분	정부간기구	비정부간기구
법적 근거	국가간의 합의에 의한 조약	사인간의 합의에 의한 정관
회원자격	국가	자연인, 국내법상 법인
법인격	국제법상 법인격	국내법상 법인격
분담금	국가가 지불	회원이 지불
ICJ에게 권고적 의견 요청권	있음	없음
UN과의 관계	UN헌장 제57조와 제63조의 근거로 제휴협정	UN헌장 제71조를 근거로 경사리와 체결한 약정
특권과 면제	본부 및 직원 등이 향유	본부 및 직원에게 없음

* 필자가 연구·분석하여 작성함

24) *Ibid.*, p. 63.

25) Michael Fooner, *op. cit.*, p. 45 참조.

26) 문규석, *supra note* 8, pp. 63-64.

27) 문제는 정부간기구와 준정부간기구, 준정부간기구와 비정부간기구간의 차이점과 분류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국제법상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상계논문, p. 64.

3.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단계 및 평가

국제경찰협력은 大協力の 段階(Macro Level), 中間協力の 段階(Meso Level) 및 小協力の 段階(Micro Level)가 있다.²⁸⁾

大協力の 段階는 국제경찰협력에 관련된 국내법과 국제법이 조화가 이루어진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는 정부의 고위관료가 토론하고 기초적인 이슈를 결의하는 단계로서 주로 장기적이고, 중요한 결정이 행해진다. 이러한 협력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는 비자협정, 망명정책, 타국영역에서의 추적권과 감시권 및 범죄인인도절차 등이 포함된다. 즉 입국의 권리에 관한 기초적인 문제점과 출국에 관한 규칙, 체포, 감금 및 심문 등 경찰권에 관한 법적 문제 등이다. 中間協力の 段階는 경찰의 작전구조, 관행, 절차 및 각국의 경찰당국간에 주로 관련된다. 이것은 날마다 경찰업무에서 발생하는 공식적인 체계이다. 즉 특수한 범죄수사 중에 공통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에 관심이 있는 국가의 중간급 관료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 단계의 중요한 특징이다. 또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관심은 각국의 경찰당국간의 통신체제이고, 반대로 주된 걸림돌은 경찰정보체계, 공동데이터베이스 및 이러한 범죄정보에 대한 공동조정과 접근이다. 그리고 小協力の 段階는 특수한 범죄의 수사, 특별한 형태의 범죄의 방지와 통제에 관련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공질서위반은 국가간 및 지역간에 매우 다양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특이한 문화나 전통은 다른 형태의 경찰작용을 필요로 하는 여러 유형의 형태를 차별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단계의 협력은 월드컵과 같은 국제적인 행사에서 효과적이다.

28) 국제경찰협력의 단계에 관해서는 다음의 자료 참조. John Benyon, Lynne Turnbull, Andrew Wills, & Rachel Woodward, "Understanding police cooperation in Europe: setting a framework for analysis", in Malcolm Anderson & Monica den Boer(ed.), *Policing Across National Boundaries*(London & New York : Pinter Publishers, 1994), pp. 49-55; John Benyon, Lynne Turnbull, Andrew Wills, Rachel Woodward, & Anrian Beck, *Police Cooperation in Europe: An Investigation*(Leicester : University of Leicester Centre for the Study of Public order, 1995), pp. 11-13; Bill Heberton and Terry Thomas, *Policing Europe: Co-operation, Conflict and Control*(New York : St. Martin's Press, 1995), p. 39; John Benyon, "The Politics of Police Co-operation in the European Un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w*, Vol. 24, No. 4, 1996. 12, pp. 357-358; Michael Santiago, *Europol and Police Cooperation in Europe*, *Criminology Studies*, Vol. 11(Lewiston · Queenston · Lampeter : The Edwin Mellen Press, 200), pp. 7-8.

유럽에서의 국제경찰협력은 자본, 상품, 서비스, 정보 및 사람의 자유이동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역내 국경폐지와 역외 국경통제에 관련되어서 역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고위 당국자간의 협의에 의한 결정과 이를 기초로 체결된 조약에 근거한 국제경찰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소단계의 협력은 마약, 테러, 축구경기장의 폭력, 환경범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대국에 일시적으로 파견된 연락관을 통해서 협력을 행할 수 있다. 중간단계의 협력은 형사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간급 간부간의 직접적인 접촉과 함께 호환성이 있는 통신수단에 의해서 신속한 협력을 행한다. 그리고 대협력의 단계는 소단계의 협력과 중간단계의 협력에서 야기되는 경찰제도, 비자, 범죄인인도절차 등과 같은 법률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간 또는 고위당국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형사사법공조에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여 법적인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인터폴은 오랜 역사를 지닌 국제적 실체로서 국제경찰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사건에 관련된 정보제공 등 각종 국제경찰협력을 위하여 중간협력의 단계의 특징인 통신망을 전세계적으로 구축해 놓고 있다.²⁹⁾ 또 국제마약거래와 같은 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하여 각국의 전문가들이 인터폴 총회, 아시아와 유럽의 지역회의를 통하여 범죄경향에 대한 토론과 분석을 증진함으로써 소단계와 중간단계의 협력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대단계의 협력으로는 볼 수 없다.³⁰⁾ 그 이유는 ① 인터폴의 국제법상 지위가 정부간기구인지 비정부간기구인지 애매하다는 점, ② 인터폴 헌장도 국제조약적 성질이 있지만 국제조약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점, ③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이 국내법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주의에 의한 협력이라는 점, ④ 상호주의에 의한 협력이므로 그의 구속력에 의문이 있다는 점 및 ⑤ 어느 회원국이 인터폴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테러집단에게 누출한 것과 관련하여 데이터보호 제도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는 점 등이 있기 때문이다.

29) 인터폴은 인터폴 사무총국이 소재하고 있는 프랑스 Lyon에 중앙무선국, 전 세계에 걸쳐 9개의 지역무선국 및 각 회원국의 NCB에 설치된 무선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30) John Benyon, *op. cit.*, p. 359.

4.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내용과 절차 및 한계

1) 내용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내용은 ① 국외도주 범죄인인도를 위한 수사 및 긴급 구속요청, ②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교환 및 협력요청, ③ 국외도주 범인 수배요청, ④ 증거송부 및 이를 위한 증인신문 요청, ⑤ 수사상 필요한 자료요청, ⑥ 범죄경력 및 사실조회, ⑦ 외국경찰 관계기관 방문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⑧ 실종자 소재수사 요청, ⑨ 각종자료 요청, ⑩ 내국인의 국외범죄에 대한 수사시 관련 수사기록 요청, ⑪ 외국인 피의자 검거시 신원확인 및 범죄경력 조회, ⑫ 내국거주 외국인에 대한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⑬ 해외도피자 소재확인시 강제추방 또는 범죄인인도 요청 등이다.³¹⁾ 이들 내용은 각종 정보교환, 국제수사공조 및 각종 자료조회, 범죄인 강제송환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1) 각종 정보교환

일반적으로 “정보란 사용자를 위한 지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광의의 의미로 “정보란 지식이며 조직이고 활동이다”라고 정의한 바와 같이 정보의 최종산물인 지식과 이 지식을 얻거나 기타의 정보공작을 하기 위한 조직체인 정보기관 및 이 정보기관의 활동 그 자체를 통틀어 정보라고 한다. 협의의 의미로 지식이라는 개념에 한정시켜 “어떤 일련의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전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³²⁾ 그리고 諜報란 정보작성에 기초가 되는 모든 사물현상에 관한 지식을 말하며 정보로서 분석·평가되지 아니한 하나의 생자료를 의미한다. 따라서 첩보는 확인·분석·평가되지 아니한 단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부정확하고 허위일 수도 있다.³³⁾

31) 남궁구, 『외사경찰의 국제화 전략』,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1995, pp. 57-58; 경찰청, 『국제성 범죄수사』, 경찰청 외사관리관실, pp. 173-175.

32) 고진영, “정보의 개념과 범죄정보의 수집방법 및 기술”, 『검찰』, 제1집, 1994, p. 261.

33) 고진영, 상계논문, p. 262; 문정인, “국가안보와 국가정보-바람직한 정보기구 모색을 위하여-”, 『국가전

이러한 정보는 범죄정보와 경찰정보로 한정해서 설명하면, 범죄정보는 범죄의 구성요건만 성립하면 되는 모든 종류의 범죄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인터폴을 통하여 입수할 수 있는 범죄정보는 국제마약관련 범죄, 국제조직범죄, 테러리즘, 그밖에 국내치안의 위협요소로서 모든 범죄활동에 관련된 일체의 첩보나 정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경찰정보는 보통범죄의 구성요소, 수사과 예방, 위반자에 대한 소추와 형벌, 지문확인, 국제수배여부 확인, 실종자와 신원미확인 변사체 등에 관련된 모든 정보 등을 말한다. 그러나 정치적·종교적·군사적·인종적 성격의 국제보통범죄에 관한 정보, 특정한 형사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정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관련이 있을지 모르는 일반사람들과 법인체 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없는 정보 등은 제외된다.³⁴⁾

(2) 국제수사공조 및 각종 자료조회

수사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³⁵⁾ 국제수사공조는 각국의 수사기관이 국제보통범죄의 수사를 위해서 상호협력하는 활동으로 수사에 관련되는 정보의 교환에서부터 참고인에 대한 조사, 전과·지문 조회,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과약, 서류의 송달 등 그 범위에 있어서 다양하다. 인터폴은 이러한 국제수사공조를 위해서 국제수배제도가 확립되어 현재 각종 국제수배서와 팜플렛을 발행하고 있다.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는 국외도피범, 실종자, 우범자, 장물, 수배대상자에 대한 인적·물적 사항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각 회원국에 통보하여 공동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사무총국 및 각 회원국간에 각종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배대상자를 색출할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다.³⁶⁾ 현재 인터폴 사무총국은 개인수배서(적색, 청색, 녹색, 황색, 흑색수배서)³⁷⁾, 장물수배서, 범죄수법수

략』, 제2권 1호(1996년 봄·여름호), p. 44.

34) 인터폴 헌장 제2조 (b), 제3조 및 Rules on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and on the International Control of Interpol's Archives 제2조 (b) 참조.

35) 李在祥,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5, p. 185.

36) 경찰청, 전계서, p. 161.

37) 수배서에는 도망자의 이름, 가명, 직업, 출생지와 생년월일, 외모의 특징묘사, 모국어, 지문, 그리고 사진

배서, 회보, 약식보도 및 기술팜플렛 등이 있다.

국제보통범죄자에 대한 수사가 적색수배서에 의해서 범인을 체포한 경우에 범인을 체포한 수사기관은 자국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자국법에 의해서 집행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해당국에게 범죄인인도 또는 추방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다. 수사공조가 범죄인에 관련된 전과조회나 기타 조사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사를 행한 후 해당국에게 회신을 하면 된다. ICTY, ICTR 및 ICC가 요청한 협력도 기존의 국제보통범죄자에게 행한 협력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된다.

(3) 범죄인 강제송환

어느 국가에서 마약관련 범죄, 조직범죄행위, 테러행위 및 기타 각종 보통범죄 등에 관련된 자가 범익침해지 국가로부터 타국으로 도피하여 체류하고 있는 중에 범익침해지 국가로부터 범죄인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에게 범죄인인도를 요청 받는다. 이때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동 조약에 따라서 인도가 가능하고,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가능하다. 그러나 상호주의의 원칙은 상대국가에게 범죄인인도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국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협력을 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범죄인의 국적국은 여권의 무효화 조치 등을 취하고, 체류국이 그 범죄인을 추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그 범죄인이 체류국에서 추방을 하면 수사요원을 파견하여 추방된 그 범죄자는 강제로 송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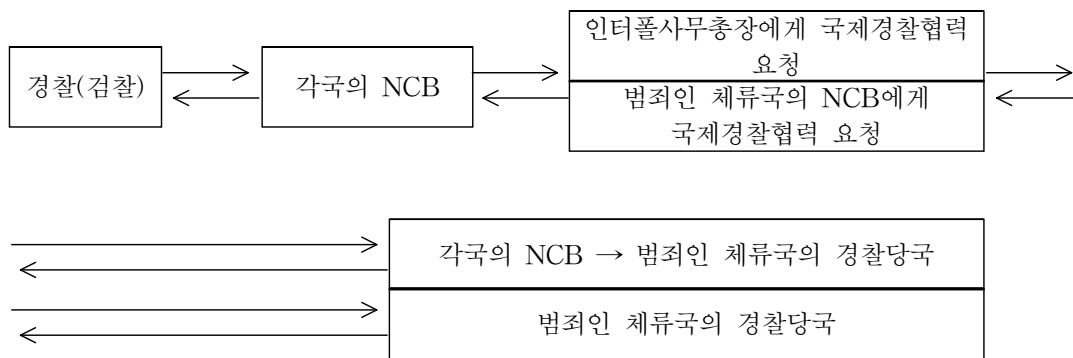
2) 절차

대한민국의 NCB(경찰청 외사³과 국제공조계)는 자국민 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범죄행위를 한 후 도망한 국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록을 통해서 파악하

등이 기록된 용지이고, 이 용지는 오른쪽 위 모퉁이의 여백에 적색, 청색, 녹색, 흑색, 황색 등 다섯 가지 색상으로 가로 3.3cm 세로 4cm 정도 크기의 4각 마크가 붙어 있다. 색상은 일종의 코드를 의미한다.

고, 범죄자가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NCB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그 범죄인의 범죄에 관련된 기록을 제공함과 아울러 협조요청을 한다. 또 프랑스 리옹(Lyon)에 있는 인터폴 사무총국에게 연락해서 국제수배를 요청한다. 인터폴 사무총국은 그 범죄자의 범죄내용에 따라서 수배의 내용에 합당한 수배서를 발행하고, 이 수배서를 회원국에게 배포한다. 범죄발생지 국가는 인터폴 사무총국이 발행하는 수배서가 회원국들에게 배포되는 시간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는 긴급성이 요구될 때 몇몇 대상 국가를 선정해서 수배서를 배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인터폴 수배서가 발행되기 이전의 중간조치에 해당한다. 그리고 범죄인 체류국은 범죄행위지 국가의 공조요청 사항을 그 국가의 NCB를 통해서 이행해 준다. 이와 같은 절차를 흐름도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표 2> 국제경찰협력 절차



* 필자가 연구·분석하여 작성함

3) 한계

국제경찰협력의 이행을 목적으로 탄생한 인터폴은 그의 설립헌장 제2조 1항에서 “각국의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형사경찰당국간에게 최대한 협조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요청된 국제경찰협력을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인터폴의 법적 지위가 UN 등과 같은 국제법상 주체인 정부간국제기구로 볼 수 없고, 그렇다고 비정부간기구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각국의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협조를 보장·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국제경찰협력의 의무는 해당국가의 국내법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어느 인터폴 회원국이 국제경찰협력을 다른 회원국에게 요청하면 요청받은 국가는 자국의 국내법을 근거로 얼마든지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Soft Law적이라는 것이다.

셋째, 인터폴 헌장 제3조는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또는 인종적 성격을 띤 사항에 대해서 어떤 간섭을 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또는 인종적 성격의 범죄가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알 수 없다. 그런데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또는 인종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는 국제테러를³⁸⁾ 인터폴의 관할범죄로 결의하였다는 점³⁹⁾ 국제테러의 규제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련된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는 협력을 행하고 있는지 판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넷째, ICTY, ICTR 및 ICC의 관할권에 해당하는 범죄, 즉 국제형사범죄에 대하여 인터폴 역할의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제형사범죄도 국제테러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또는 인종적 성격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이다.

다섯째, 국제경찰협력은 각국의 법률문화, 경찰제도 및 외교채널과 다른 경찰당국간의 채널에 대한 인식의 차이, 경찰과 검찰간의 역할 관계, 형사관할권에 대한 각국의 민감한 반응, 데이터보호의 수준에 대한 국가별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은 ① 국제경찰협력을 요청하는 국가와 이에 응하는 국가간에 요청된 협력을 이행해야 할 구속력의 정도, ② 회원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행하고 있는 협력의 범위, ③ 관할범죄의 범주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없고, 단지 상호주의의 관점에서 협력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 ④

38) 국제테러에 대해서 다음의 자료 참조. 문규석, “국제법상 국제범죄자에 대한 집행력행사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2, pp. 64-68.

39) 테러리즘에 관한 인터폴의 결의에 대해서, Michael Fooner, *op. cit.*, pp. 233-235 참조.

ICTY, ICTR 및 ICC의 관할권에 해당하는 범죄는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또는 인종적 성격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 범죄이므로 국가간에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점, ⑤ 각국의 법률문화, 경찰제도 및 외교채널과 다른 경찰당국간의 채널에 대한 인식의 차이, 경찰과 검찰간의 역할 관계, 형사관할권에 대한 각국의 민감한 반응 및 데이터보호의 수준에 대한 국가별 차이가 있으므로 그 이행에 대한 법적 의무화를 명확히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5.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과 형사사법공조와의 비교

현대의 국제화, 정보화, 탈국경화 시대에 범죄자의 범죄활동의 범위는 외연적인 측면에서 전세계의 모든 국가로 확장되었고, 犯罪人도 자국민뿐만 아니라 다국적의 국민이 범죄행위를 행할 수 있으며, 犯罪도 사소한 보통범죄에서부터 마약거래, 국제조직범죄, 해외도피 및 사이버범죄 등 다양하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치안유지를 위해서 범죄인을 각 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형사사건을 규제하기 위한 국가간의 형사사법공조(협의의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형사소추의 이송 및 외국형사판결의 집행)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국제경찰협력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서 국가간에 형사사법공조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협력으로서 경찰당국이 주체가 되는 협력의 의미로 각종 정보교환, 국제수사공조, 각종 자료조회, 범죄인 강제송환 및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외국영토의 일정한 부분까지 범죄인을 추적할 수 있는 추적권과⁴⁰⁾ 타국 영토 내에서 체류중인 범죄자에 대한 동태파악을 위한 감시권⁴¹⁾ 등이 있다. 그러나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형사소추의 이송, 외국의 형사판결의 집행, 추적·감시권은 제외되고 있다.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형사사법공조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40) 문규석, *supra note* 6, pp. 75-79 참조.

41) 상계서, pp. 72-74 참조.

1) 의미상의 차이점

광의의 형사사범공조는 협의의 형사사범공조와 범죄인인도를 의미하고, 최광의의 형사사범공조는 광의의 형사사범공조(협의의 형사사범공조와 범죄인인도)에다 형사소추의 이송 및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이 포함한다.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도 형사사범공조와 마찬가지로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련된 활동이므로 형사사범공조의 범주, 즉 최광의 형사사범공조의 의미속에 국제경찰협력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⁴²⁾ 그런데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은 범죄예방과 진압을 위한 협력으로서 범죄의 정보 및 자료교환, 범죄자의 동일인 증명 및 자료조회, 범죄에 대한 사실확인 및 그 조사 등을 비롯하여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강제송환 등으로 한정된다. 그러므로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각종 정보제공, 협의의 형사사범공조, 범죄인인도와는 그 신분상의 지위, 법적 근거, 소요된 기간, 행해지는 시기 및 기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범죄인 강제송환⁴³⁾ 등으로 한정되고 센겐이행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추적권과 감시권은 제외된다.

2) 주체상의 차이점

형사사범공조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업무의 내용과 명칭에 차이가 있다할지라도 대부분 법률문제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주된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문제를 담당하는 외무부는 자료의 전달 및 형사사범공조의 대외적인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각국의 경찰당국이 주체가 되어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인터폴 헌장 제32조와 각국의 국내법에서 정한 경찰당국의 한 부속기관인 NCB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42) “경찰에 의한 수색 및 동일인 소재확인 등은 고유한 의미의 사범공조는 아니나 수사의 始發이 되고 형사소송절차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사범공조의 범주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백충현, 전제논문, p. 203; 이 견해는 국제경찰협력이 외교채널을 통한 사범공조는 아니어도, 즉 고유한 의미의 사범공조는 아니어도 외교채널을 통한 형사사범공조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사범공조의 일 분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라고 생각한다.

43) 범죄인인도와 강제송환(퇴거)과의 차이는 각주 271 참조.

3) 객체상의 차이점

형사사법공조의 객체는 각국의 국내재판소에서 일정한 재판절차를 통하여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 국제보통범죄이다. 그 이유는 첫째, 협의의 형사사법공조를 의미하는 형사사법공조조약의 경우 “형사사건에서의 일체의 범죄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을 의미하고 형사사건은 조세, 관세, 외환규제 또는 기타 재정문제 관련 범죄와 관계된 수사 또는 재판을 포함한다”고⁴⁴⁾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보통범죄라는 점이다. 둘째, 범죄인인도조약에서 범죄인인도의 대상이 되는 인도범죄는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서 미수범, 음모범 또는 공범 등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국제보통범죄라는 점이다.⁴⁵⁾ 셋째, 형사소추의 이송은 범죄인인도가 거부되었을 때 소추를 보장하기 위한 보충적인 제도라는 점에서⁴⁶⁾ 어느 국가의 국내재판소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국제보통범죄라는 점이다. 넷째, 외국형사판결의 집행도 타국의 국내재판소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그의 인수 또는 집행을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국제보통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제형사범죄자는 기존의 협의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한 형사사법공조에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국제형사범죄는 전쟁범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 침략죄 및 기타 등으로 범죄행위의 특성, 양태, 주체, 보호법익, 피해자의 숫자 및 처벌법규 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⁴⁷⁾

반면에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의 대상은 외교채널을 통한 형사사법공조와 마찬가지로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이 적용되어 정치적·군사적·종교적·인종적 성격의 범죄가 제외된 국제보통범죄이다. 그러나 ICTY, ICTR의 증거와 절차규칙 및 ICC규정에 의하여 이들 국제재판소의 관할에 해당하는 국제형사범죄까지도 확대되었다.

44)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제1조 3항과 4항.

45)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2조.

46) 이병기·신의기, 『유럽의 형사사법공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p. 140.

47) 따라서 범죄인인도(extradition)와 이송(surrender or transfer)은 의미상에 차이가 있다. 문규석, “ICTY에서 유고연방대통령에 대한 형벌의 집행가능성에 관한 연구-ICTY로의 이송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44권 제2호(1999. 12), p. 91 참조.

4) 절차상의 차이점

형사사법공조는 타국과의 형사사법공조를 위해서는 협의의 형사사법공조를 의미하는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해서 그 조약에서 정한 절차로서 공식적인 외교경로를 통하고 있다. 범죄인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아니한 국가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相互主義에 의하여 협력을 행하고 있고,⁴⁸⁾ 이 상호주의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외교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외국에 요청한 범죄인인도 절차를 그리면 <표 3>과 같다.

반면에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앞의 <표 2>와 같이 외교적인 공식통로가 아니라 각국의 NCB를 창구로 한 경찰당국과 인터폴 사무총국과의 협력이거나 경찰당국과 경찰당국간의 직접적인 협력이다.

<표 3> 범죄인인도 절차



* 자료 : 경찰청, 『인터폴』, 2002, p. 91.

48)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4조 및 범죄인인도법 제4조 참조.

5) 소요기간상의 차이점

형사사법공조는 수사기관(경찰·검찰), 법무부, 외무부 등 일정한 국가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공조를 저해하고 있다. 즉 海外逃避事犯이나 기타 국제범죄에 관련된 자의 자료나 범죄인인도를 요청하거나 요청받기 위해서 작게는(약식절차인 경우) 2-3개월에서 2-3년이 걸린다. 왜냐하면 해외도피사범 등 국제 보통범죄에 관련된 자가 타국으로 도망간 경우 이를 체포하거나 송환하기 위해서 출입국관리기록 및 탐문수사를 통해서 도피국가를 파악하고 법무부가 외무부를 통해서 해당 국가에게 범죄인인도를 요청하면 다시 그 국가는 그 국가의 사법절차를 밟아서 범죄인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이다.⁴⁹⁾

반면에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각국의 NCB, 전세계에 걸친 9개의 지역무선국 및 인터폴 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무선국을 통해서 X.400 및 GCS과 같은 통신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외교적인 통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동성이 있다.

6) 법적 근거상의 차이점

형사사법공조는 주로 양자조약 또는 지역적인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조약을 통해서 협력을 이행하고 있고, 조약을 체결한 국가간에 구속력이 있다. 만약 형사사법공조에 관련된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각국의 국내법인 국제형사사법공조법과 犯罪人引渡法에 규정된 상호주의를 근거로 협력을 행한다.⁵⁰⁾

반면에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첫째,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인터폴 현장과 회원국의 국내법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를 행하고 있다.⁵¹⁾ 둘째,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설립된 ICTY·ICTR, ICC규정 및 기타 여러 다자 또는 양자 조약에 근거하여 협력을 행하고 있다. 셋째, 대한민국의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의 규정과 같은 국내법에 근거하여 협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양자조약

49) 이장희,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방안』, 치안연구소(연구보고서 97-10), 1997, p. 49.

50) 대한민국 국제형사공조법 제4조, 범죄인인도법 제4조.

51) 인터폴 현장 제2조 1항 참조.

또는 다자조약 및 국내법을 근거로 협력을 행하고 있고, 국제경찰협력은 인터폴 헌장, 국내법, 국제조약 및 국제재판소 규정을 근거로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차이 점을 표로 그리면 <표 4>와 같다.

<표 4> 국제형사사법공조와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비교

구 분	국 제 형 사 사 법 공 조	국 제 경 찰 협 력
의 미	최광의의 의미	최광의의 형사사법공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정보교환, 협의의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강제송환)
주 체	국가(법무부 및 외무부)	국가(경찰당국), 인터폴
객 체	국제보통범죄	국제보통범죄(정치적·군사적·종교적·인종적 성격의 범죄 제외) 또는 국제재판소의 관할권에 해당하는 국제형사범죄
절 차	외교적인 경로(법무부·외무부)	인터폴 사무총국과 각국의 NCB
소요 기간	장기간	컴퓨터 등을 통한 신속성
법적 근거	양자조약 또는 다자조약 및 국내법	인터폴 헌장, 국제재판소규정, 다자 또는 양자조약 및 국내법

* 필자가 연구·분석하여 작성함

6. 평 가

최광의의 형사사법공조는 협의의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형사소추의 이송 및 외국 형사판결의 집행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다.⁵²⁾ 이러한 형사사법공조는 양자조약

52) 백충현, 전제논문, pp. 197-198; 정형근, 『국제테러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고려원, 1992, pp. 264-265; 백진현·조균석,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p. 6; 법무부,

또는 다자조약을 체결하여 협력절차상 각국의 법무부와 외교부(대한민국은 외교통상부)가 관련되어 있다. 각국이 형사관할권을 주권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와 국가간의 외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외교부가 관여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형사사법공조에 관련하여 각국의 법률체계가 다르고 인권보호의 정도,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인하여 전세계의 모든 국가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따라서 양자조약 또는 지역국가간에 다자조약을 체결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공고히 한다는 점은 사법정의의 구현 또는 범죄가 없는 국제사회의 건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공식적인 외교경로를 통한 형사사법공조는 구속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점도 있다. 그 단점은 ① 협의의 형사사법공조를 의미하는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는 국가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⁵³⁾ ② 형사사법공조조약은 체결하였는데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가 있고, 또 그와 반대로 범죄인인도조약은 체결하였는데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도 있다는 점이다. ③ 형사사법공조에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와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협력을 할 수 있지만 상호주의에 의한 협력을 거부한 국가도 있으므로 외교채널을 통한 형사사법공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④ 실무적인 입장에서 외교채널을 통하여 범죄인인도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실적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⁵⁴⁾

『국제형사업무 자료집(형사사법공조편)』, 1994, pp. 8-9; 정동기,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기본원칙”,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제29권 제1호, 1996. 6, p. 51; 제성호, “국제범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세계국제법학회한국본부, 『국제법논총』, 제8권, 1996. 12, p. 218; 김주덕, 전제서, p. 83.

53) 대한민국의 경우 현재(2002. 11) 발효중인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련된 조약은 다음과 같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은 호주(1993. 12. 19), 캐나다(1995. 2. 1), 프랑스(1997. 3. 8), 미국(1997. 5. 23), 몽골(2000. 1. 27), 홍콩(2000. 2. 25), 중국(2000. 3. 24), 뉴질랜드(2000. 3. 30), 러시아(2001. 8. 10) 등이다. 이 중에서 양자의 조약을 모두 체결한 국가는 호주, 캐나다, 미국, 몽골, 중국, 뉴질랜드뿐이다.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 현황은 각주 289 참조.

54) 외교채널을 통한 형사사법공조(협의의 형사사법공조)에서 외국으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건수는 1996년 19건, 1997년 8건, 1998년 20건, 1999년 42건, 2000년 26건, 2001년 27건이고, 외국에 대하여 공조요청을 한 건수는 1996년 21건, 1997년 29건, 1998년 19건, 1999년 19건, 2000년 17건, 2001년 19건이다. 대한민국이 외국으로부터의 범죄인인도 청구를 받은 건수는 1996년과 1997년에 한 건도 없고, 1998년 1건, 1999년도 역시 한 건도 없고, 2000년 2건, 2001년 1건이다. 대한민국이 외국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건수도 1996년 2건, 1997년과 1998년에 한 건도 없고, 1999년 5건, 2000년 10건 2001년 3건이다. 대검찰청, 『검찰연감』, 2002, p. 236, 238; 그런데 형사사법공조의 경우에 2002년과 1999년의 검찰

⑤ 형사사법공조에 소요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협력을 요청한 국가와 요청받은 국가의 국내적 절차와 이들 양 국가의 국제적 절차가 너무 번거롭다는 점이다.

인터넷을 통한 국제경찰협력도 외교채널을 통한 형사사법공조와 비교해 볼 때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 장점은 ① 회원국이 181개국이기 때문에 세계의 대부분 국가와 국제경찰협력을 행할 수 있다는 점, ② 컴퓨터망 등을 통하여 협력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된 기간이 외교채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다는 점, ③ 경찰당국 대 경찰당국간의 협력 또는 경찰당국 대 경찰당국간의 협력을 인터넷 사무총국이 중계해 주거나 또는 필요한 협력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점 및 ④ 실무적인 측면에서 수많은 정보교환, 각종 조회 및 범죄인 강제송환 등을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반면에 그의 단점은 ① 상호주의에 의한 협력으로서 그 구속력의 정도는 각국의 국내법의 범주로 한정되고 있다는 점, 즉 ② 국내법과 국제법이 조화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경찰협력이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외교채널에 의한 협력보다 그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 ③ 정치적·군사적·종교적·인종적 성격의 범죄를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각국의 국내 정치상황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 ④ 데이터 보호제도가 선진국 및 유럽폴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또한 테러지원국을 통하여 데이터가 유출된다는 비난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연감의 통계가 차이가 있다. 즉 1999년도의 검찰연감은 외국으로부터 공조요청의 건수는 1996년 10건, 1997년 6건, 1998년 17건이고, 외국에 대한 공조를 요청한 건수는 1996년 5건, 1997년 3건, 1998년 7건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대검찰청, 『검찰연감』, 1999, p. 212; 반면에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원희룡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0년 이후 해외도피 사범은 2천372명으로 이중 64.1%인 1천521명이 2000년 이후 달아난 것으로 집계됐다. 즉 2000년 514명, 2001년 614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 들어 상반기에만 393명이 해외로 달아났다. 도피 국가별로는 미국이 7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480명, 중국 353명, 홍콩 82명, 기타 683명 등이다. 한편 89년 이후 우리나라는 43명에 대해 범죄인인도를 청구해 15명의 신병을 넘겨받았으며, 외국으로부터 8명의 인도청구를 받아 5명을 인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일보, 2002. 10. 4.

Ⅲ.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에 대한 주된 장애

1. 서

Ⅱ, 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이 인터폴이 실효적인 국제경찰협력의 이행을 방해하는 장애요소이다. 이 장애요소는 총론적인 측면에서 인터폴이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가 이루어진 대협력 단계가 아니라 중간협력의 단계에서 국제경찰협력이 이행되고 있으므로 야기되는 문제로 보인다. 각론적인 측면에서는 인터폴의 연성법적 체제, 적색수배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및 느슨한 데이터보호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Ⅲ에서 왜 인터폴의 연성법적 체제 및 적색수배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가 국제경찰협력의 장애요소인지에 대하여 고찰한다. 또한 인터폴의 데이터보호 제도를 고찰한 후에 유럽폴의 데이터보호 제도와 비교하여 왜 느슨한 데이터보호 제도이고, 왜 선진국들이 데이터보호 제도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2. 인터폴의 연성법적 체제

1) 연성법의 의의

Soft Law는 서면의 형식으로 규정된 규범이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재량적이므로 그 성립조건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가국의 의사에 달려 있는 성질을 지닌 법이다.⁵⁵⁾ 즉 법이라는 흰 면과 非法이라는 검은 면 사이

55) Patricia W. Birnie & Alan E. Boyle,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Oxford : Clarendon Press, 1992), p. 27.

에 회색의 지역으로 존재하고 있는 부분,⁵⁶⁾ 법적 구속력이 완화된 형태로서 불완전한 또는 약한 구속력을 가진 법규범,⁵⁷⁾ 명백히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국가에게 일정한 법적 결과를 필요로 하는 규범⁵⁸⁾ 및 엄격한 의미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정치적 당위성이 있으면서 법과 정치 사이에 존재하는 회색의 지역에서 작용하는 규범을 말한다.⁵⁹⁾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공동체 전체의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규범을 창설할 수 있는 입법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새로운 법규범의 창설은 각국의 동의를 주된 요소로 한다. 그러나 각국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및 역사적인 측면의 다양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법규범의 내용에 대한 각국의 동의를 도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다수의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법적 구속력이 다소 완화된 형태의 규범이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연성법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⁶⁰⁾ 하나는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를 위해 협력한다”와 같이 체결된 조약상의 각 규정의 문구가 지극히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표현되는 형태로 법규범의 구속력이 그 내용에 의해서 완화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한 법 원칙들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할지라도 구속력이 없는 문건인 선언, 권고, 결의에 담겨져서 그 구속력이 형식에 의해 완화된 경우가 있다.

2) 연성법적 근거

인터폴에 의해서 수행되는 국제경찰협력의 법적 근거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폴 헌장, 인터폴이 제정한 제 규정, 총회의 결의, 회원국의 국내법, ICTY ·

56) D. J. Harris,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5th ed., (London : Sweet & Maxwell, 1998), p. 64. 문규석, “국제환경법의 법원 -Soft Law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2집(1995. 12). pp. 436-437 참조.

57) 김석현, “국제법에 있어서 Soft Law”, 『국제법평론』, 1997-I(통권 제8호), 1997, p. 22.

58) Ingrid Detter,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Aldershot · Brookfield USA · Singapore · Sydney : Dartmouth, 1994), p. 213.

59) Peter Malanczuk,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 ed.,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1997), p. 54.

60) 김석현, 전계논문, p. 23.

ICTR·ICC와 같은 국제재판소규정, 범죄인인도조약 및 기타 국제범죄에 관련된 다자조약 등이다.⁶¹⁾ 인터폴이 어떠한 근거로 연성법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인터폴 헌장, 인터폴이 제정한 제 규정 및 총회의 결의

인터폴은 경찰관의 모임인 비정부간기구에서 발전해 왔고 인터폴의 설립근거인 인터폴 헌장은 조약적 성질은 지니고 있지만 일반 국제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형태의 조약으로 보기 어렵다.⁶²⁾ 마찬가지로 인터폴이 제정한 제 규정과 총회의 결의는 인터폴 본부에게는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만 각 회원국에게 부과된 의무는 사실상 권고적 성질을 지닌 형태로 법적 구속력이 완화된 규범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각 회원국의 활동이 각국의 현행 법률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⁶³⁾ 따라서 원칙적인 측면에서 총회의 결정에 대한 이행은 사무총국과 모든 회원국이 부담하고 있지만 그 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각 회원국은 권한의 범위 또는 허용된 법률의 범위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요청된 의무는 회원국의 국내법상의 의무와 양립해야 한다는 점이다.⁶⁴⁾ 또한 인터폴의 헌장에서도 각 회원국이 총회의 결의 및 제 규정의 위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제재조치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⁶⁵⁾ 다시 말해서, 인터폴 본부와 각 회원국 및 각 회원국간의 관계는 각국의 국

61) ①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제827호와 제955호에 의해서 설립된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입시재판소와 르완다 국제형사입시재판소의 소송절차 및 증거규칙 제39조 (iii) 이다. 국제조약은 1998년 7월 17일 로마에서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제87조 1항 (b), 2000년 12월에 채택된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UN협약 제18조 13항, 범죄인도조약에 관한 유럽협약 제16조 3항,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 제15조 5항, 범죄자의 조건부 선고 또는 석방의 감독에 관한 유럽협약 제27조 3항, 교통사범의 처벌에 관한 유럽협약 제15조 3항, 국제형사판결의 유효성에 관한 유럽협약 제15조 2항, 형사소추이송에 관한 유럽협약 제13조 2항,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 회원국간에 체결한 범죄인인도협약 제22조 3항, 미국과 이탈리아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2조 1항, 캐나다와 프랑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3조 1항, 프랑스와 오스트레일리아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1항 (b),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1항 등을 들 수 있다.

62) 문규석, *supra note* 8, p. 50; Michael Fooner, *op. cit.*, p. 45.

63) 인터폴 헌장 제2조 1항.

64) 인터폴 헌장 제9조.

내법의 범주에서 행해지고 있는 상호주의에 의한 협력으로 인터폴 헌장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종교적·군사적·인종적 성격을 지닌 범죄에 대한 간섭 및 활동만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터폴 사무총국은 인터폴 헌장 제3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국제경찰협력의 범주가 확대 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다.⁶⁵⁾

(2) 각 회원국의 관련 국내법

각 회원국의 국내법은 다른 회원국이 요청하는 국제경찰협력의 이행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근거이다. 따라서 그 효력 범위는 각 회원국의 국내라는 범주로 한정되고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사실상 각 회원국의 수만큼 다양한 범주가 존재하고 있다. 즉 국내법상 구속력이 있으나 국제적인 측면에서 구속력이 있는 부분은 모든 회원국에게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에 한정되고 그 외의 사항은 국내법상 연성법적 성질만을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총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어느 회원국의 국내법상 관련 근거 또는 규정이 있다면 구속력이 있지만 그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그 규정에 대하여 입법이 이행되기 이전에는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인터폴 총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에서 각 회원국의 국내법상 유효한 국가와 연성적 성질을 지닌 국가로 분류된다. 또한 어느 회원국이 요청한 국제경찰협력이 인터폴 본부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해도 일부 회원국은 국내법상 여전히 연성적 성질을 지닐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국내법상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는 범죄인인도 조약에서 긴급한 경우에 인터폴 채널을 통하여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약과 그러한 규정이 없는 조약이 있다. 인터폴 채널을 통한 긴급인도구속의 청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인터폴 채널을 통한 청구는 구속력이 없고, 다만 인터폴 채널을 통하여 청구받은 국가는 자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구속력이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면 연성적 성질만 지니고 있다.⁶⁷⁾

65) 인터폴 헌장 제9조; 다만 회원국이 지불해야 할 분담금의 5%이상을 미납하고 있는 경우에 총회에서 투표권 행사중지, 총회유치 금지 및 기타 등등의 제재조치 등에 관한 규정은 있다. 인터폴 일반규정 제52조.

66) 인터폴 헌장 제3조의 해석에 관한 다음의 인터폴 총회의 결의 참조; Resolution No AGN/53/Res/7, Resolution No AGN/63/Res/9, Resolution No AGN/66/Res/10.

(3) 국제범죄 관련 조약 및 국제재판소 규정

국제범죄에 관련된 조약, ICC규정 및 UN결의로 탄생한 ICTY 및 ICTR의 규정 등에서 인터폴에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즉 ① 외교채널을 통한 협력절차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소요된 기일이 장기간이 걸리므로 인터폴의 채널을 통하여 사범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② 인터폴 채널을 통해서 요청한 사항은 외교채널을 통해서 요청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그 요청 자체는 법적 측면에서 효력이 있다는 점이다. ③ 인터폴 채널을 통해서 요청된 사범공조는 국제범죄 관련 조약의 체결국간에 효력이 있다는 점이다. ④ ICTY, ICTR 및 ICC와 같은 국제재판소에서 발부된 영장 및 소환장이 인터폴 채널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외교채널을 통해서 전달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요청 자체는 효력이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국제범죄 관련 조약에서 인터폴 채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각국의 국내법에서 인터폴 채널을 통해서 전달된 공조요청이 국내법에 따라서 구속력이 있는 경우와 그 공조요청이 국제법상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상 연성법적 성질만 지닐 수도 있다.

3) 인터폴 관련 규정의 연성법적 효력

이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성법의 성질은 서면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규정된 내용에 대한 해석이 자유재량적이라는 점, 따라서 그 성립조건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참가국의 의사가 좌우한다는 점,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 당사국은 그 규범에 대하여 구속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연성법은 국가간의 다양한 법체제, 형사사법제도, 인권보호 기준, 각국의 국내법상 경찰제도의 다양성 및 기타의 제원인으로 인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호 조화될 수 없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연성법은 약한 구속력 또는 불완전한 구속력을 지닌 규범으로서 완전한 구속력이

67)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 인터폴 헌장 제31조, 제32조,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2조 1항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0조 1항 참조.

있는 국제조약의 체결이 어려운 경우에 차선책으로 나타나는 규범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터폴의 헌장 및 제 규정을 포함하여 국제경찰협력에 관련된 제 규정은 구속력이 있는 부분과 구속력이 없이 단지 권고적 성질만을 지닌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다. 먼저 구속력이 있는 부분은 인터폴 총회가 결의한 내용중에서 각국의 국내법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항, 범죄인인도조약 및 국제범죄 관련 제 조약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 ICC·ICTY·ICTR의 경우에 동 재판소규정에서 규정된 사항 등이다. 그 구속력이 미약하거나 불완전한 사항은 인터폴 총회가 결의한 내용중에서 각국의 국내법의 범주를 벗어난 사항, 국제범죄 관련 제 조약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 국제재판소규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 등이다. 분명한 것은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과 관련된 제 조약 및 규정에서 기존의 외교채널 이외에 인터폴 채널을 인정하고 있고, 인터폴 채널을 통해서 요청된 사항은 각 회원국의 국내법상 그 요청된 협력의 이행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 그 요청 자체는 효력이 있다는 점이다.

4) 인터폴의 연성법 체제가 제기한 국제경찰협력의 장애

외교채널과 인터폴 채널에 의한 사범공조는 모두 일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점은 같으나 그 요청의 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차이가 있다. 즉 외교채널은 형사사범공조 및 범죄인인도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주의 내용이라면 효력이 있으나 인터폴 채널은 그 국가의 국내법의 범주로 사실상 제한이 되어 있다.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어느 국가의 국내법적인 문제와 국제법이 상호 조화가 이루어진 단계가 아니므로 상호주의에 의한 협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범죄 관련 국제조약 및 국제재판소규정에서 규정한 인터폴에 관련된 규정은 인터폴 채널을 통하여 관련된 국가 및 여러 회원국들에게 긴급 메시지 또는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를 전달해 주는 역할이 사실상 전부이고, 그의 법적 구속력은 각국의 국내법과 다자 또는 양자조약인 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인터폴이 발행한 적색수배서는 ① 어느 국가에서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 ②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고 있지 아니한 국가 및 ③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요청하여 발행한 적색수배서만이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

주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⁶⁸⁾ 이것은 범죄인도조약을 근거로 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서가 외교채널을 통해서 전달되면 효력이 있지만 인터폴 채널을 통해서 전달되면 효력이 없는 국가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인터폴 헌장, 인터폴의 제 규정, 각국의 국내법, 범죄인도조약, 국제범죄 관련 조약 및 국제재판소규정을 기초로 이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사실상 자국의 국내법이 결정하고 있고, 범죄인도조약은 국내법과 연계되어 그 구속력의 범위를 확대 또는 강화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인터폴의 연성법 체제는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에 대한 장애요소로 볼 수 있다.

3. 적색수배서의 효력에 관련된 문제

1) 의 의

인터폴이 발행한 적색수배서는 수배서의 발행을 인터폴 사무총국에게 요청한 국가가 자국의 사법기관 등에서 발행한 구속영장을 근거로 그 수배된 자를 기소하거나 또는 형을 복역하게 할 목적으로 각 회원국에게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하는 일종의 국제영장,⁶⁹⁾ 또는 각 회원국의 구속영장 또는 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배포하는 수단, 즉 범죄인도의 목적으로 자행된 범죄에 대한 기소·재판 또는 수배서 발행요청국에 의해서 이미 부과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배자의 체포를 요청하는 수단을 말한다.⁷⁰⁾ 따라서 적색수배자를 발견한 각 회원국은 국내법 및 범죄인도조약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유형의 법적 효력이 있다. 첫째, 적색수배서가 외교채널로 전달된 긴급인도구속 요청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둘째,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므로 회원국은 적색수배자를 발견한 즉시 체포하여 최저 18일에서 최고 60일

68) ICPO-Interpol General Secretariat, *Report on the legal value of red notices and the new system*, October 1998, pp. 8-10.

69) 문규석, *supra note 6*, p. 132.

70) ICPO-Interpol General Secretariat, "Interpol Red Notices",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Review*, No. 468, 1998, p. 8.

간 구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⁷¹⁾ 셋째, 구금되어 있는 동안 신속하게 인터폴 사무총국 및 적색수배서의 발행요청국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범죄인인도조약의 당사국간에는 범죄인인도절차를 개시하게 한다는 점이다.⁷²⁾ 넷째, 적색수배서 발행요청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경우 또는 국내법상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할 수 없는 국가는 그의 동향을 감시하거나 또는 추방을 하여 적색수배서의 발행요청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⁷³⁾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적색수배서가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되어 일정한 기간 구금하고, 그 구금기간에 범죄인인도절차를 개시한다고 하여도 구체적으로 인도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내법원의 판결 또는 범죄인인도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이 없이 인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적색수배서는 ① 이름, 가명, 출생지, 출생일, 국적, 육체적 특징묘사, 여권번호, 직업, 모국어, 제2외국어 및 기타 등으로 범죄자의 신원확인(신원확인)에 관련된 개인의 신상정보(identity particulars), ② 사건개요, 공범여부(공범이 있는 경우에 그 공범의 생년월일과 적색수배서의 File 및 Control 번호), 혐의 사항, 위반된 법규정, 최대 형량, 기소의 유효기간 또는 구속영장이 만료하는 날자, 발부번호·일자·기관 및 발행 요청국 등에 관한 사법정보(judicial information), ③ 적색수배자를 체포했다면 통지해야 할 기관과 취해야 할 조치(action to be taken if traced) 및 ④ 수배자의 사진과 지문(채취된 경우) 등이 기록되어 있다.⁷⁴⁾

중요한 사실은 적색수배서를 근거로 현재 모든 인터폴 회원국이 이 적색수배자를 체포, 구금하여 범죄인인도 또는 추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취해야 할 조치도 전적으로 각 회원국 국내법 및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각 회원국의 재량사항에 속한다는 점이다.⁷⁵⁾

71)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제16조 4항에서 긴급구속기간은 18일에서 40일까지, 범죄인인도에 관한 미주협약 제14조 3항은 60일 이내,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2조 4항은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72) 경찰청, *supra note* 31, p. 164; 경찰청, 『인터폴』, 2002. p. 60.

73) 경찰청, *supra note* 31, p. 164; 상세서, p. 60.

74) ICPO-Interpol General Secretariat, *supra note* 68, p. 6 참조; ICTY의 요청으로 인터폴이 발행한 적색수배서 File No : 1999/29606, Control No. A-518/7-1999 및 대한민국의 요청으로 발행한 File No : 2001/10335, Control No. A-148/3-2001 참조.

75) Michael Fooner, *op. cit.*, p. 154.

2) 적색수배서의 연혁 및 발행의 법적 근거

(1) 연 혁

적색수배서의 연혁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1946년 이전의 수배제도로서 조회서(Bulletin of Enquiries) 또는 개인수배서로 발행되었다. 이 조회서는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Review의 전신인 'International Public Safety'에 도피자에 대한 설명(이름, 인상착의 등)을 기재한 체포영장과 수배자의 체포로 취소된 수배서 등을 게재하였다.⁷⁶⁾

둘째, 현행 수배제도의 기초로서 1946년 11월 25일에 사무총국이 행한 결정 No. 230이다. 1946년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Ducloux는 조회서가 배달되는 속도가 느리고 다루기가 힘들며 비실용적이어서 개인수배서가 좀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개인수배서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No. 230은 현재의 수배서와 같이 여러 색상으로 수배자에 대한 신원확인에 필요한 사항, 사진, 지문 등의 정보가 포함된 수배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⁷⁷⁾

셋째, 수배자의 신원확인에 관련된 정보 및 범죄에 관한 사항을 좀더 자세히 규정하게 한 1975년의 Resolution AGN/44/Res/3(부에노스아이레스)이다. 이 결정은 국제수배서가 수배자의 신원확인에 관한 정보(출생일, 출생지, 국적, 부모의 주소, 여권 번호, 여권의 발행일·발행지, 현주소, 지문 및 기타)와 범죄에 관한 사항(사건 발생일, 혐의, 체포경력, 전과, 법원의 결정 및 기타)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⁷⁸⁾

(2) 발행의 법적 근거

현재 적색수배서는 각 회원국에서 발행한 구속영장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초로 적색수배서의 발행을 요청하는 국가의 NCB가 일정한 양식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기록한 후 사무총국에게 전송하고, 사무총국은 이들 서류가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에 아랍어, 영어,

76) ICPO-Interpol General Secretariat, *supra note* 70, p. 8.

77) *Ibid.*, p. 9.

78) *Ibid.*

불어, 스페인어로 발행되고 있다. 따라서 적색수배서 발행의 법적 근거는 각 회원국의 측면에서 각 회원국의 법집행기관이 발행한 구속영장 또는 법원의 판결이고,⁷⁹⁾ 인터폴의 측면에서 1946년과 1975년의 총회결의 No. 230 및 Resolution AGN/44/Res/3이다.

3) 적색수배서의 발행 절차상 신청서류의 검토 또는 심사권 여부

긴급구속 영장을 의미하는 적색수배서는 인터폴만이 발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터폴은 NCB가 제공한 정보가 적색수배서를 발행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하여 절차상 검토 또는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몇 부의 적색수배서, 인터폴 현장 및 일반규정 등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인터폴은 형식적 검토와 심사를 행하고, 사법심사는 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인터폴은 적색수배서의 발행을 요청한 국가가 적색수배서의 발행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즉 정형화된 적색수배서의 발행을 요청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개인의 신상정보, 사법정보, 적색수배자를 체포했다면 통지해야 할 기관과 취해야 조치 및 수배자의 사진과 지문 등으로 구성된 적색수배서에서 기본적인 개인의 신상정보, 사법정보, 통지해야 할 기관 및 사진 등은 필수적인 요소이고, 그 외에 신상정보 중에서 수배자 부모의 성과 이름, 인상착의, 특이한 신체적 특징, 기타 추가적인 신상정보, 사법정보에서 공범여부 및 지문의 채취 등에 관한 사항은 유연성(기록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이 있다.

둘째, 적색수배자의 범죄가 인터폴 현장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인가에 대한 심사이다. 인터폴은 역사적으로 현장 제3조에서 규정하고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인종적 성격의 범죄에 대하여 간섭 또는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 왔고, 제3조의 해석도 총회결의를 중심으로 유권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제3조의 해석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총회 결의를 살펴볼 때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성격을 띠고 있는 테러,⁸⁰⁾ ICTY,

79) 한국의 경우 적색수배 대상자는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 중에서 ①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관련 도피사범, ② 폭력조직 중간보스 이상의 도피사범, ③ 다액(50억원 이상) 경제범죄 도피사범이다. 2002년 10월 말 현재 유효한 적색수배자는 총49명이다. 경찰청, 『국제범죄-동향과 대응-』, 제 26호(2002. 10), p. 31.

80) 인터폴 현장 제3조의 적용 및 국제테러와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방해에 관한 총회결의 Resolution No

ICTR 및 ICC의 관할범죄에 해당하는 인도에 반한 범죄, 집단살해죄, 전쟁범죄를 인터폴의 관할범죄로 하였다는 점을⁸¹⁾ 볼 때 제3조의 해석의 범주는 확대되어 왔다.

셋째, 인터폴 사무총국이 적색수배서를 발행하기 전에 적색수배서의 발행에 필요로 하는 정보의 충족 여부를 실질적 검토 또는 사법심사를 한다는 것은 법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하다. 법적인 측면은 어느 국가가 발행한 구속영장의 합법성에 대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의 위반된다.⁸²⁾ 또한 인터폴 헌장, 제 규정 및 적색수배서의 발행에 관련된 결의에서도 인터폴 사무총국이 적색수배서의 발행을 요청한 서류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한 법적 근거가 없다. 현실적인 측면은 인터폴 사무국이 181개 회원국의 법집행기관에서 발행한 구속영장의 합법성의 유무에 대하여 일일이 실질적 또는 사법적 심사를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적색수배서의 발행을 요청한 국가는 적색수배 대상자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정형화된 서류에 작성하여 사무총국에 전송하고, 사무총국은 그 적색수배에 해당하는 범죄가 헌장 제3조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그 신청서류에 기재된 사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결 여부에 대한 형식적 검토를 행한 후에 적색수배서를 발행하고 있다.

4) 적색수배서의 법적 구속력의 여부에 대한 각국의 현황

인터폴 사무총국이 발행한 적색수배서의 발부건수는 1993년 633건, 1994년 620건, 1995년 787건, 1996년 739건, 1997년 700건, 1998년 640건, 1999년 882건, 2000년 1087건, 2001년 1333건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⁸³⁾ 이러한 증가추세에 발맞추어

AGN/53/Res/7, Resolution No AGN/54/Res/1 참조.

81)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 인터폴 헌장 제3조의 적용에 관한 총회결의 Resolution No AGN/63/Res/9 참조.

82) UN헌장 제2조 7항.

83) 1993년과 1994년의 자료는 Interpol, "Progress Report 1994",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Review*, No. 454/455, 1995, p. 12; 1995년, 1996년 및 1997년의 자료는 ICPO-Interpol General Secretariat, *supra note* 70, p. 9.; 1998년에서 2001년까지의 자료는 경찰청, 『국외도피사범 실태분석 및 송환방안』, 2002, p. 56; 1997년 경우 인터폴 자료는 700건, 경찰청 자료는 458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경찰청 자료도 인터폴 사무총국에 문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확한 통계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인터폴 사무총국은 총회 결정으로⁸⁴⁾ 적색수배서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각 회원국의 입장을 문의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⁸⁵⁾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답변한 110개 국가⁸⁶⁾ 중에서 적색수배서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첫째, 인터폴 사무총국이 발행한 적색수배서를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는 국가이다. 이러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독일, 헝가리, 룩셈베르크,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르헨티나, 세네갈, 차드, 이디오피아, 르완다 및 기타 국가로 36개국이다.⁸⁷⁾ 이들 국가는 범죄인인도조약, 자국의 국내법인 범죄인인도법 또는 형사사법공조법을 기초로 인정되고 있다.⁸⁸⁾

둘째, 양자 또는 다자조약인 범죄인인도조약의 당사국이 요청한 적색수배서만이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인정하는 국가이다. 이러한 국가는 그리스, 이스라엘, 이태리,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터키, 보츠와나, 말라위, 뉴질랜드, 싱가포르, 잠비아, 짐바브웨, 쿠웨이트, 모리타니아, 오만, 수단, 튀니지, 말리, 이란 및 기타 국가로 43개국이다.⁸⁹⁾ 이들 국가가 범죄인인도조약의 당사국이 요청한 적색수배서를 긴급인도구속요청서로 인정하는 이유는 인터폴 채널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 국가에게 관련된 양자 또는 다자의 범죄인인도조약에서 긴급인도구속기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죄인인도조약으로 유럽범죄인인도조약,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아랍조약,

84) Resolution AGN/66/Res/7.

85) 적색수배서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각국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는 1차(Red Notices), 2차(Report on the legal status of red notices), 3차 보고서(Report on the legal value of red notices and the new system)가 있고, 2차 보고서는 1차 보고서, 3차 보고서는 2차 보고서가 각각 업데이트된 것이다.

86) 홍콩과 같은 특수지역도 하나의 국가처럼 취급되어 있다.

87) ICPO-Interpol General Secretariat, *supra note* 68, p. 9; 몰타,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우크라이나는 적색수배서를 긴급인도구속요청서로 간주하기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동 보고서의 부속서 1, pp. 14-15.

88) 예를 들면, 독일은 유럽범죄인인도법 제16조 2·3항 및 형사사법공조법 제16조, 오스트리아는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법 Section 27, 덴마크는 범죄인인도법 Section 13·19, 사법행정법 Section 762(1)(1), 감비아는 1986년 범죄인인도법 Section 9, 인디아는 형사소송법 Section 41(G), 인도네시아는 범죄인인도에 관한 인도네시아법 Nr.1/1979의 제8조 1항, 나미비아는 1996년 범죄인인도법 Section 11(2), 르완다는 인터폴 현장 제2조 등을 근거로 가능하다. ICPO-Interpol General Secretariat, *supra note* 68, pp. 부속서 I의 4-8.

89) ICPO-Interpol General Secretariat, *supra note* 68, p. 9.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 회원국간에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 미주범죄인인도조약 및 기타 양자조약 등이다.⁹⁰⁾

셋째, 인터폴 사무총국이 발행한 적색수배서를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인정하지 아니한 국가이다.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브라질, 영국, 일본, 타이, 칠레, 카메룬, 파나마, 홍콩 및 기타 국가로 31개국이다.⁹¹⁾ 그 이유는 국내법 또는 범죄인인도조약에 근거규정이 없고, 긴급인도구속요청서로 간주하기에 필요로 하는 정보 또는 절차적 조치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범죄인인도법에서 긴급인도구속요청서의 경로가 외교채널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대부분의 국가는 국내법 또는 범죄인인도조약에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 아일랜드와 대한민국의 경우에 적색수배서에 기재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⁹²⁾ 사실 대한민국의 형사법 관련 어느 법조문에도 적색수배자를 긴급체포할 법적 근거가 없다.⁹³⁾ 다만 몇몇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터폴 채널을 통하여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⁹⁴⁾

5) 적색수배서의 법적 구속력이 미약한 이유

인터폴 사무총국의 조사보고서와 같이 적색수배서는 긴급인도구속요청서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 간주하지 아니한 국가 및 범죄인인도조약의 당사국이 요청한 적색수배서만이 긴급인도구속요청서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었다. 즉 인터폴이 발행한 적색수배서를 근거로 모든 회원국의 법집행당국이 적색수배자를 체포·구금하여 추방 또는 범죄

90)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제16조 3·4항, 범죄인인도에 관한 미주협약 제14조 1·3항, 영연방국가간 도피사범인도에 관한 약정 제4조 1항 참조.

91) ICPO-Interpol General Secretariat, *supra note* 68, pp. 9-10, 동 보고서 부속서 1의 pp. 15-17.

92) *Ibid.*, 부속서 1의 pp. 15-17 참조;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한 경우에도 그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다. *Ibid.*, 부속서 1의 p. 17.

93) 형사소송법 200조, 200조의 2·3·4·5 참조.

94) 예를 들면, 캐나다와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 제12조 1항,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1항, 대한민국과 파라과이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1항 및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1항 등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무부와 뉴질랜드 경찰청간에 직접 발송될 수 있고(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1항), 대한민국의 법무부와 중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에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한민국과 중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1항).

인인도를 행할 의무가 없고, 취해야 할 조치도 전적으로 각 회원국의 재량이다.

그렇다면 왜 인터폴 사무총국이 발행한 적색수배서의 효력이 국내법상 자국에서 발행한 구속영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가? 또 왜 범죄인인도조약 당사국이 요청한 적색수배서만이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되고 있는가? 적색수배서의 법적 구속력이 미약한 이유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1) 인터폴의 연성법 체제 및 국내법 범위의 국제경찰협력의 이행

정부간기구 또는 국제기구는 ① 국제적 합의인 조약, ②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관의 존재, ③ 국제법하에 설립, ④ 자치능력 및 협조의 기능을 구성요소로 결합된 국제적 실체로서 법인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정부간기구는 설립현장에서 부여하는 권능의 범위 내에서 입법적 기능을 지니고 있고 각 회원국은 제정된 범규범에 의거하여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인터폴의 법적 지위가 준정부간기구로서 연성법 체제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터폴 사무총국이 발행한 적색수배서가 각 회원국의 국내법상 긴급구속영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인터폴 헌장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 회원국의 영역에서 인터폴의 활동은 각국의 국내법의 범주로 한정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폴이 발행한 적색수배서는 각국의 국내법 또는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서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할 수 있거나 또는 단지 위험인물에 대한 경고조치 정도로 인식할 수도 있다.

또한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각국의 고유한 형사관할권을 고려하여 각 회원국의 법집행기관에게 상호주의의 원칙에 상응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이행체제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인터폴 사무총국이 어느 회원국에게, 어느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게 경찰협력을 요청하면 각 회원국은 자국의 국내법을 근거로 설립된 NCB를 통하여 협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① 어느 회원국에게 요청된 협력이 국내법의 근거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강제할 만한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인터폴 헌장에 없다는 점, ② 인터폴 헌장 제2조도 각 회원국의 국내법의 범주로 국제경찰협력이 이행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③ 국제범죄관련 조약 및 국제재판소규정에서도 인터폴 채널을 언급하고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은 인터폴 채널을 통해서 사범공조요청서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만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적색수배서의 법적 효력이 국내법에 따라서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닐 수도 있다.

(2) 중간단계의 국제경찰협력의 한계

중간단계의 국제경찰협력은 경찰의 작전구조, 관행, 절차 등이 관련되어 범죄수사 및 기타 협력을 위하여 주로 중간급 경찰간부간에 접촉하고 경찰당국간에는 통신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대단계의 협력과 같이 국제법과 국내법이 조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즉 국제경찰협력의 이행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국제법상의 문제, 형사관할권의 문제 등에 대하여 회원국간에 법적인 측면의 조화가 이루어진 단계가 아니라 단지 국내법의 범위라는 한계의 테두리에서 그 협력이 이행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인인도조약은 범죄인인도에 관련된 기본원칙(쌍방가벌성의 원칙, 자국민불인도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 인도가능한 범죄와 형량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약당사국간에 국내법과 국제법이 조화를 이룬 단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터폴이 발행한 적색수배서를 범죄인인도조약에 규정된 규정을 준용하여 해석하면 적색수배서는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터폴이 발행한 적색수배서의 효력이 미약한 이유는 국내법과 국제법간에 조화가 이루어진 대협력의 단계가 아니라 중간협력의 단계에서 파생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3) 쌍방가벌성의 원칙에 관련된 문제

인터폴이 발행한 적색수배서의 법적 기초는 발행요청국에서 발행한 구속영장이므로⁹⁵⁾ 여기에는 쌍방가벌성의 충족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다.

형사사범공조에 있어서 雙方可罰性의 原則은 형사사범공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 중에서 요청국과 피요청국이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어야 한다. 즉 범죄인인도를

95) <http://www.interpol.int/public/ICPO/FactSheets/FS200105.asp> (visited on 7 June 2002).

요청한 국가뿐만 아니라 인도를 요청받은 국가에서도 범죄이어야 형사사법공조가 가능하다. 쌍방가벌성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접근방식과 두 가지의 접근방식이 있다.

세 가지의 접근 방식은 양 국가에서 ① 기소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일정한 행위가 형사상 범죄행위로서 혐의가 있어야 하고, ② 혐의도 있고 기소할 수 있어야 하며, ③ 혐의가 있고, 기소도 할 수 있으며, 유죄로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⁹⁶⁾ 두 가지의 접근방식은 추상적 쌍방가벌성과 구체적 쌍방가벌성으로서 양 국가의 형법규정상 추상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쌍방가벌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과 양 국가에서 형법상 구체적으로 동일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폴이 발행한 적색수배서에 기재된 사법정보는 사건개요, 공범여부, 혐의 사항, 위반된 법규정, 최대 형량, 기소의 유효기간 또는 구속영장이 만료하는 날자, 발부번호·일자·기관 및 발행 요청국 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각 회원국은 범죄인인도에서 요구되고 있는 쌍방가벌성의 충족 여부를 용이하게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범죄의 명칭과 범죄의 구성요건까지 같을 필요는 없다할지라도 實體的 類似性(substantial similarity)이 없어서 쌍방가벌성의 원칙이 충족되지 아니한 적색수배서의 경우이다.⁹⁷⁾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적색수배서는 긴급인도구속요청서로 간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4) 자국민불인도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

적색수배서는 범죄인인도에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국가간에 이견이 있는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범죄행위후 대한민국으로 도피하였고, 인터폴은 미국의 요청으로 그 범죄자에게 적색수배서를 발행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찰이 적색수배서의 근거로 그를 체포하였다면 그를 미국으로 범죄인인도 또는 추방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96) M. Cherif Bassiouni, *International Extradition: United States Law and Practice*, 3rd ed., (New York : Oceana Publications, Inc, 1996), p. 390.

97) Robert Jennings & Arthur Watts,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9th ed., Vol. I, (London : Longman, 1992), p. 958 참조; 김정건, 『국제법』, 박영사, 2000. 2, p. 553 참조

自國民不引渡의 原則이란 범죄인인도를 요청받는 국가는 자국민이 도망범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타국에게 인도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영미법계 국가는 자국민이라도 타국에게 인도하는 입장을 취하고, 대륙법계 국가는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범죄인인도에 관련된 국내법, 양자 또는 다자조약의 형태로 체결된 범죄인인도조약, 국제조약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채택된 국제형사임시재판소규정의 소송절차 및 증거규칙을 근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⁹⁸⁾

첫째,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즉 “체약국은 그의 국민의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한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제6조 1항을 비롯하여 프랑스범죄인인도법 제5조 1항, 일본과 미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5조, 일본도망범죄인인도법 제2조 9항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해외에서 범죄행위 후 자국으로 도피한 자라 할 지라도 범죄는 범죄지국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여 인도하는 예가 있다. 즉 “인도가 청구되는 자의 국적은 인도청구를 받은 당사국의 법률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인도거부의 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범죄인인도에 관한 미주협약 제7조 1항, 미국과 멕시코간의 범죄인인도조약 9조, 미국과 이탈리아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4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인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국법원에 기소하거나 아니면 절대적 거절 사유가 아닌 임의적 거절 사유로 해당국가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규정이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 1항, 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 제9조 1항을 예로 들 수 있다.

넷째, ICTY 및 ICTR의 소송절차 및 증거규칙 제58조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ICTY·ICTR규정의 소송절차와 증거규칙은 ICTY·ICTR로의 移送를 거부하는 사유로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을 원용하는 것을 봉쇄하는 규정이다.

다섯째, 2000년 12월에 채택된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UN협약 제16조 10항, 11항, 12항의 경우이다. 동 협약은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을 적용하여 범죄인인도를 거절한다면 자국법에 의해서 기소할 의무가 있고, 자국민을 인도요청국에게 인도할 경우에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을 위해서 피요청국으로 이송해야 하며, 자국민을 인도하지 아니할 경우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한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서 부과된 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98) 문규석, “국제법상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국제보통사이버범죄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46권 제1호(2001. 6), pp. 99-100.

따라서 적색수배서가 국내법상 긴급인도구속요청서로 간주하더라도 그 수배자를 발행요청국에게 범죄인인도 또는 추방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모든 회원국이 긴급인도구속요청서로 간주할 수 없다. 또한 적색수배서를 근거로 자국민을 적색수배서의 발행요청국으로 추방할 법적 근거도 없고, 국제인권법적인 측면에서 자국민의 추방을 인정하고 있는 국제조약도 찾아보기 어렵다.

(5) 특정성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

특정성의 원칙은 적색수배서에 기재된 특정범죄에 대해서만 소추되거나 처벌되며 그 밖의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⁹⁹⁾ 이 원칙은 범죄인인도에 있어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조약 또는 국내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적용되어야 한다.¹⁰⁰⁾ 예를 들면, 정치범의 강제송환을 위해서 일반 형사범으로 기재된 적색수배서를 발행하여 그 정치범을 강제송환하여 정치범으로 처벌하려는 경우 또는 기타 다른 형벌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적색수배서가 국내법상 긴급구속영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그 수배자를 발행요청국에게 추방을 한다면 특정성의 원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증의 문제가 제기된다. 범죄인인도법 및 범죄인인도조약에서 특정성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인터폴 헌장, 인터폴의 규정 및 결의에서 특정성의 원칙의 보장을 위한 보증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¹⁰¹⁾ 따라서 범죄인인도조약의 비당사국이 요청한 적색수배서는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은 수긍이 간다.

99)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이다. 첫째, 인도청구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의 범위안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 또는 범죄인이 인도된 후에 행한 범죄로 범죄인을 처벌하는 경우, 범죄인이 인도된 후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 범죄인이 자유로이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후 45일 이내에 청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 및 대한민국이 동의하는 경우이다. 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 제10조.

100) 이훈규·신의기, 전계서, pp. 62-63.

101) 예를 들면, 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 제10조,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5조 및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7조는 특정성의 원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6)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형량의 문제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범죄는 범죄인인도의 요청국과 피요청국에서 각각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은 공통적으로 일치하지만 그 최소 형량에 대해서 각국의 국내법 또는 범죄인인도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다르다. 따라서 적색수배서를 기초로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형량은 몇 년 또는 몇 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세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각국의 국내법인 경우에 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¹⁰²⁾ 일본 도망범죄인인도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¹⁰³⁾ 프랑스 범죄인인도법은 장기 2년 이상이거나 유죄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의 경우에 요청국의 법원이 선고한 형이 2개월 이상의 구금형에 해당되어야 한다.¹⁰⁴⁾

둘째, 양 당사국간에 체결된 범죄인인도조약인 경우에 한국과 미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어야 한다.¹⁰⁵⁾ 미국과 이탈리아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서는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복역할 형의 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¹⁰⁶⁾ 멕시코와 프랑스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서도 2년 이상의 형벌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형의 집행을 위해서 잔여 형기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¹⁰⁷⁾

셋째, 다수 당사국간에 체결된 범죄인인도조약인 경우에 유럽범죄인인도협약은 1년 이상의 구금명령 또는 그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고, 유죄의 판결과 감옥형이 선고되거나 또는 형벌이 부여된 요청국에서 구금명령이 행해졌을 때 그 기간은 적어도 4개월 이상이어야 한다.¹⁰⁸⁾ 영연방국가간 도피사범인도에 관한 약정에서도 2년 또는 그 이상의 중형

102) 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 제6조.

103) 일본 도망범죄인인도법 제2조 4항.

104) 프랑스 범죄인인도법 제4조 1항 2호.

105) 한국과 미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약 제2조 1항과 5항.

106) 미국과 이탈리아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2조 1항.

107) 멕시코와 프랑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2조.

108) 유럽범죄인인도협약 제2조 1항.

이어야 한다.¹⁰⁹⁾ 범죄인인도에 관한 미주협약도 당사국의 법률상 2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고 판결의 집행을 위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도 잔여 형기는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¹¹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범죄의 형량에 대하여 각 국내법 및 조약마다 차이가 있다.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국간에는 범죄인인도조약,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간에는 자국의 국내법인 범죄인인도법을 기준으로 인도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쌍방가벌성의 원칙, 자국민불인도의 원칙 및 특정성의 원칙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범죄의 형량에 대하여 각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적색수배서를 일률적으로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

(7) 적색수배서 발행에 따른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의 미비

적색수배서 발행요청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실수 또는 착오로 잘못된 정보(대한민국의 경우에 검찰이 오류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포함됨)를 전달한 경우 또는 고소된 사건의 피고소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한 이유로 적색수배서가 발행되어 강제송환된 경우에 잘못된 정보 또는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예를 들면, 피의자 이00(당 48세, 여)는 2천만원 편취 혐의와 관련하여 98. 3. 24일자로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사기혐의로 수배된 자로 98. 9. 22.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였다. 광주서부경찰서의 공조수사 요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인터폴과 공조하여 99. 10. 9. 피의자를 송환하였으나 조사결과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¹¹¹⁾ 미국에서도 잘못된 신원확인 결과로 인터폴에 의해서 배포된 적색수배서에 범죄자로 기재되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건과 인터폴이 오류의 정보를 전달하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잘못 체포되어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건이 있다.¹¹²⁾

109) 영연방국가간 도피사범인도에 관한 약정 제2조 2항.

110) 범죄인인도에 관한 미주협약 제3조 1·2·3항.

111) 경찰청, *supra note* 83, p. 64.

112) Steinberg v.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1981) and Sami v. United States(1979).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 적색수배서를 발행한 인터폴을 상대로 피해보상 또는 배상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¹¹³⁾ 또한 다른 회원국이 법적 또는 사실상 오류가 있는 정보의 전달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의 손해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은 국가는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회원국이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였다고 항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6) ICTY, ICTR 및 ICC의 요청으로 발행된 적색수배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폴이 발행한 적색수배서의 효력이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할 수 없다면 현재 활동중인 ICTY·ICTR¹¹⁴⁾ 및 아마도 2003년도에 제 기능을 발휘할 ICC가 요청하여 발행된 적색수배서를 일반 보통범죄자에게 발행한 적색수배서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ICTY, ICTR 및 ICC의 관할범죄는¹¹⁵⁾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집단

Malcolm Anderson, *Policing the World: Interpol and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Oxford : Clarendon Press, 1989), p. 63.

- 113) 인터폴 현장, 제규정 및 프랑스와 체결한 본부협정에서도 인터폴에 의해서 자연인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인터폴을 피고인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자연인은 계약적 의무, 인터폴의 관용 차량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교통신호 위반의 결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 자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터폴과 프랑스 정부간에 체결한 본부협정 제5조.
- 114)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제827호 및 제955호에 의해서 설립되어 활동중인 ICTY·ICTR 및 2003년 3월 11일부터 활동할 ICC가 동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행하여 인터폴에게 적색수배서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인터폴은 적색수배서를 발행하여 각 회원국에게 배포할 수 있다. ICTY 및 ICTR의 소송절차 및 증거규칙 제39조 (iii), ICC규정 제87조 1항 참조; 구 유고슬라비아 전 대통령이었던 슬로보단 밀라세비치에 대하여 인터폴이 발행한 적색수배서 Control No. A-518/7-1999, File No. : 1999/29606 참조; 인터폴은 2001년 5월 16일 기준으로 ICTY 및 ICTR의 요청에 의해서 각각 총 73건과 10건의 적색수배서를 발행하였다. 문규석, *supra note* 6, p. 26.
- 115) ICTY규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ICTR규정 제2조, 제3조, 제4조, ICC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참조; 침략죄는 ICC의 관할권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현재 국제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ICC가 침략죄에 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 즉 ICC규정이 발효된 후 7년이 되면 어느 당사국이 ICC규정의 개정을 제안하거나 혹은 UN사무총장이 이 규정의 개정을 심의하기 위한 검토회의의 소집을 통하여 침략죄의 개념이 정립된 이후에 ICC의 관할범죄가 될 수 있다. ICC규정 제5조, 제121조 및 제123조 참조; 침략죄에 대해서는 1974년 12월 14일에 채택된 UN총회결의 3314(XXIX) 참조.

살해죄 등으로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에 해당하여 모든 국가가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여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이다.¹¹⁶⁾ 또한 이들 범죄는 경찰과 군대와 같은 국가기관이 대통령·군사지도자 또는 정치지도자의 지시·명령 또는 이들의 묵인·방조하에 자행될 수 있는 성격의 범죄라는 점이다. 따라서 보통범죄자에 대한 수사, 체포, 범죄인인도와 위의 국제재판소의 관할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대한 수사, 체포, 이송 등은 다른 차원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¹¹⁷⁾

ICTY, ICTR 및 ICC의 요청으로 발행한 적색수배서를 근거로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하는 국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범죄인인도조약의 당사국이 요청한 적색수배서만이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인정하는 국가와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인정하지 아니한 국가는 이 적색수배서를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가? ICTY, ICTR 및 ICC의 요구로 인터폴이 발행한 적색수배서는 모든 국가에서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위의 재판소의 물적 관할에 해당하는 범죄가 국제법상 대세적 의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모든 국가가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죄로서¹¹⁸⁾ 자국의 국내재판소의 재판절차를 거쳐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116) 대세적 의무는 예를 들면, 침략죄, 집단살해죄와 같이 보편주의의 범주에 포함되는 범죄행위가 단지 가해국 대 피해국의 관계가 아니라 가해국 대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 모든 국가가 국제사회의 일반적 보호법익을 위하여 訴의 이익도 있다는 의미로 모든 국가가 법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대세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불법이고 효력이 없으며 직접 피해국 외의 당사국도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보편적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국제기구의 제재가 행해지거나 또는 당해 위법행위의 실행자 개인에 대하여 국제조약을 근거로 처벌이 행해질 수도 있다고 한다. 대세적 의무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 참조. 김찬규·김영준, 『국제법개설』, 법문사, 1998, pp. 348-349;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0, pp. 80-82;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범죄에 관한 연구”, 『국제법평론』, 창간호(1993), pp. 89-91; Maurizio Ragazzi,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Erga Omnes*(Oxford : Clarendon Press, 1997), pp. 1-17, 43-50; Case Concerning the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mpany, Limited, *ICJ Reports*, 1970(I), p. 32; Andre de Hoogh, *Obligations Erga Omnes and International Crimes*(The Hague/London/Boston :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p. 49-56 참조.

117) 문규석, *supra note* 47, pp. 89-104 참조.

118) 국제관습법과 국제조약에 의해서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된 범죄는 집단살해죄(집단살해방지과 처벌에 관한 협약 제6조), 전쟁범죄(1949년 제네바 제1협약 제49조), 인도에 반한 범죄, 테러(폭탄테러 억제협약 제6조 5항, 테러자금조달 억제 협약 제7조 6항), 고문행위(고문방지협약 제5조 3항), 해적행위(UN 해양법협약 제105조) 등이다.

셋째, 이들 범죄자를 체포한 국가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면 그 범죄자를 위의 재판소로 이송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¹¹⁹⁾ 따라서 국내법 및 범죄인인도조약 등이 적색수배서에 대해서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ICTY, ICTR 및 ICC의 요구로 발행된 적색수배서는 일반 보통범죄와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국내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국제법상 대세적 의무간에 법적 효력의 조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현실이다. 즉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국제법상 구속력의 이행을 위해서 일종의 편법이 요청되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서, 적색수배서가 국제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상 적색수배자의 긴급인도구속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 그 적색수배자를 발견한 법집행기관은 그 적색수배자를 추방하여 위의 국제재판소로 이송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7) 미약한 적색수배서의 효력이 제기한 국제경찰협력의 장애

이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터폴 사무총국은 2000년 1087건, 2001년 1333건의 적색수배서를 발행하였지만 그 적색수배서의 효력은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 그렇지 아니한 국가 및 범죄인인도조약의 당사국이 요청한 적색수배서만이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었다. 또한 적색수배서가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하고 있다면 국내법상 긴급체포 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었고, 그 범죄자가 체포되었다면 범죄인인도가 개시되는 동안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서 최소 18일에서 최고 60일간까지 구금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적색수배서가 각국에서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되어 국내법상 긴급인도구속의 법적 근거로 활용이 된다면 전세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로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자 또는 해외도피사범을 체포할 수 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적색수배서가 어느 국가에서나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된다면 그의 위력을 짐

119) ICTY규정 제29조, ICTR규정 제28조 및 ICC규정 제86조-102조 참조.

작할 수 있는 반면에 적색수배서가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터폴이 연성법적 체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즉 국내법과 국제법이 조화를 이루지 아니한 중간단계의 국제경찰협력 체제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한계가 있다는 점, 범죄인인도에 관련된 기본원칙(쌍방가별성의 원칙,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이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¹²⁰⁾ 어느 정도의 형량에 해당하는 적색수배자를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해야할 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 및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로 침해된 개인의 권리구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이 있다.

따라서 적색수배서와 관련하여 다섯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적색수배서가 범죄인인도조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적색수배서가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준수되고 있는 기본원칙(쌍방가별성의 원칙, 자국민불인도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 및 수배자의 형량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인인도조약의 당사국이 요청하여 발행한 적색수배서만을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적색수배서가 범죄인인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와 관계없이 각국은 적색수배자를 일단 범죄자로 사실상 간주 또는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넷째, 따라서 적색수배서를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가 요청하여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적색수배서를 발견한 법집행당국은 그 수배자의 동향을 조사하거나 또는 이민당국의 협조를 얻어 추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허위의 정보에 의해서 발행된 적색수배서에 의해서 혐의자 또는 범죄자의 인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 적색수배자가 범죄인인도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다른 국가로 도망갈 가능성이 있고, 긴급구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인인도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석방될 가능성

120) 따라서 적색수배서는 범죄인인도의 기본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다만,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은 인터폴 현장 제3조와 관련되어 있고, 동조에 의해서 인터폴 사무총국은 적색수배서가 발행되기 이전에 인터폴 현장 제3조 및 제3조의 근거하에 총회 결의를 중심으로 적색수배서의 신청서류에 대하여 절차적인 측면에서 형식적 검토 또는 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많다는 점이다. 또한 자국에서 적색수배서를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지 아니한 국가가 인터폴 사무총국에게 적색수배서의 발행을 요청하고 그 수배서가 발행된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즉 국내법상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지 아니한 국가가 요청하여 발행된 적색수배서가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에게 배포된 경우에 발행 요청국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수배서가 배포된 국가에서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둔갑하는 비논리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의 내용 중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적색수배서의 효력은 이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이것은 현행 인터폴 체제가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가 이루어진 대협력의 단계가 아닌 중간협력의 단계에 기인하므로 협력의 범주가 각국의 국내법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연성법적 성질을 지닌 인터폴 헌장 및 관련 제 규정에 국제경찰협력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규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실효적인 국제경찰협력의 주된 장애가 아닐 수 없다.

4. 데이터보호 제도

1) 의의

II, 4, 1)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의 내용 중에는 사무총국과 각국의 NCB, 또는 각국의 NCB간에 각종 경찰정보, 즉 보통범죄의 구성요소, 범죄의 수사와 예방, 위반자에 대한 소추와 형벌, 지문확인, 국제수배여부 확인, 실종자와 신원미확인 변사체 등에 관련된 정보의 교환이 가능하다. 또한 경찰정보의 수집, 기록, 분석, 검증, 수정, 보관, 삭제에 관련된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처리를¹²¹⁾ 위하여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다.¹²²⁾ 이와 같이 인터폴이 경찰정보

121)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2조 (b) 참조.

122)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2조 (a) 및 사무총국에서 선택된 데이터베이스 및 NCB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직접 접근을 규율하는 규칙 제1조 1항; 현재 인터폴은 경찰정보를 처리하기 위하

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택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련된 경찰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목적, 즉 인터폴 헌장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적·종교적·군사적·인종적 성격의 범죄에 대하여 간섭이나 활동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헌장 제2조 (b)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통범죄의 예방과 수사, 범죄자에 대한 소추, 실종자의 발견 및 사체의 신원의 확인, 국제수배서 및 각종 메시지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함이다.¹²³⁾ 이와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저장된 정보의 수정, 데이터의 보유기간, 일정한 보유기간이 경과한 데이터에 대한 삭제 및 저장된 데이터의 유출 및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감독기관 등 데이터보호 제도에 관한 일정한 규칙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EU 회원국이 역내 국경의 폐지에 따라서 역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범죄자의 자유이동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에게 추적·감시권을 부여한 Schengen 경찰협력은 국경에서 조사와 통제, 경찰 및 세관조사 등의 목적으로 자동검색이 가능한 센겐정보통신망(Schengen Information System: SIS)을 설치·운영하고 있음과 동시에 데이터 보호에 관한 일련의 규정이 규정되어 있다.¹²⁴⁾ 유럽폴도 유럽폴의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의 저장, 수정, 이용을 위해서 수집된 정보를 컴퓨터화 하여 관리하는 시스템(Computerized System of Collected Information), 즉 범죄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음과 동시에 데이터보호에 관련된 일련의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¹²⁵⁾

문제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중인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보관중인 데이터의 유출 또는 데이터보호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¹²⁶⁾

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선택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사무총국의 일반형사기록에 관한 데이터베이스(General Secretariat's general criminal records) 및 도난 당한 미술품의 텍스트와 사진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database comprising text and photos of stolen works of art)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보호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선택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23)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3조 4항,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4조.

124) 센겐이행협약 제102조-제119조 참조.

125) 유럽폴 협약 제9조-25조 참조.

126) Malcom Anerson, Monica Den Boer, Peter Cullen, William C. Gilmore, Charles D. Raab, and Neil Walker, *Policing the European Union : Theory, Law, and Practice*(Oxford : Clarendon Press, 1995), p. 52; John Benyon, *et al., op. cit.*, p. 129; Michael Santiago, *op. cit.*, pp. 20-21; Ilias Bantekas, *et al., op. cit.*, pp. 219-220.

다시 말해서, 자료처리에서 발생하는 소망스럽지 못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예방 조치,¹²⁷⁾ 또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때 적용되는 기준 및 그러한 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해서 따르는 관행이 포함된 데이터보호가¹²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에서 보호되고 있는 수준으로 데이터가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터폴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보호 제도가 왜 국제경찰협력의 장애로서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데이터보호의 목적

인터폴 사무총국은 일반 대중이 접근 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경찰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각국의 NCB, 비회원국의 법집행기관,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정부간기구, 법인 및 일반 사인으로부터 경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¹²⁹⁾ 이러한 경찰정보는 일정한 유형의 데이터로 분류되어 일정한 기간동안 컴퓨터에 저장되어, 적절히 업데이트가 되며, 필요한 경찰정보를 요청하는 회원국의 NCB, NCB의 동의하에 형사법집행 또는 경찰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국가의 다른 법집행기관 및 기타 기관에게 그 정보가 제공된다. 따라서 인터폴 사무총국은 보통범죄의 진압에 있어서 국제센터로서의 역할¹³⁰⁾ 및 NCB 등 법집행기관이 제공한 경찰정보의 유일한 저장소의 역할을 수행한다.¹³¹⁾ 반면에 경찰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유형과 구조에 대하여 결정권이 있으며, 동시에 경찰정보의 처리에 있어서 발생하는 책임을 부담한다.¹³²⁾

인터폴의 데이터보호 목적은 인터폴 헌장 제2조에 규정된 인터폴의 목적을 확인함과 동시에 자연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어떠한 위협을 피하여 국제경찰협력 체제 내에서 처리되어 전송된 경찰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¹³³⁾ 즉 경찰정보가 데이터

127) 변재옥, “서독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영남대 논문』, 제12집, 1978, p. 146.

128) Rosemary Jay & Angus Hamilton, *Data Protection : Law and Practice*(London : Sweet & Maxwell, 1999), p. 1.

129)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6조 1항.

130) 인터폴 헌장 제26조 (b) 및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

131)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3항.

132)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3조 1, 2항.

베이스에 보관·관리함으로써 인테폴의 업무를 신속히 이행함과 동시에 경찰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소망스럽지 못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예방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유럽폴의 범죄정보시스템 및 센겐경찰협력의 센겐정보시스템이 데이터보호와 관련하여 기기 접근 통제, 자료매체 통제, 자료 접근 통제, 이용의 통제, 사용자 통제, 전송의 통제, 자료입력의 통제, 자료전달의 통제 등 데이터보호에 관련된 일련의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감시·감독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도 데이터보호 및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¹³⁴⁾

3) 데이터보호의 법적 근거

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국제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테폴은 사무총국이 소재하고 있는 프랑스 리옹에 경찰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택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 of selected information)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설치·운영, 접근방법, 데이터의 보관기간, 정보의 삭제, 감독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인테폴의 데이터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는 인테폴 헌장을 모범으로 한 일반규정의 부속서인 ① 국제경찰협력 및 인테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Rules on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and on the Control of Interpol's Archives: 이하 인테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¹³⁵⁾ ② 인테폴 사무총국의 선택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및 NCB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직접 접근을 규율하는 규칙(Rules Governing the Database of Selected Information at the ICPO-Interpol General Secretariat and Direct Access by NCBs to that Database: 이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¹³⁶⁾ 국제경찰협력 및 인테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5항, 제9조 1항, 3항 및

133) 인테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1조.

134) 유럽폴 협약 제23조-제25조 및 센겐이행협약 제102-제118조 참조.

135) 동 규칙은 1982년 제51회 총회(AGN/51/Res/1)에서 채택되었고 1984년 2월 14일에 발효되어 1990년 제59회 총회(AGN/59/Res/10), 1991년 제60회 총회(AGN/60/Res/8) 및 1994년 제63회 총회(AGN/63/Res/17)에서 개정되었다.

136) 동 규칙은 1990년 제59회 총회(AGN/59/Res/7)에서 채택되었고 1992년 2월 1일에 발효되어 제60회 총회(AGN/60/Res/7)와 제63회 총회(AGN/63/Res/19)에서 개정되었다.

제12조 1항을 근거로 제정된 ③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Rules on the Deletion of Police Information held by the General Secretariat)이 있다.¹³⁷⁾ 또한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를 위한 감독기구의 설치와 관련하여 인터폴과 프랑스정부간에 서명한 ④ 인터폴이 보유한 문서의 내부 통제 기구에 관한 교환문서(Exchange of Letters concerning Organization of the Internal Control of the Archives held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ICPO-Interpol: 이하 교환문서)¹³⁸⁾ 및 ⑤ 위의 제 규칙의 제·개정 등에 관련된 인터폴 총회의 결의¹³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데이터의 내용

(1) 의 의

1998년 영국의 데이터보호법에서 데이터는 ①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자동으로 연산하는 장비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 ② 이러한 장비에 의하여 처리될 목적으로 기록되는 것, ③ 관련 파일시스템의 일부로 기록되거나 이를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는 것, ④ ①, ②, ③에 속하지는 않지만 건강, 교육경력, 주거 및 사회보장 기록 등으로 접근 가능한 기록을 의미한다.¹⁴⁰⁾ 1994년에 개정된 독일연방데이터보호법에서도 데이터 파일(data file)은 자동화된 절차로 구체적 특성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는 일련의 개인데이터, 구체적 특성에 따라 유사하게 조직되어 있고, 이에 따라 배열, 재배열, 평가할 수 있는 일련의 非個人 데이터를 의미하나 자동화된 절차로 재배열·평가할 수 없는 기록 및 일련의 기록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¹⁴¹⁾ 인터폴의 데이터보호에 관련된 제 규칙에서 데이터

137) 동 규칙은 1986년 제55회 총회(AGN/55/Res/2)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1987년 3월 4-6일 제84회 집행 위원회에서 채택되어 1987년 4월에 발효되었고, 1994년 제63회 총회(AGN/63/Res/19) 및 2001년 제70회 총회(AG-2001-Res-10)에서 개정되었다.

138) 동 교환문서는 1982년 11월 3일에 인터폴과 프랑스간에 서명되었다.

139) 앞의 각주 135-137에서 기술하고 있는 데이터 보호에 관련된 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총회의 결의를 의미한다.

140) 동법 제1조 1항 및 제68조 참조.

141) 동법 제3조 2항.

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데이터는 인터폴의 데이터보호에 관련된 제 규칙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각종 문서, 경찰정보, 개인 및 비개인정보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하고자 한다.

(2) 데이터의 사용 목적

경찰정보에 관한 데이터는 범죄의 예방과 수사, 범죄자를 재판하여 형벌의 집행, 실종자의 발견 및 사체의 신원확인 등을 용이하게 함과 아울러 국제수배서 및 메시지의 전달 등과 같은 내부운영목적으로 사용한다.¹⁴²⁾

(3) 데이터의 종류

인터폴의 데이터베이스는 경찰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그 경찰정보는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point 1))와 비개인정보(non-personal information(point 2))로 나뉘어 진다. 개인정보는 다시 ‘전적으로 point 1.2에 기재된 사람과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될 수 있는 항목’ (only the following information, relating exclusively to the persons listed under point 1.2 below, may be entered in the database of selected information(point 1.1))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될 일정한 사항의 유형으로 전적으로 사람에 관한 정보’ (only information exclusively relating to persons in the categories listed below may be recorded in the database of selected information(point 1.2))로 나뉘어 진다.

따라서 사무총국의 일반형사기록(General Secretariat's general criminal records)에 기록되지 아니한 어떠한 개인정보도 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지 아니한다.¹⁴³⁾ 예를 들

142)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3조 4항.

143)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1조 2항; 사무총국의 일반형사기록(General Secretariat's general criminal records)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할 수 없으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선택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와 별개의 것으로 보인다. 즉 양자는 서로 동시에 또는 별도로 입력될 수 있고, 사무총국의 일반형사기록이 변경, 수정 및 삭제된다면 선택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도 변경, 수정 및 삭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보의 변경, 수정, 삭제에 관한 규정은 양자 모두 동등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사무총국의 일반형사기록에 개인정보의 항목(point 1)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1조 2항, 제2조 2·3항.

면, 개인의 민감한 정보로서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 성생활, 인종, 정치적 견해, 종교적 믿음 또는 기타 다른 신념을 드러내는 사항,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 및 기타 등을 의미한다.¹⁴⁴⁾

가.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 : point 1)

전적으로 point 1.2에 기재된 사람과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될 수 있는 항목은 ① 성과 이름, ② 출생일, 출생지 및 소속 국가, ③ 부모의 성과 이름, ④ 가명, ⑤ 국적, ⑥ 여권 및 신분증 번호, ⑦ 신원 확인 여부, ⑧ 추정된 범죄의 유형, ⑨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될 수 있는 항목으로 전적으로 사람에게 관련된 정보가 관련된 개인에게 적용되는 유형, ⑩ 정신병, 무기 소지, 전염병, 자살, 마약중독, 폭력성 등에 대한 경고, ⑪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될 수 있는 항목으로 전적으로 사람에게 관련된 정보가 언급된 국제적 통지사항의 본문 내용, ⑫ 이미지(또는 사진)와 지문, ⑬ 사무총국의 일반 범죄기록의 참조 번호, ⑭ 정보를 제공한 NCB, ⑮ 그 정보의 입력 날짜 등이다.¹⁴⁵⁾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될 일정한 사항의 유형으로 전적으로 사람에 관한 정보는 ① 체포의 목적으로 국제수배서가 NCB의 요청으로 사무총국에 의해서 배포된 사람, ② 소재지 파악, 추적 또는 조회 수배서가 NCB의 요청으로 사무총국에 의해서 배포된 자로서 범죄를 자행한 혐의가 있는 사람, ③ 소재지 파악, 추적 또는 조회 수배서가 NCB의 요청으로 사무총국에 의해서 배포된 자로서 실종된 사람, ④ 사무총국이 발행한 경고수배서의 대상자, ⑤ 체포의 목적으로 국제수배 메시지가 NCB에 의해서 배포된 사람, ⑥ 소재지 파악, 추적 또는 조회 메시지가 NCB에 의해서 배포된 자로서 범죄를 자행한 혐의가 있는 사람, ⑦ 소재지 파악, 추적 또는 조회 메시지가 NCB에 의해서 배포된 자로서 실종된 사람, ⑧ 위의 유형에 속하지 아니하나 사무총국이 경찰에게 그 데이터의 중요성 때문에 그 자에 관련된 데이터를 보관하도록 허가한 사람에 관한 정보¹⁴⁶⁾ 등이다.¹⁴⁷⁾

144) 영국의 데이터보호법 제2조 및個人資料의 자동처리에 관한 개인보호를 위한 유럽이사회의 협약 제6조 참조.

145) 인터폴 사무총국에 선택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및 NCB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직접 접근을 규율하는 규칙의 부속서 Point 1.1.

146) 사무총국이 경찰에게 그 데이터의 중요성 때문에 그 자에 관련된 데이터를 보관하도록 허가한 사람에 관한 정보는 하나 또는 수 개의 형사사건이 연계되고 이에 관련된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요약 및 분

나. 개인정보(non-personal information: point 2)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될 수 있는 비개인정보는 ① 도난 당했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습득한 동일 물품에 대한 이미지가 포함된 묘사, ② 모조 또는 위조된 화폐 및 문서의 이미지가 포함된 묘사, ③ 범죄수법의 묘사, ④ 국제적인 범죄활동의 실행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된 혐의가 있는 자동차, 비행기, 배 또는 기타 다른 교통 수단에 대한 묘사 등이다.¹⁴⁸⁾

(4) 데이터의 보유기간

가. 수배 및 신원확인 수배서

① 일차적 보유기간

체포 또는 소재파악의 목적으로 발행한 개인의 수배, 사람 또는 사체의 신원확인, 사람에 관한 정보 입수(조회), 목적물에 대한 조사 또는 확인에 관련된 수배서가 NCB의 요청으로 발행되었을 때 사무총국은 언제든지 그 수배서가 유효한 것인지 문의할 수 있다. 또 그 수배서가 발행된 날짜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수배서가 유효한 것인지 문의하고, 3개월 이내에 아무런 회신이 없으면 두 번째 문의를 한다. 두 번째 문의를 발송한 날짜의 3개월 이내에 관련된 NCB가 그 수배서의 유효성에 대해서 아무런 회신이 없으면 그 수배서는 취소된다. 따라서 체포 또는 소재지 파악의 목적으로 발행한 개인의 수배, 사람 또는 사체의 신원확인, 사람에 관한 정보 입수(조회), 목적물에 대한 조사 또는 확인에 관련된 적색, 청색 및 흑색수배서는 일차적으로 최장 5년 6개월간 유효하다.¹⁴⁹⁾

석보고서가 포함될 수 있다. 이들 요약 및 분석보고서는 형사사건이 조직범죄와 관련되었거나 또는 조직범죄로 간주되는 중대한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7조 5항 참조.

147)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의 부속서 Point 1.2.

148)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의 부속서 Point 2.

149)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 2항.

② 이차적 보유기간

일단 관련 NCB가 그 수배서의 유효성을 확인했다면 5년이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그 수배서의 취소는 연기된다. 그 수배서의 취소가 연기된 유효기간의 종기에 관련 NCB에게 그 유효성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아무런 회신이 없으면 재차 문의를 한다. 두 번째 문의를 발송한 날짜의 3개월 이내에 아무런 회신이 없으면 그 수배서는 취소된다. 따라서 적색, 청색 및 흑색수배서는 발행된 수배서가 연장된 경우에 이차적으로 최장 10년 6개월간 유효하다.¹⁵⁰⁾ 이차적으로 5년이 연장된 이후에 동 수배서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나 동 규칙 제3조 3항의 의미로 파악해 볼 때 사무총국의 문의에 대하여 NCB가 유효하다고 회신을 보내면 연속적으로 그 수배서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그에 관한 데이터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③ 수배서가 취소된 경우

가족의 요청으로 수배자의 소재지 파악, 목격자 또는 희생자에 대한 조사 또는 확인, 사체의 신원확인 및 목적물에 대한 조사 또는 확인에 관한 수배서는 그 수배서가 취소되면 그 정보는 삭제된다.¹⁵¹⁾ 수배서가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정보를 입수한 때로부터 그 수배서가 취소될 때까지 최장 10년간 보유된다.¹⁵²⁾

④ 보유기간의 연장 사유

사람의 범죄활동에 관한 정보의 보유기간 및 그 자에 대한 경고수배서의 유효기간은 그 자가 구금시에 보냈던 기간동안 연장된다. 따라서 구금기간이 3개월이었다면 10년 3개월이다.¹⁵³⁾ 사무총국이 어떤 사람의 범죄활동에 관련된 일련의 정보를 보유할 때 이들 정보는 그 일련의 정보에서 각 정보의 보유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보유된다.¹⁵⁴⁾ 또한 그 일련의 정보가 범죄사건과 관련될 때 범죄자 또는 혐의자로서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에

150)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 2항, 3항.

151)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3조 4항 (a).

152)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3조 4항 (b).

153)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3조 4항 (b) 및 제7조 1항.

154)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7조 2항.

관한 각 정보의 보유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이들 정보는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2년간 더 연장하기로 사무총국이 결정한다면 그 연장 사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서면 성명서가 준비되어야 한다.¹⁵⁵⁾ 마찬가지로 사무총국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조직범죄에 관련되고 간주되는 몇몇 중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일련의 정보를 보유할 때, 범죄자 또는 혐의자로서 하나 이상의 사건에 관련된 조직체를 구성하고, 관련된 사람에 관한 각 정보의 보유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이들 정보의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2년간 더 연장하여 보유하기로 사무총국이 결정하고자 한다면 그 결정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서면성명서를 준비하여야 한다.¹⁵⁶⁾

하나의 형사사건 또는 수 개의 연계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에 기초한 요약 또는 분석보고서는 일련의 정보가 범죄자 또는 혐의자로서 사람에게 관련된 요약 및 분석보고서와 일련의 정보가 범죄자 또는 혐의자로서 조직범죄에 관련되고 간주되는 몇몇 중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요약 및 분석보고서가 있다. 전자 및 후자의 요약·분석보고서는 각 정보의 보유기간이 만료할 때에 취소되거나 삭제되고, 2년간 더 연장하기로 사무총국이 결정하고자 한다면 그 연장 사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서면성명서를 준비해야 한다.¹⁵⁷⁾

나. 사람에 관한 보충정보를 입수할 목적으로 발행한 수배서

사무총국의 형사기록에 기재된 사람의 범죄활동에 관한 보충정보를 입수할 목적으로 사무총국이 자발적으로 발행하여 모든 NCB 또는 하나 이상의 지역에 배포된 국제수배서는 일단 1년의 기간이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유효하고, 그 유효기간의 취소를 지시하는 문서는 발행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수배서가 기초하고 있는 정보와 그러한 수배서의 결과로 입수한 정보는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삭제되지 아니하는 한 본 규칙의 다른 규정의 적용에서 허용되는 기간동안 보관되고 그 이후에 삭제된다.¹⁵⁸⁾ 즉 NCB의 요청으로 발행한 적색, 청색 및 흑색수배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일차적으로 5년 6개월의 기간이 적용되고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¹⁵⁹⁾

155)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7조 3항.

156)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7조 4항.

157)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7조 3, 4, 5항.

158)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정 제3조 5항

다. 정보요청서와 그 응답에 대한 기록

경찰정보의 요청서는 그 요청에 대하여 응답하기에 필요로 하는 기간동안 보관된다.¹⁶⁰⁾ 그러나 그 정보요청서에서 사무총국이 보유해야 하거나 또는 보유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요청서는 관련된 정보가 삭제될 때까지 보유한다.¹⁶¹⁾ 또한 사무총국은 NCB의 요청에 따라서 또는 자발적으로 정보를 전송할 때마다 전송된 정보가 기초하고 있는 정보의 항목이 삭제될 때까지 전송된 정보의 사본을 보유해야 한다.¹⁶²⁾ 이때에 정보요청서의 보유기간은 정보요청에 대하여 행한 답변의 사본에 적용되는 기간보다 단축되지 아니한다.¹⁶³⁾ 그러나 정보요청에 대한 응답에서 그 응답과 관련된 자료가 없다고 표시하는 경우에 그 응답한 사본은 보관되지 아니한다.¹⁶⁴⁾

따라서 사무총국은 정보요청서와 그 응답에 대한 기록을 삭제할 때 그 정보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NCB에게 다음의 경우에 통지해야 한다. 즉 실질적 삭제에 앞서 3개월 동안 삭제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발표하지 아니한 경우, 삭제될 항목이 개인정보인 경우 및 경찰에게 국제적 중요성이 있는 경우이다.¹⁶⁵⁾ 또한 사무총국이 그 정보를 전송한 모든 기구, 실체, 개인 및 그 정보를 전송받은 NCB는 그 전송이 삭제 이전에 3년의 기간사이에 행해졌다면 통지되고 실제적 삭제에 앞서 3개월 동안 NCB에게 삭제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고지했다면 통지하지 아니한다.¹⁶⁶⁾ 물론 모든 NCB 또는 하나 이상의 지역에 소재한 NCB에 대한 통지 또는 고지는 문서로 한다.¹⁶⁷⁾

라.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데이터의 경우

사무총국의 형사기록에 기재된 사람의 범죄활동에 관한 보충정보를 입수할 목적으로

159)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3조 1, 2항 참조.
 160)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8조 1항.
 161)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8조 1항.
 162)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8조 3항.
 163)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8조 2, 3항.
 164)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8조 4항.
 165)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8조 5항 (a).
 166)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8조 5항 (b).
 167)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8조 6항.

사무총국이 자발적으로 발행한 국제수배서와 NCB의 요청으로 발행한 수배서가 동일인에 관한 사항이라면, 즉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데이터인 경우에 좀더 장기간 보유하도록 규정된 기간동안 보유할 수 있다.¹⁶⁸⁾

마. 사무총국이 보유기간을 넘어서 보유하기 위한 조건

사무총국이 일정한 보유기간을 넘어서 데이터를 보유하기 위한 조건은 첫째, 그 정보가 과학적, 범죄학적인 측면에서 조사목적의 중요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사법 또는 행정절차의 맥락에서 인터폴 및 그의 요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삭제를 발표했거나 또는 3개월 이내에 삭제될 문서의 사본으로서 선택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행정파일시스템(administrative filing system)에서 보관된다.¹⁶⁹⁾ 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데이터, 즉 접수하고 전송한 문서의 날자와 참조, 그러한 문서의 발신자와 수신자에 관한 데이터는 본 규칙에서 규정된 삭제기일을 넘어서 보관되는 기간 동안 사무총국이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보유할 수 있다.¹⁷⁰⁾

바. ICTY, ICTR 및 ICC의 요청으로 발행한 수배서

ICTY, ICTR 및 ICC의 요청으로 발행한 수배서에 관한 데이터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현 규칙에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나 NCB가 요청한 수배서와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다. 즉 수배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문의한 후 그 유효성에 대하여 답변한 경우에 그 유효성은 5년의 간격으로 무한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에 대한 시효불적용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¹⁷¹⁾ 제1조 및 인도에 반한 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한 시

168)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2조 4항.

169)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2조 2항; 삭제를 발표했거나 또는 3개월 이내에 삭제될 문서의 사본은 행정파일시스템에서 5년간 보유된다. 동 규칙 제2조 2항 및 제8조 7항; 사무총국의 형사기록(General Secretariat's Criminal Records)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무총국이 범죄수사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을 허용되지 아니한다. 동 규칙 제2조 2항.

170)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2조 3항.

171) 동 협약은 1968년 11월 26일 UN총회의 결의(2391(XXII))로 채택되었다.

효불적용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 to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¹⁷²⁾ 제1조에서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는 범죄실행의 날짜에 관계없이 어떠한 법적 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인터폴과 ICTY, ICTR 및 ICC의 국제재판소간의 국제경찰협력은 UN의 결의를 기초로 채택된 재판소의 규칙 및 국제조약을 근거로 이행되고,¹⁷³⁾ 그의 관할범죄도 보통범죄와는 판이하게 성격이 다른 보편적 관할권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점이다. 셋째, 보통범죄자에 대한 적색수배서와 달리, ICTY의 요청으로 인도에 반한 범죄 및 전쟁범죄의 혐의로 발행한 전 유고연방대통령 슬로보단 밀라세비치(Slobodan Milosevic)의 적색수배서는 기소의 유효기간 또는 체포영장의 만료기간이 특별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¹⁷⁴⁾

5) 데이터의 입력, 접근, 수정 및 삭제

(1) 입력

사무총국에 전송된 경찰정보의 어떠한 항목도 그 정보를 제공한 NCB의 명확한 동의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지 아니한다.¹⁷⁵⁾ 즉 NCB는 사무총국에게 경찰정보를 제공하고 그 제공된 경찰정보는 그 NCB의 동의하에 사무총국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다. 이때 관련 데이터는 개인 및 비개인정보이다.

어느 국가의 NCB 또는 그 국가의 다른 법집행기관은¹⁷⁶⁾ 자신의 비용으로 터미널을 설치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¹⁷⁷⁾ 첫째, 입력될 수 있

172) 1974년 1월 25일에 체결된 ETS No. 82.

173) ICTY 및 ICTR의 소송절차 및 증거규칙 제39조 (iii) 및 ICC규정 제87조 1항 참조.

174) Control No. A-518/7-1999 및 File No.: 1999/29606 참조; 반면에 전 대우그룹 회장 김모씨에 대하여 발행한 적색수배서의 기소 또는 체포영장의 만료기간은 2002년 3월 5일로 설정되어 있다. Control No. A-148/3-2001 및 File No.: 2001/10335 참조.

175)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1조 3항.

176) 여기서 다른 법집행기관은 어느 국가의 NCB 이외에 경찰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집행기관으로, 예를 들면, 검찰, 마약수사대 등을 의미한다.

177)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1조 4항, 제3조 1항.

는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의 부속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비개인정보(point 2)이어야 한다. 둘째, 입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관련 NCB 또는 다른 법집행기관이 부담한다. 셋째, 경찰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법집행기관은 그 국가의 NCB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직접 접근하는 것을 승인하여야 한다. 넷째, 사무총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한계 내에서 직접 입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섯째, 그 입력된 데이터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NCB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한 NCB 또는 다른 법집행기관은 자신이 지출한 비용으로 그 데이터의 업데이트 및 삭제에 책임이 있다.¹⁷⁸⁾

(2) 접근

선택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자는 ① 사무총국, ② 각국의 NCB, ③ NCB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 그 국가의 다른 법집행기관,¹⁷⁹⁾ ④ 유럽폴과 같은 제3자이다.¹⁸⁰⁾ 그렇다고 해서 모든 NCB가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정보를 제공한 NCB는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직접 접근이 가능한 NCB를 지정할 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¹⁸¹⁾ 따라서 경찰정보를 제공하는 NCB는 그 제공된 정보를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법집행기관의 목록을 사무총국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사무총국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이 허용되지 아니한 NCB, 다른 법집행기관 및 그 밖의 제3의 당사자가 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¹⁸²⁾

(3) 수정 · 삭제

원칙적으로 사무총국은 정보를 제공한 관련 NCB의 동의없이 제공된 정보를 수정 ·

178)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2조 4항.

179) NCB는 그 국가의 다른 법집행기관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직접 접근을 허용할 권리가 있을뿐더러 그 접근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도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3조 3항.

180) 인터폴과 유럽폴간의 협력 협정(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Interpol and Europol) 제6조 7항; 유럽폴 사무국에 설치된 터미널을 통해서 인터폴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폴 사무총국에 파견되어 있는 연락관을 통해서 접근한다. 동 협력 협정 제4조.

181)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182)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3조 4, 6항.

삭제할 수 없다. 즉 정보를 제공한 NCB가 그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수정·삭제를 요청하면 사무총국은 그 정보를 수정·삭제하고, 또 관련 NCB로부터 수정·삭제하도록 승인받은 데이터만이 수정 또는 삭제된다.¹⁸³⁾

사무총국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정보를 제공한 NCB 또는 다른 NCB에 의해서 그 정보가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아니한 경우,¹⁸⁴⁾ ② 일정한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③ 일정한 보유기간을 경과하여 사무총국이 관련 NCB에게 그 데이터의 유효성을 재차 문의하였는데 그 문의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사무총국이 낡은 정보로 판단하는 경우,¹⁸⁵⁾ ④ 수배서의 발행 목적이 가족의 요청으로 수배자의 소재지 파악, 목격자 또는 희생자에 대한 조사 또는 확인, 사체의 신원확인 및 목적물에 대한 조사 또는 확인인 경우에 그 수배서가 취소되는 경우,¹⁸⁶⁾ ⑤ 수배서가 취소되었음에 불구하고 10년의 기간동안 보유된 경우 또는 데이터 보유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¹⁸⁷⁾ ⑥ 사무총국의 형사기록에 기재된 사람의 범죄활동에 관한 보충자료를 입수할 목적으로 사무총국이 발행하여 모든 NCB 또는 하나 이상의 지역에 배포된 수배서가 1년의 기간이 초과한 경우,¹⁸⁸⁾ ⑦, ⑥의 경우에 있어서 그 수배서가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즉 NCB의 요청으로 발행한 적색, 청색 및 흑색수배서와 같이 일차적으로 5년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¹⁸⁹⁾ 등이다.

데이터가 삭제되는 방법에 있어서도 ① 데이터가 종이 또는 마이크로 필름에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및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에 상응하여 사무총국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데이터를 파괴함이 없이 그 정보가 기록된 재료를 파괴함으로써 삭제된다.¹⁹⁰⁾ ② 데이터가 종이, 마이크로필름, 또는 비슷한 유형의 재료에 기록되고,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및 사

183)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3항.

184)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6항.

185)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5항,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3조 4, 5항, 제6조 5, 9항 및 제7조 5항 참조.

186)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3조 4항 (a).

187)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3조 4항 (b) 및 제7조.

188)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3조 5항.

189)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3조 1, 2, 5항 참조.

190)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9조 (a).

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에 상응하여 보관될 수 있거나 또는 보관될 때, 그리고 그 업무에서 발생하는 관련 비용과 많은 업무의 양으로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관련된 문서는 삭제되어 결과적으로 실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는 표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¹⁹¹⁾ 물론 이러한 데이터는 사무총국이 형사수사의 맥락에서 그 데이터를 사용하지 아니한다.¹⁹²⁾ ③ 관련되지 아니한 수많은 정보의 항목 또는 일련의 정보가 종이, 마이크로 필름 또는 비슷한 재료에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삭제될 정보에 대하여 접근하도록 부여한 색인 부분을 파괴한다.¹⁹³⁾ 마찬가지로 사무총국이 형사수사의 맥락에서 관련된 그 정보를 찾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아니한다.¹⁹⁴⁾ 마지막으로 ④ 그 정보가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기록매체에 관한 정보를 지움에 의해서 삭제된다.

6) 데이터보호에 관련된 사무총국과 NCB의 권리의무

(1) 사무총국

가. 의 무

① 안전과 기밀유지 및 필요한 예방조치 의무

사무총국은 ① 경찰정보의 안전과 기밀을 보호하고, 그 정보가 불법적 또는 부적당하게 처리되거나 또는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¹⁹⁵⁾ 이와 동시에 사무총국의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기밀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¹⁹⁶⁾

191)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9조 (b).

192)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9조 (b).

193)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9조 (c).

194)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9조 (c).

195)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196)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

② 정보의 처리, 전송 및 발행의무

NCB 및 형사법의 집행과 관련된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송된 경찰정보를 처리, 전송 및 발행할 의무가 있다.¹⁹⁷⁾

③ 정보원의 보호, 정보의 내용에 대한 왜곡금지 및 분석된 정보와 사실과의 구별 의무

제공된 경찰정보의 전송 및 발행 의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NCB가 정보원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 즉 정보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¹⁹⁸⁾ 또 경찰정보를 전송할 때 그 정보의 내용을 왜곡하지 말아야 하고, 그 정보원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¹⁹⁹⁾ 사무총국이 분석하여 작성한 정보의 요약 또는 그 경찰정보로부터 도출된 추론 또는 결론을 전송할 때 그 추론·결론은 그 정보의 사실(fact)과 명확히 구별해야 할 의무가 있다.²⁰⁰⁾

④ 수정 또는 삭제 의무

정보를 제공한 NCB가 그 전송한 정보에 대하여 수정 및 삭제를 요구할 경우에 수정 또는 삭제, 사무총국이 접근 가능한 정보, 비회원국의 범집행기관이 제공한 정보 및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정부간기구가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에 그 정보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의무,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정보, 즉 보유기간이 만료한 정보를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²⁰¹⁾

⑤ 통지 의무

여러 NCB로부터 전송받은 동일한 정보를 어느 한 NCB가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사무총국에게 요청하면 그 요청에 유의하여 그 정보를 제공한 NCB 및 사무총국이 그 정보를 전

197)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 제7조 1항.

198)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7조 4항; 어느 NCB가 그 정보원의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 그 정보원에 관련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고 답해야 한다. 동 규칙 제7조 4항.

199)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7조 5항.

200)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7조 5항.

201)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3·5항, 제6조 1·2항.

송한 다른 관련 NCB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²⁰²⁾ 또한 경찰정보를 전송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기간에 삭제 또는 실체적으로 수정된 정보는 그 정보를 전송했던 NCB, 모든 기구, NCB외의 법집행기관, 법인, 사인 등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²⁰³⁾

⑥ 정보의 정확성 및 업데이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접근 가능한 정보원, 비회원국의 형사법집행에 관련된 공공기관,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정부간기구, 사인 및 법인체 등이 전송한 정보가 부정확하고 더 이상 정확하지 아니하다면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²⁰⁴⁾

⑦ 기록의무

사인 또는 법인에게 제공받은 정보,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동안 경찰정보의 요청 및 전송한 내용에 대한 기록 의무가 있다.²⁰⁵⁾

⑧ 정보요청에 대한 제공 또는 거절 의무

경찰정보의 요청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없거나 경찰정보를 처리하는 목적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 요청을 거절할 의무가 있다. 반면에 정당한 근거가 있고 경찰정보를 처리하는 목적에 일치되면 그 요청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²⁰⁶⁾

⑨ NCB의 허가없이 경찰정보의 전송 및 발행 금지 의무

NCB가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정보, 낡은 정보,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외하고 NCB의 허가없이 경찰정보의 전송 및 발행을 금지할 의무가 있다.²⁰⁷⁾

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직접 접근 금지에 관련된 조치를 취할 의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직접 접근이 허가되지 않은 NCB, 다른 법집행기관 및 제3자

202)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4항.

203)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9조 2·3·4항.

204)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6조 2·3항.

205)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 제9조 1항.

206)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8조 1항, 제3조 4·5항.

207)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8조 5항 및 제10조.

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²⁰⁸⁾

① 감독위원회의 기록 보관

사무총국은 일정한 기간동안 감독위원회의 증명, 수사 및 결정에 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²⁰⁹⁾

나. 권 리

① 경찰정보 처리, 전송 및 발행권

접근 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입수된 정보, 인터폴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형사법집행에 관련된 공공기관이 전송한 정보 및 공적의무를 수행하는 정부간기구에서 전송한 정보의 처리 및 인터폴의 목적에 관련된 정보, 즉 보통범죄의 예방, 진압, 범죄자에 대한 기소, 실종자의 발견 및 사체의 신원확인에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전송 및 발행할 권리가 있다.²¹⁰⁾ 사인 또는 법인에게 제공받은 정보도 관련된 다른 정보와 함께 해당 국가의 NCB에게 전송할 권리가 있다.²¹¹⁾ 그러나 비회원국의 형사법집행기관 또는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정부간기구가 보낸 정보는 그 정보원과 협의나 그의 견해를 고려함이 없이 사무총국의 독자적인 판단하에 그 경찰정보를 다른 NCB에게 전송 또는 발행하지 아니한다.²¹²⁾

② 수정 또는 삭제권

정보를 제공한 NCB에 의해서 업데이트가 되지 아니한 정보, 접근 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입수된 정보, 인터폴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형사법집행에 관련된 공공기관이 전송한 정보 및 공적의무를 수행하는 정부간기구가 전송한 정보가 부정확하고 더 이상 정확하지 아니하며, 업데이트가 되지 아니한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할 권리가 있다.²¹³⁾ 또한 일정한 보유기간이 경과한 정보에 대한 삭제권이 있다.²¹⁴⁾

208)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3조 4항.

209)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21조 6항.

210)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6조 1항, 제7조 1항 및 제8조 2·5항.

211)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

212)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6조 1항 (b) 및 제8조 4항.

213)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6항, 제6조 2항, 제8조 5항.

③ NCB에 대한 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요청권

정보를 제공한 NCB가 최신의 정보로 업데이트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무총국은 그 정보를 수정하거나 또는 적절하다면 삭제하도록 관련 NCB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다.²¹⁵⁾

④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및 사인·법인에 대한 정보의 불요청권

NCB에게 국제경찰협력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요청할 권리는 있으나 일반 사인 또는 법인에게 경찰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는 없다.²¹⁶⁾

(2) NCB

가. 의무

① 정확 및 최신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NCB는 사무총국에게 또는 NCB의 동의하에 NCB 이외의 다른 법집행기관이 사무총국에게 전송한 경찰정보가 정확하고, 최신 정보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²¹⁷⁾

② 전송한 정보의 기록 보관 의무

사무총국에게 전송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간동안 전송된 기록을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²¹⁸⁾ 그 국가의 다른 법집행기관이 사무총국에게 전송한 정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동안 기록해서 보관해야 한다.

③ 정보요청시 그 사유를 제시할 의무

NCB는 사무총국에게 경찰정보의 전송을 요청할 때 그의 사유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²¹⁹⁾

214)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제2조 3·4항 제3조 4·5항, 제4조 4항 및 제5조 2항 참조

215)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2항.

216)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

217)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2항.

218)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2항.

④ 사실 정보와 그 사실로부터 도출된 추론 또는 결론과 구별의무

NCB는 사무총국에게 경찰정보를 전송할 때 사실 정보와 그 사실로부터 도출된 추론 또는 결론과 명확히 구별해야 할 의무가 있다.²²⁰⁾

⑤ 직접 접근이 승인된 목록 제출의무

사무총국에게 경찰정보를 제공한 NCB는 그 정보에 대하여 직접 접근이 가능한 국가를 지정하고 또 취소할 수 있으며, NCB 이외의 다른 법집행기관이 직접 접근의 허용 또는 취소도 가능하다. 이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직접 접근이 승인된 경찰임무를 수행하는 법집행기관의 목록을 사무총국에게 제출한 의무가 있다.²²¹⁾

나. 권리

① 제공한 정보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 요청권

사무총국에 전송된 정보가 부정확하고 또한 더 이상 정확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 그 정보에 대한 수정 및 삭제 요청권이 있다.²²²⁾

② 정보원 보호 요청권

사무총국에게 보낸 경찰정보의 정보원을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²²³⁾

③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직접 접근, 입력, 지정 및 취소권

자신이 지출한 비용으로 설치한 터미널을 사용하여 사무총국에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할 권리가 있고, 정보를 제공한 NCB는 그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직접 접근할 수 있는 NCB를 지정할 수 있다.²²⁴⁾ 즉 일정한 정보는 정보를 제공한 NCB

219)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8조 1항.

220)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2항.

221)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3조 6항.

222)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2·3·4항.

223)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7조 4항.

가 직접 접근이 허용한 NCB를 지정할 수 있는 반면에 지정되지 아니한 NCB는 그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없다.

NCB가 제공한 개인 및 비개인 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한 NCB의 동의하에 사무총국이 입력하지만 비개인정보만은 NCB, NCB 이외의 다른 법집행기관도 일정한 조건하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직접 입력할 수 있다.²²⁵⁾ 이 조건은 ① 다른 법집행기관은 경찰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② 그 자신이 지출한 비용으로, ③ 그 국가의 NCB의 동의하에 직접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④ 사무총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한된 방법으로, ⑤ 회원국의 NCB 또는 법집행기관이 그 정보에 대하여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NCB는 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법집행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직접 접근을 승인할 수 있는 반면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²²⁶⁾

④ 동의 및 철회권

사무총국에 전송된 경찰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한 NCB의 동의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지 아니하고, 그 제공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철회할 수 있다.²²⁷⁾ 즉 제공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될 수 있다.

⑤ 통지받을 권리

사무총국이 경찰정보를 전송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기간에 삭제 또는 실제적으로 수정된 정보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²²⁸⁾

224)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3조 1·2·3·4항

225)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1조 3·4항

226)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3조 3·4항

227)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제1조 3항, 제2조 1항.

228)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9조 2·3항.

7) 데이터보호에 관한 감독위원회

(1) 설치 목적 및 근거

감독위원회는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를 위해서 설치하고,²²⁹⁾ 그 근거,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방법, 임무 및 기타 등은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및 교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²³⁰⁾

(2) 구성

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첫째, 데이터보호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공정성과 능력의 견지에서 또는 사법관련 고위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회원국이 지명한 후보자의 명단 중에서 집행위원회에서 임명한 사람,²³¹⁾ 인터폴 본부 소재 지국인 프랑스가 임명한 사람 및 인터폴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임명된 사람이다.²³²⁾ 인터폴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임명된 사람이 동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의 임명에 대해서 인터폴과 프랑스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국에 의해서 임명된다.²³³⁾ 둘째,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임명된 1명의 인터폴 집행위원회 위원과 인터폴이 제출한 5명의 후보의 명단 중에서 감독위원회의 위원장에 의해서 임명된 전자데이터처리 전문가 등이다.²³⁴⁾

위원이 임명되는 절차와 동일하게 임명된 위원의 대리인은 위원이 회의를 참석할 수 없을 때 그 위원을 대신하고, 위원이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사임한 경우에 그 위원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대리인이 수행한다.²³⁵⁾

229)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15조

230)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6조 및 교환문서 제1조-제7조.

231)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18조 1항.

232)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17조 2항.

233)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17조 2항.

234)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16조 (b)·(c) 및 교환문서 제1조, 제2조.

235)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18조 5·6항 및 교환문서 제3조.

(3) 자격과 임기

회원국의 국민이 되어야 하고, 이들 위원의 국적이 서로 달라야 하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무총국의 실무언어에 능통해야 한다.²³⁶⁾ 또한 데이터 보호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공평성과 능력의 견지에서 사법관련 고위직이거나 또는 역임했던 자, 현행 집행위원회의 위원인 자 및 데이터처리 전문가 등이어야 한다.²³⁷⁾

동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승인된 경우에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한 번 더 임명될 수 있다.²³⁸⁾ 임기의 개시는 위원회에서 다섯번째로 위원이 임명되는 날짜에 개시되고 그의 대리인은 위원의 잔여 임기동안 재임한다.²³⁹⁾

(4) 임무

감독위원회는 인터폴 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하여 검증하는 업무가 있다. ① 개인정보가 기구의 현장의 규정과 기구의 적절한 기관에 의해서 부여한 해석에 상응하여 입수되고 처리되었다는 것, ② 개인정보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고 이들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것, ③ 개인정보가 정확하다는 것, ④ 기구가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 상응하여 제한된 기간동안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²⁴⁰⁾

(5) 위원의 권리의무

위원은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터폴의 문서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인터폴 사무총장, 사무국의 직원 및 집행위원회의 위원 및 각국의 NCB와 협의할 수 있고, 진술 청취권도 있다.²⁴¹⁾ 또한 인터폴 사무총장 또는 그의 대표로부터 위

236)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17조 1항, 제18조 3항 및 교환문서 제1조.

237)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교환문서 제1조.

238)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18조 3항.

239)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18조 3항.

240)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교환문서 제5조.

241)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24조.

원회의 업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²⁴²⁾

위원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 또는 기구로부터 지시를 요청하거나 받아서도 아니 되고, 임무수행의 결과 또는 임무와 관련하여 그들이 알았던 모든 사실은 비밀로 간주해야 한다.²⁴³⁾

(6) 회 의

인터폴 사무총장 또는 그의 대표와 협의한 후에 위원회는 위원장에 의해서 적어도 1년에 한번 회의를 개최한다.²⁴⁴⁾ 위원회의 정족수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대리인을 포함하여 4명의 위원이 참석해야 하고, 위원회의 결정은 단순과반수에 의해서 결정되며, 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²⁴⁵⁾

8) 데이터보호에 관련된 분쟁 해결

NCB간 또는 NCB와 사무총국간에 제기된 분쟁은 합의된 조치(concerted action)로 해결되어야 한다. 만약 이 합의된 조치로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문제는 집행위원회, 그리고 필요하다면 총회에서 해결하게 된다.²⁴⁶⁾

9) 데이터보호 제도에 대하여 유럽폴과의 비교

(1) 문제의 제기

이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터폴이 보관중에 데이터가 유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문의하는 과정에서 테러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관한 정보가 특

242)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21조 4·5항.

243)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19조.

244)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21조 1항.

245)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21조 2·3항.

246)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13조.

정국가로부터 몇몇 사건에 관련된 테러리스트들에게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²⁴⁷⁾ 또한 네덜란드 경찰의 어느 조직범죄대책반은 인터폴과 마약거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마약운송에 협력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어느 국가의 법집행기관요원의 손에 마약관련 정보가 넘어갈 것 같다는 우려 때문이다.²⁴⁸⁾ 이와 같은 비판에서도 인터폴 집행위원회는 데이터보호에 관한 유럽의 실무단이 초안한 두개의 권고안을 거절한 바 있다.²⁴⁹⁾ 반면에 인터폴의 데이터보호 제도는 유럽폴과 비교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도 있다.²⁵⁰⁾ 따라서 데이터보호 제도에 대해서 인터폴과 유럽폴을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유럽폴과의 비교

인터폴과 유럽폴의 데이터보호제도에 대한 비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항에 한정하고자 한다.

첫째, 데이터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이다. 유럽폴은 유럽연합조약을 기초로 체결된 유럽폴 협약의 제5조-제25조, 기밀보호에 관한 규정 및 기밀보호 위반에 관련된 각 회원국의 국내법이다.

반면에 인터폴은 이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터폴 현장을 모범으로 한 일반규정의 부속서로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인터폴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제정된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및 프랑스 정부와 체결한 교환문서 등이다. 따라서 인터폴의 데이터보호에 관련된 제 규정은 Soft Law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고, 유럽폴은 Hard Law인 국제조약이다.

둘째, 데이터의 안전조치에 관련된 규정이다. 유럽폴은 허가없는 자가 ① 개인자료처리를 위해서 사용된 기기에 대한 접근방지(기기 접근 통제), ② 데이터 매체의 읽기, 복사, 수정

247) John Benyon *et al.*, *op. cit.*, p. 129.

248) Michael Santiago, *op. cit.*, p. 21.

249) Malcolm Anderson *et al.*, *op. cit.*, p. 52.

250) Souheil El Zein, "Striving Towards Common Goals: Can European Organizations Work Together", *Interpol: 75 years of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London : Kensington Publications Ltd, 1988), p. 21.

및 삭제 방지(데이터 매체 통제), ③ 개인자료의 입력, 조사, 수정 또는 삭제 방지(저장통제), ④ 데이터 전송장비의 사용 방지(사용자 통제), ⑤ 개인자료가 전달중에 읽기, 복사, 수정, 삭제를 방지해야 한다(이송 통제). ⑥ 허가받은 자만이 접근이 허용된 자료에 접근 보장(데이터 접근 통제), ⑦ 데이터 전송장비로 개인자료가 어느 기관에게 전송되는지 입증가능성의 보장(전송 통제), ⑧ 어떠한 개인자료가 입력되고 언제 누구에 의해서 그 데이터가 입력되었는지에 대한 입증가능성의 보장(입력 통제), ⑨ 설치된 시스템이 정지되는 경우에 즉시 복구 보장(복구) 및 시스템은 흠결이 없이 업무의 수행(신뢰성) 및 ⑩ 문제점이 발견시 즉시 보고되어 저장된 데이터는 오작동으로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²⁵¹⁾

반면에 인터폴은 유럽폴과 같은 규정은 없고 다만 경찰정보가 불법적 또는 부적당하게 처리되거나 또는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 정보원의 보호의무, 정보의 내용에 대한 왜곡금지 의무, 직접 접근이 금지된 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의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셋째, 데이터보호를 위한 감독위원회이다. 유럽폴은 범죄정보시스템에 입력이 가능한 데이터인지 여부, 검색, 유럽폴과 개인자료를 주고받은 내용을 모니터하고, 데이터 주체의 권리의 침해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국내법에 상응하여 설치된 국내감독기관(National Supervisory Body)이 있다. 또한 유럽폴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저장, 처리 및 사용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럽폴이 전송하는 데이터가 전송가능한 데이터인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행하는 공동감독기관(Joint Supervisory Body)이 있다.²⁵²⁾

반면에 인터폴은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를 위하여 감독기관(Supervisory Body)이 있으나 인터폴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가능한 데이터인지 여부, 검색, 인터폴과 개인자료를 주고받은 내용을 모니터하고, 데이터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상응하여 설치된 국내감독기관은 없다.

넷째, 기밀유지에 관한 규정이다. 유럽폴은 기밀유지에 관하여 ① 유럽폴에 의해서 입수된 또는 주고받은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② 유럽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기밀유지에 관한 적절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²⁵³⁾ ③ 민감한 활동에 관련된

251) 유럽폴 협약 제25조.

252) 유럽폴협약 제23조, 제24조.

253) 유럽폴협약 제31조 1항; 이 규정을 근거로 유럽폴 정보의 기밀유지에 관한 규칙과 그의 부속서가 채택

정보를 담당자에게 위임한 반면에 국내법 규정에 상응하여 수행된 기밀의 안전성 검사를 유럽폴 사무총장의 요구로 착수하여 관련기관이 그 결과를 유럽폴에게 통보해야 한다.²⁵⁴⁾ ④ 유럽폴의 기관, 직원, 사무국의 부총장, 연락관 및 기타 기밀유지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는 그들의 의무 또는 업무 수행중에 알게된 사실 또는 정보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 또는 일반대중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²⁵⁵⁾ ⑤ 그 의무는 업무를 중단하거나 사직한 이후에도 적용된다.²⁵⁶⁾ ⑥ 업무상 취득한 기밀에 대하여 유럽폴 직원은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의 허가없이 재판도중에 또는 재판정 밖에서 증언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진술도 허용되지 아니한다.²⁵⁷⁾ ⑦ 각 회원국은 기밀보호 의무의 위반에 대한 국내법을 도입하여 관련 규정이 업무상 유럽폴과 접촉하는 자에게 적용하여야 한다.²⁵⁸⁾

반면에 인터폴 사무총국은 경찰정보가 불법 또는 부적당하게 처리되거나 또는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사무총국의 직원도 업무상 취득한 기밀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다.²⁵⁹⁾ 그러나 유럽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밀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의무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다섯째, 데이터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이다. 유럽폴은 유럽폴에서 저장 또는 처리된 데이터에서 법적 또는 사실상 실수의 결과로 개인에게 야기한 손해에 대하여 국내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회원국이 부정확한 데이터를 전송하였다고 항변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²⁶⁰⁾

반면에 인터폴은 경찰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또는 사실상의 실

되었다. Council Act of 3 November 1998 adopting rules on the Confidentiality of Europol Information(OJ C 26, 30/01/1999, pp. 10-16) 및 Annex to the Rules on the Confidentiality of Europol Information(OJ C 86, 16/03/2001, p. 1) 참조.

254) 유럽폴협약 제31조 2항.

255) 유럽폴협약 제32조 2항.

256) 유럽폴협약 제32조 2항.

257) 유럽폴이 보유한 기밀과 관련된 사건이 있는 경우에 사무총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관련 사법기관에게 접촉하여 각 회원국의 국내법상 적용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조치는 그 정보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언절차를 조정할 수 있고, 또는 국내법상 허용되고 유럽폴과 어느 회원국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면 관련된 데이터의 전달을 거절할 수도 있다. 유럽폴협약 제32조 3항.

258) 유럽폴협약 제32조 4항.

259)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제4조.

260) 유럽폴협약 제38조 1항.

수의 결과로 발생한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을 도표로 그리면 <표 5>와 같다.

<표 5> 데이터보호에 대한 유럽폴과 인터폴간의 비교

구 분	유럽폴	인터폴
법적 근거	유럽폴은 유럽연합조약을 기초로 체결된 유럽폴 협약의 제5조-제25조, 기밀보호에 관한 규정 및 기밀보호 위반에 관련된 각 회원국의 국내법	인터폴 헌장을 모범으로 한 일반규정의 부속서로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칙,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및 프랑스 정부와 체결한 교환문서
안전조치	기기 접근 통제, 데이터 매체 통제, 저장통제, 사용자 통제, 이송 통제, 데이터 접근 통제, 전송 통제, 입력 통제, 사고시 즉시 복구,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문제점이 발견시 즉시 보고 및 오작동으로 인한 데이터의 왜곡금지	유럽폴과 같은 규정은 없음. 다만 경찰정보가 불법적·부적당하게 처리·전송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 정보원의 보호의무, 정보의 내용에 대한 왜곡금지 의무, 직접접근이 금지된 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의무
감독위원회	회원국의 국내법에 상응하여 설치된 국내감독기관과 유럽폴협약에 의한 공동감독기관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를 위한 감독기관은 있으나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상응하여 설치된 국내감독기관은 없음.
기밀유지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기밀유지에 관한 규칙의 제정, 기밀의 안전성 검사 및 그 결과 통보, 기밀누설의 금지, 허가없이 재판 도중에 또는 재판정 밖에서 증언 및 진술 금지, 기밀보호 의무의 위반에 대한 국내법을 도입하여 유럽폴과 접촉하는 자에게 적용함	일반적으로 직원의 업무상 취득한 기밀보호 의무 등은 규정하고 있고 유럽폴과 같은 세밀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법적, 사실상 실수의 결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내법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필자가 연구·분석하여 작성함

10) 느슨한 데이터보호 체제가 제기한 국제경찰협력의 장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다는 점,²⁶¹⁾ 개인의 신분, 인권, 사생활 및 개인적 또는 공적인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²⁶²⁾ 각국의 데이터보호법이 제정되었다고 본다면 인터폴과 유럽폴도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인터폴과 유럽폴은 범죄정보 또는 경찰정보가 조직범죄집단 또는 테러집단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폴은 나름대로 데이터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 데이터의 종류, 보유기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입력, 접근, 수정, 삭제, 감시·감독을 위한 감독위원회, 분쟁해결 방법 등 일련의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유럽폴과 비교해 볼 때 인터폴은 데이터의 안전조치, 데이터보호를 위한 감독위원회, 기밀유지에 관한 조치,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에 그에 대한 구제제도 등에 있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인터폴의 데이터보호는 1987년의 유럽이사회의 권고에서²⁶³⁾ 규정하고 있는 필요조건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도화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유럽국가들이 요구하는 데이터보호의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견해는²⁶⁴⁾ 다섯 가지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유럽폴과 센겐이행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보호에 관련된 규정은 연성적 성질을 지닌 유럽이사회의 권고가 경성적 성질을 지닌 국제조약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연성적 성질을 지닌 권고가 경성법으로 전환되었다. 반면에 인터폴의 데이터보호체도는 여전히 연성법적인 토대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점에서 유럽의 국가들이 요구하는 데이터보호의 수준에 달성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NCB가 사무총국에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데이터보호에 관련된 인터폴의 제규정이 사무총국과 사무총국의 직원들에게 구속력

261) 독일연방 데이터보호법 제1조.

262) 프랑스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1조.

263) 정확한 명칭은 다음과 같다: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Recommendation No. R (87) 15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264) Souheil El Zein, *op. cit.*, p. 21.

이 있다할지라도 이들 제규정이 각 회원국의 입장에서 연성적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문의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가 악용될 여지가 있다.

셋째, 인터폴 사무총국에 데이터보호를 위한 감독위원회가 있으나 각국의 NCB에 접근하여 주고받은 내용을 모니터하고 데이터 주체의 권리의 침해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국내법에 상응하여 설치된 국내감독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넷째, 유럽폴의 직원은 업무를 중단 또는 사직한 이후에도 업무수행 중에 획득한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재판중 또는 재판정 밖에서 증언 또는 진술할 의무가 일정한 요건하에 허용되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사항이 인터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유럽폴은 경찰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또는 사실상 실수의 결과로 발생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구제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인터폴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데이터보호 제도는 실효적인 국제경찰협력의 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평가

Ⅲ, 3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경찰협력은 대협력의 단계, 중간협력의 단계, 소협력의 단계가 있다. 인터폴은 중간협력의 단계로서 사무총국과 각 회원국, 그리고 각 회원국간에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고, 사무총국에서 경찰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중간 간부급의 각종 실무자 회의를 통하여 경찰협력을 이행하고 있다. 문제는 인터폴이 국제법과 국내법이 조화가 이루어진 대협력의 단계가 아니라 연성법적 성질을 지닌 중간협력의 단계라는 점이다. 따라서 연성법적인 체제하에 운영되고 있는 인터폴은 실효적인 국제경찰협력의 이행에 있어서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장애는 첫째, NCB에게 요청된 국제경찰협력의 이행에 대한 구속력이 각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제한된다.

둘째, 일종의 국제영장으로서 각 회원국에게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할 수 있는

적색수배서가 국내법상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는 국가와 없는 국가, 그리고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요청하여 발행한 수배서만이 효력이 있는 국가로 분류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인터폴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범죄 및 경찰정보에 관한 데이터보호 제도가 유럽폴과 같은 수준으로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데이터의 유출에 대하여 선진국들이 비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폴 및 선진국들은 중요한 경찰정보 또는 범죄정보를 인터폴과 공유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미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외교채널을 통해서 이행되고 있는 형사사법공조와 같이 복잡한 여러 경로를 거쳐서 수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총국과 NCB, 각 회원국의 NCB와 NCB간에 연결된 채널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경찰협력의 이행에 있어서 소요되는 기간이 외교채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고, 범죄정보 또는 경찰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전세계 181개국과 국제경찰협력을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도피사범과 같은 국제보통범죄, 각종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각국의 정치, 사회, 문화적인 차이로 야기되는 법제도의 상이성으로 말미암아 국제법과 국내법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현실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80여년의 역사를 지닌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 체제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국제경찰협력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된다.

IV.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방안

1. 현행 체제에서 국제경찰협력의 강화방안

1) 국내적 측면의 강화방안

(1) 적색수배서의 효력을 위한 관련법 개정 및 제정

대한민국은 형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적색수배서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적색수배서는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볼 수 없고, 긴급구속영장과 같은 효력도 없다. 또한 대한민국이 여러 국가와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에서 긴급인도구속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해도 관련된 서류가 대부분 외교경로 통해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측면에서 효용가치가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외교채널을 통하여 적색수배자의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하는데 필요한 소요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설사 적색수배자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자료의 전달에 필요한 소요기간도 마찬가지로 너무 오래 걸리므로 그 효용가치가 감소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발견된 적색수배자는 경찰이 그의 동향을 조사하거나 또는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견된 경우에 추방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긴급인도구속을 할 수 없다.²⁶⁵⁾

비록 적색수배서가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보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여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적색수배서 발행의 법적 근거가 각 인터폴 회원국의 법원의 판결 또는 법집행기관이 발행한 구속영장이라는 점이다.²⁶⁶⁾

265) 적색수배서자에 대한 법적 조치에 관한 법무부의 견해도 ① 적색수배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② 다만, 재판관할권을 가진 국가가 공식적으로 범죄인인도를 요청한 경우에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 또는 요청국과의 범죄인인도조약에 의거하여 가능한 경우에 적색수배자를 요청국에 인도할 수 있고, ③ 적색수배자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에 위반하여 불법체류하는 경우에 동법에 따라 외국으로 추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적색수배서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각국의 현황을 살펴본 바와 같이 적색수배서를 근거로 긴급구속이 가능한 국가는 36개국이고,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당사국이 요청한 적색수배서를 근거로 긴급인도구속이 가능한 국가는 43개국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적색수배서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답변한 110개국 중 79개국이 긴급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답변한 사실에 유의하자는 점이다.

셋째, 대한민국이 여러 국가와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외교경로를 통하여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에 소요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므로 치고 도망가는 수법의 해외도피사범에 대하여 외교채널은 사실상 효용가치가 없다. 즉 범죄인인도 절차상 필요한 소요기간은 제트비행기에 의한 수송수단과 초스피드의 통신수단의 아니라 마차나 증기선에 의한 시대와 같이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이다.²⁶⁷⁾ 게다가 검찰이 과연 범죄인인도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실적이 너무 적다.²⁶⁸⁾ 따라서 국제전화 또는 Fax 등을 이용하여 현재 해외로 도피중인 자 또는 해외도피사범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터넷의 채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자는 점이다.

넷째, 국내법상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지 아니한 국가가 적색수배서의 발행을 요청하여 긴급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는 국가에게 배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지극히 모순이라는 점이다. 즉 대한민국이 요청하여 발행한 적색수배서가 국내에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포된 여러 국가에서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지극히 모순이고, 이러한 모순적인 현실을 탈피하자는 점이다.

다섯째, ICTY·ICTR 또는 ICC가 요청하여 발행한 적색수배서는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적색수배자를 국내에서 발견한 경우에 범집행당국이 직접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266) 대한민국이 요청하여 발행한 적색수배서 Control No. A-148/3-2001, File No.: 2001/10335은 서울지방법원이 2001년 3월 6일에 발부한 체포영장 No. 361이고, Control No. A-405/5-2000, File No.: 2000/18681은 부산지방법원이 1999년 9월 21일에 발부한 체포영장 No. 660이다; Usama Bin Laden에 대하여 미국이 요청하여 발행한 적색수배서 Control No. A-326/4-2000, File No.: 1998/20232도 뉴욕의 사법기관에서 1998년 12월 16일에 발행한 체포영장 No. S6 98 CR-1023을 근거로 한 것이다.

267) Geoff Gilbert, *Aspects of Extradition Law*(Dordrecht/Boston/Lond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1), p. 1.

268) 앞의 각주 54 참조.

여섯째, 대한민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중국과 스페인은 대한민국이 요청하여 발행한 적색수배서를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보고 있음에 반하여 대한민국은 그러한 요청서로 간주하지 아니한 것은 상호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범죄자의 진압이라는 공동의 이익과 상호주의의 관점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적색수배서가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와 같은 효력이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적색수배서가 국내법상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되고, 적색수배자를 긴급인도구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되어야 할 3개의 법률과 제정되어야 할 法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에 규정된 긴급체포에 사유에 적색수배자를 포함시키는 방향 또는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준현행범인의 유형에 적색수배자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 네 가지의 조건이 전제된다. ①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체류중에 자행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행된 적색수배자가 국내에서 체포된 경우에 국내법상 속인주의의 원칙 및 자국민불인도의 원칙과 관련된 규정과 일치되어야 한다.²⁶⁹⁾ ② 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쌍방가별성의 원칙·특정성의 원칙, 인터폴 제3조의 규정과 유사한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이 준용되어야 하고, 1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이어야 한다. ③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에 의하여 발행된 적색수배자가 대한민국에서 발행요청국으로 추방 또는 인도된 이후에 대한민국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④ 반대로 대한민국이 요청하여 발행된 적색수배서에 의해서 그 수배자가 대한민국으로 범죄인인도 또는 강제송환되어 그 적색수배자에게 부여된 혐의를 조사한 후에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요청한 적색수배서만이라도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기 위하여 범죄인인도법 제24조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수 있다고 제시할 수 있다. 즉 제24조의 기존의 조문은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경찰청장은 인터폴이 발행한 적색수배서를 전달받은 경우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69) 형법 제3조; 범죄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요청국에 대한 인도에 대하여 범죄인인도법은 임의적 인도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범죄인인도법 제9조 1항); KNCB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타국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적색수배서를 발행한 건수가 2002년 9월 24일 기준으로 현재 11건이 있다.

고 규정하고, 제26조에서 2항을 신설하여 “검사는 제24조 2항과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긴급인도구속명령이 있는 때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제26조 2항은 제3항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정한다면 적색수배서도 외교채널에 의해서 전달된 긴급구속요청서와 마찬가지로 범죄인인도법에 의하여 범죄인인도에 적용되는 기본원칙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²⁷⁰⁾ 다시 말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적색수배서, 예를 들면, 쌍방가벌성의 원칙·특정성의 원칙·자국민불인도의 원칙과 관련된 사항이 충족된다는 조건, 대한민국의 국내법상 인도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범죄인인도법 및 범죄인인도조약에서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형량인지에 대하여 검토한 후에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하여 긴급인도구속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셋째,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규정된 강제퇴거 대상자의 범주에 적색수배자도 포함시켜 적색수배서의 발행을 요청한 국가에게 추방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다.²⁷¹⁾ 마찬가지로

270) 범죄인인도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 참조.

271) 물론 출입국관리법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된 자”의 범주에 적색수배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 강제퇴거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 입국 이전에 체류국 또는 본국에서 범죄행위를 하였거나 입국시 또는 입국한 후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유에 의하여 추방하는 강제퇴거와 긴급인도구속에 의하여 인도되는 범죄인인도는 강제로 체류국의 영역으로부터 퇴거된다는 점은 같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양자는 명확히 다르다. 그 차이는 첫째, 외국의 요청 여부이다.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상호주의를 근거로 범죄인인도를 요청한 국가가 외교채널 또는 인터폴 채널을 통하여 반드시 범죄인인도를 요청하여야 한다. 반면에 강제퇴거는 외국의 요청이 없이도 관계당국이 관련 법률 위반시에 자발적으로 행한다. 둘째, 출입국 통제 지역을 떠날 때에 신분상의 지위이다. 범죄인인도는 범죄자로서 출국하고, 강제퇴거는 자유인의 신분으로 출국한다. 경찰청, *supra note* 31, p. 109 참조; 셋째, 법적 근거이다. 범죄인인도는 범죄인인도조약이라는 국제조약을 전제로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범죄인인도법에 규정된 상호주의를 근거로 행한다. 반면에 강제퇴거에 관한 국제조약은 없고 단지 각국의 국내법(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행한다. 넷째, 어느 국가의 법을 위반한 범죄자인지 여부이다. 범죄인인도는 범죄인인도를 요청하는 요청국의 국내법의 위반이므로 이미 요청국에서 자행된 범죄를 전제로 행해진다. 반면에 강제퇴거는 본국 또는 체류국의 국내법 위반(즉 대한민국의 입국전, 입국시 또는 입국한 후에 국내법을 위반)한 자이므로 이미 외국에서 자행된 범죄뿐만 아니라 국내법의 위반을 전제로 행해진다. 다섯째, 외국의 법집행기관이 발행한 구속영장이 있는지 여부이다. 범죄인인도는 외국의 사법집행기관이 발행한 구속영장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초로 행해진다. 반면에 강제퇴거는 외국의 사법집행기관이 발행한 구속영장과 관계없이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한 강제퇴거의 요건에 해당하면 된다. 여섯째, 심사·결정의 주체 및 적용된 기본원칙이 다르다. 범죄인인도는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쌍방가벌성의 원칙, 자국민불인도의 원칙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 심사한 후에 결정으로 인도여부가 결정된다. 반면에 강제퇴거는 범죄인인도에 적용되는

가지로 적색수배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 공항에 도착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규정된 입국의 금지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다. 다만, 적색수배자의 대상이 자국민인 경우에 국내 법상 추방조치 및 입국 금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국제경찰협력법을 제정하여 적색수배자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긴급인도구속

기본원칙에 대한 검토없이 강제퇴거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조사, 심문하여 요건 해당여부에 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출입국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심사한 후에 강제퇴거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출입국관리법 제58조 및 60조). 일곱째, 양자가 행해지는 시기이다. 범죄인인도는 이미 입국하여 일정기간 국내에서 체류중에 행해진다. 반면에 강제퇴거 외국인이 국내 입국시에 또는 입국한 후에 행해진다. 여덟째, 주체의 대상과 사람의 국적이다. 범죄인인도는 인도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인도범죄에 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사람과 물건이 모두 포함되고, 사람의 국적은 자국민도 될 수 있다(영미법계). 반면에 강제퇴거의 주체는 외국인이라는 사람에 한정되고 입국시에 발견된 총포, 화약류 및 기타 불법적으로 소지한 물건은 압수된다. 아홉째, 소요된 기간이다. 범죄인인도는 소요된 기간이 몇 개월에서 장기 2-3년이 걸릴 수도 있으나 강제추방은 이의신청까지 포함하더라도 한두달 정도 밖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점을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표 6> 범죄인인도와 강제퇴거의 비교

구 분	범죄인인도	강제퇴거
외국의 요청 여부	외교채널 또는 인터폴 채널을 통하여 요청함	외국의 요청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행함
신분상의 지위	범죄인	자유인
법적 근거	범죄인인도 및 범죄인인도조약	출입국관리법
어느 국가의 법을 위반한 것인지	요청국의 국내법을 위반한 자	본국 또는 체류국에 입국 전·후에 체류국의 국내법을 위반한 자
외국의 법집행기관이 발행한 구속영장이 있는지 여부	있음	있거나 또는 없음
심사·결정의 주체 및 적용되는 기본원칙	법원, 범죄인인도에 적용되는 기본원칙	출입국관리공무원, 범죄인인도에 적용되는 기본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
행해지는 시기	국내에서 체류중에 행해짐	입국시 또는 입국 후에 행해짐
주체의 대상 및 국적	사람과 물건, 자국민도 가능함	사람에 한정되고 그 사람은 외국인임
소요된 기간	장기간 (몇 개월에서 장기 2 내지 3년)	단기간(1·2개월 정도)

* 필자가 연구·분석하여 작성함

또는 추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²⁷²⁾

(2) 국제경찰협력의 강화를 위한 관련법의 개정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유럽폴(Europol)과 Schengen 경찰협력, 남아프리카의 11개 국가간에 행해지고 있는 SARPCCO(Southern African Regional Police chiefs Cooperation Organization)에²⁷³⁾ 의한 국제경찰협력 등 국제적으로 국제경찰협력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국내법적인 측면에서 국제경찰협력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의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의의 형사사법공조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각종 정보교환, 각종 조회, 국제수사공조, 적색수배서를 포함하여 기타 수배서 배포 등은 협의의 형사사법공조의 범주로 볼 수 있으나 추방조치를 통한 강제송환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²⁷⁴⁾ 그렇다고 범죄인인도로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협의의 형사사법공조법에 관련된 사항인데 반하여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협의의 형사사법공조 뿐만 아니라 범죄인인도와 여러 가

272) 국제경찰협력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273) 동 협정은 1997년 10월 1일 서명되어 1999년 7월 29일 발효되었다.

274) 추방조치를 통한 강제송환은 외국에서 강제퇴거(추방) 당한 자를 KNCB 요원이 추방조치를 취한 국가에 파견되어 강제로 송환하는 방법으로 이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범죄인인도와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현재 KNCB는 아래의 표와 같이 일정한 수의 해외도피사범을 강제송환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

<표 7> 국제수배 및 해외도피사범 송환현황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수배자	18	29	28	106	105	146	168	162	103	125
강제송환자	2	12	15	13	28	27	28	24	34	39

* 출처 : 경찰청, 『경찰백서 2002』, p. 282.

지로 차이가 있는 강제송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폴을 통한 강제송환이 사실상 편법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인터폴 채널을 통해서 범죄인인도를 요청받은 경우에 이 범죄인인도의 요청이 적법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범죄인인도법에서 긴급인도구속요청서가 인터폴의 채널로 전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 반하여 캐나다, 스페인,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과 체결된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터폴 채널을 통해서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⁷⁵⁾

(3) 검찰 등 여타 부서에서 KNCB에 협력관 또는 연락관 파견

국제경찰협력의 외적 장애요소로 검찰과 경찰간의 권한배분과 역할분담에 따라서 각 조직간의 부조화나 갈등이 효율적인 협력을 침해하여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방해될 수 있다. 즉 실무적인 측면에서 경찰과 검찰간의 부조화나 갈등이 신속한 협력에 대한 장애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²⁷⁶⁾

따라서 인터폴 채널을 통한 국제경찰협력 뿐만 아니라 외교채널을 통한 형사사법공조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경찰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KNCB에 유관기관, 예를 들면, 법무부(검찰), 국가정보원, 출입국관리소 및 기타 기관 등에서 파견된 협력관 또는 연락관으로 하여금 신속히 국제경찰협력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 것이다.²⁷⁷⁾

275) 대한민국이 캐나다와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 제12조 1항 및 스페인, 파라과이 및 아르헨티나와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의 각 제9조 1항 참조.

276) 예를 들면, 피의자 황00(53년생, 남)은 91억 8천만원을 분양대금으로 편취한 후 1992년 6월 10일 미국으로 도주하였고, 1992년 7월 3일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가 되었다. KNCB는 1992년 8월 4일 미국 인터폴에 공조수사 요청한 후 2000년 7월 11일 인터폴 사무총국에 그 자에 대한 적색수배서를 요청하였다. 2001년 7월 13일 미국 인터폴에서 그 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KNCB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요청하여 2001년 7월 27일 경찰청에서 법무부에 범죄인인도 청구 등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2002년 5월 현재까지 법무부의 추가 조치가 없었다. 반면에 2001년 12월 13일과 2002년 2월 22일에 미국 인터폴에서 범죄인인도청구를 독촉한 적이 있다. 또한 피의자 홍00(당시 62세, 남)은 처를 살해 후 미국으로 도주하였고, 1996년 2월 14일 서울 북부서에서 살인죄로 지명수배되었다. 1996년 2월 17일 경찰은 미국의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하였고, 1999년 1월 15일 인터폴의 적색수배서도 발행하였다. 2000년 2월 10일 법무부에서 미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여 2002년 2월 14일 그 자는 미국에서 체포되어 동년 6월 20일 범죄인인도가 되었다. 그러나 경찰청과 법무부간 공조미비로 경찰청에서는 그 자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및 체포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후 인터폴을 통한 송환노력을 중지한 바 있다. 경찰청, *supra note* 83, pp. 47-48; 위의 두 사례는 약간의 단어를 첨가하여 표현하였다.

(4) 해외 경찰주재관의 파견 증가

해외 경찰주재관은 해외공관에 파견되어 교민들의 형사상 권익보호,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송환 업무, 경찰업무와 관련된 각종 자료 수집 및 주재국 경찰과의 경찰협력 등을 목적으로 파견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주재관은 국제보통범죄자 검거를 위한 수사공조활동, 국내 치안에 관련되는 자료 수집, 국내 경찰 현대화를 위한 자료 수집, 마약·테러 및 국제범죄 관련 자료수집,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및 기타 경찰업무관련 하명 사항 조사 등이다.²⁷⁸⁾ 즉 해외 경찰주재관은 교민 관련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주재국의 경찰과의 협조 및 경찰청과의 공조로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반면에 경찰주재관이 없는 공관에서는 외교통상부의 영사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형사법 및 수사절차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주재국 경찰과의 협조체제 미비로 신속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²⁷⁹⁾ 비록 현재 경찰청은 9개국 16지역에 16명의 해외 경찰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다고 하나 이 숫자는 일본이 80개국에 140명, 미국 FBI가 44개국에 125명, 캐나다 21개국에 34명을 파견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부족하므로 파견국가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²⁸⁰⁾

(5) 국제경찰협력 관련 전문가 양성·채용 및 보직순환제 예외 검토

국제경찰협력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은 기본적으로 국제경찰협력의 외적 장애요소의 하나인 언어(영어)의 문제를 극복함과 동시에 관련된 실무를 포함하여 국제법(국제형사법)과 국제경찰협력에 대한 기본 지식, 국제회의 또는 국제세미나에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지식, 상대국의 대표와 협상 능력 및 파티에서 필요로 하는 매너까지도 갖춘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전문가의 양성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277) *Ibid.*, pp. 47-48 참조; 마찬가지로 법무부의 형사사법공조에 관련된 부서(검찰 4과)에 경찰관을 협력관으로 파견하여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기여하게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278) 해외주재관업무처리규칙 제6조(2000. 10. 20. 예규 제277호).

279) 경찰청, *supra note* 83, p. 49.

280) *Ibid.*

연수와 훈련이 필요하고 인터폴 협력관 및 주재관으로서 해외 파견근무와 같은 실전 경험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① 1996년 11월 5일, 2000년 9월 19일 및 2001년 3월 29일에 각각 서명된 대한민국 경찰청과 중화인민공화국公安부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한·중 합의서), ② 대한민국 경찰청과 일본국 경찰청간의 경찰업무 협력에 관한 협의회문(이하 한·일 협의회문) 및 ③ 대한민국 경찰청과 러시아연방 내무부간의 협력에 관한 약정서(이하 한·러 약정서) 등을 체결한 바 있다.²⁸¹⁾ 경찰청이 국제경찰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경찰협력의 강화를 위해서 인접 국가인 중국, 러시아 및 일본과 체결한 합의서, 협의회문 및 약정서는 인접 국가와 국제경찰협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한·러 약정서에서 긴급한 경우에 구두로도 경찰협력의 요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치고 도망가는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규정이다.²⁸²⁾ 그런데 이들 합의서, 협의회문 및 약정서는 전문가에 의하여 국내 및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들 합의서, 협의회문 및 약정서가 국내법 및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효력이 없는 신사협정이기 때문이다.²⁸³⁾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국내법 및 국제법(국제형사법) 전문가에 대한 양성 또는 채용이 중요하다. 특히 경찰대학에서만 아니라 경찰청에서도 국제법(국제형사법) 교수 또는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아울러 채용 또는 양성된 전문가는 관리의 차원에서 순환근무라는 이름으로 일정 기간 동안 국제경찰협력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 경찰서에서 근무하게 한다는 것은 행정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6)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 협상 과정에서 인터폴 전문가의 참여

인터폴이 발행하는 적색수배서는 국제보통범죄 또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예

281) 문규석, *supra note 6*, pp. 95-100 참조

282) 한·러 약정서 제5조 2항 참조.

283) 문규석, *supra note 6*, p. 95 각주 288 참조.

방과 진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외교채널에 의한 범죄인인도와 인터폴 채널에 의한 범죄인 강제송환에 관한 통계 및 채널의 절차를 고찰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²⁸⁴⁾ 그런데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할 때 긴급인도구속의 요청과 관련하여 인터폴의 채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²⁸⁵⁾ 이것은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 협상 과정에서 경찰청 소속의 인터폴 전문가가 참여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경찰청은 외교부 및 법무부와 협의하여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 협상 과정에서 인터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한국 및 협상 파트너 대표들에게 인터폴 채널의 효용성에 관한 설명, 관련 자료 전달 및 협조공문을 보내어 인터폴 채널의 유용성에 대하여 역설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로비도 하여 인터폴 채널에 관한 규정이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2조 1항과 같이 규정되어야 한다.

2) 국제적 측면의 강화방안

(1) 범죄인인도조약에 인터폴 활용 규정 삽입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도 법무부·외교통상부를 경유한 형사사법공조와 마찬가지로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 주된 목적이다. 특히 각국의 법집행당국(경찰당국)은 인터폴 사무총국 및 각국의 NCB에서 제공된 정보를 기초로 범죄발생 이전에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 범죄발생 이후에도 예상 도주로 등을 차단하여 국제수사공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경찰협력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① 회원국이 181개국이기 때문에 전세계 대부분 국가와 국제경찰협력을 행할 수 있다는 점, ② 컴퓨터망을 통하여 협력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된 기간이 외교채널과는 비교할 수

284) 각주 54 및 274 참조.

285) 인터폴 채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면 인터폴 채널을 통해서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는 일단 구속력이 없으나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구속력을 인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없을 정도로 짧다는 점, ③ 경찰당국 대 경찰당국간의 협력, 경찰당국 대 경찰당국간의 협력을 인터넷 사무총국이 중계해 주거나 또는 필요한 협력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점, ④ 실무적인 측면에서 수많은 정보교환, 국제수사 공조, 각종 조회 및 범죄인 강제송환 등을 행하고 있다는 점 및 ⑤ 사무총국이 발행한 국제수배서에 의한 사전 예방적 조치 등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²⁸⁶⁾

대한민국에서 경찰의 지위가 검찰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과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한 장점과 유용성이 있다. 특히 인터넷 채널은 컴퓨터망을 통하여 신속하게 직접 각 회원국의 경찰당국에게 각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과 NCB간에 국제전화 및 Fax로 긴급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치고 도망가는 수범의 해외도피사범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²⁸⁷⁾

그런데 대한민국이 여러 국가와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에서 긴급인도구속의 요청과 관련하여 인터넷 채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와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 제12조 1항에서 “체약당사국은 긴급한 경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넷)나 기타 수단을 통하여 인도청구된 자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1항, 대한민국과 파라과이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1항 및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1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86) 2002년 월드컵 기간동안에 월드컵 공항대책반은 인터넷과 각국의 수사기관에서 테러 용의자 6천 7백여 명과 악성 홀리건 2천 7백여명의 명단을 입수하여 이들의 입국을 막았다. 특히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영국 홀리건 3명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돌려보냈고, 이들보다 덜 위험한 프랑스·영국인 홀리건 4명은 체류기간 내내 감시되었다. 중앙일보, 2002. 7. 3, p. 29.

287) PC방에서 대우증권과 거래중인 현대투신운용의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 오프라인 계좌를 온라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구하고, 거래를 틈 뒤 수분만에 모 회사 주식 500만주(2백58억원어치)를 100만주씩 5회에 걸쳐 잇달아 대량 매수주문을 낸 뒤 2시간이 채 안되어서 부인과 함께 태국의 방콕으로 도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인터넷은 그가 스위스 취리히를 경유하여 영국에서 잠적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내고 즉시 영국의 NCB에게 그자의 입국금지 및 추방을 요청하였다. 영국의 경찰은 그를 스위스로, 스위스는 그들을 다시 방콕으로 추방하였고, KNCB의 요원은 방콕에서 그를 체포하여 강제송환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치고 도망가는 범죄자가 현재 목적지를 향해서 비행중일 때 인터넷은 관련 국가들의 NCB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 참조. 경찰청, 『국제범죄-동향과 대응-』, 제25호, 2002. 9, pp. 25-29; 경향신문, 2002. 8. 27, p. 19; 중앙일보, 2002. 8. 26, p. 2, 31; 한계례, 2002. 8. 27, p. 15.

반면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에 체결된 범죄인인도조약 제10조 1항에서 “긴급인도구속은 법무부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또는 직접 송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인터폴의 경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대한민국과 몽골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0조 1항,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2조 1항,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1조 1항,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1조 1항,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과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1조 1항,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1조 1항, 대한민국과 브라질연방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1조 1항,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1항,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0조 1항 및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0조 1항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터폴 채널을 통하여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약은 현재 도피중인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인터폴의 채널을 활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조약은 인터폴의 채널에 접근할 수 없다. 즉 인터폴 채널을 통하여 범죄인인도에 관련된 협력 요청(예를 들면, 긴급인도구속)을 하는 경우에 그 요청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²⁸⁸⁾ 따라서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할 때에, 예를 들면, 캐나다와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 제12조 1항과 같은 규정을 삽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이미 체결된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터폴 채널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 의정서 또는 교환문서의 교환을 통하여 인터폴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대한민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확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와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범죄인인도에 대한 협력을 할 수 있지만 상호주의에 의한 협력을 거부한 국가도 있고, 그의 요청에 대하여 구속력도 없고, 외교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 및 서류가 필요한 것이 현

288) 다만, 인터폴 채널을 통하여 요청한 사항은 요청받은 국가의 국내법상 이행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국제경찰협력의 맥락으로 수행될 수 있다.

실이다. 따라서 현재(2002. 10. 30) 대한민국이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수는 16개국에 달하고 있으나,²⁸⁹⁾ 그 숫자를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²⁹⁰⁾

그 필요성은 첫째, 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바와 같이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상호주의에 의한 범죄인인도를 위해서 상대국의 보증, 보증에 관련된 여러 서류가 있어야 하고, 그의 구속력도 보장할 수 없으며, 상호주의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국가도 있다는 점이다.

둘째, KNCB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도피사범의 숫자는 현재(2002. 10. 31) 총 729명이고, 도피 국가도 미국(309명), 중국(93명), 필리핀(66명), 캐나다(45명), 일본(37명), 태국(30명), 호주(24명), 인도네시아(17명), 브라질(12명), 뉴질랜드(11명), 홍콩(9명), 베트남(9명), 페루(4명), 스리랑카(4명), 과테말라(4명), 프랑스(4명)를 비롯하여 기타 아시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각 지역의 여러 국가로 다변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의 재산적 피해도 1992년 조사 당시 1조 370억원, 99년 12월에도 1조

289) <표 8> 대한민국이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의 현황

체결국가	서명일	발효일
호주	1990. 9. 5	1991. 1. 16
캐나다	1994. 4. 15	1995. 1. 16
스페인	1994. 1. 17	1995. 2. 15
필리핀	1993. 5. 25	1996. 11. 30
파라과이	1996. 7. 9	1996. 12. 29
칠레	1994. 11. 21	1997. 10. 1
멕시코	1996. 11. 29	1997. 12. 27
미국	1998. 6. 9	1999. 12. 20
몽고	1999. 5. 31	2000. 1. 27
아르헨티나	1995. 8. 30	2000. 11. 9
태국	1999. 4. 26	2001. 2. 15
브라질	1995. 9. 1	2002. 2. 1
중국	2000. 10. 18	2002. 2. 1
뉴질랜드	2001. 5. 15	2002. 4. 17
일본	2002. 4. 8	2002. 4. 17
인도네시아	2000. 11. 28	미발효. 2001. 1. 11 국회비준

* 외교통상부 사이트(<http://www.mofat.go.kr>) 참조함

290) 물론 협의의 형사사범공조를 의미하고 있는 형사사범공조조약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8억원에 달하고 있다.²⁹¹⁾

셋째, 적색수배서가 범죄인인도의 기본원칙(쌍방가벌성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 및 자국민불인도의 원칙)과 어느 정도 형량 이상의 범죄자를 인도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범죄인인도조약의 당사국이 요청하여 발행한 적색수배서만이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가 36개국이나 된다는 점이다.

(3) 인접 국가와의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조약의 체결

많은 해외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 및 인접 국가, 예를 들면, 미국, 일본, 중국 및 러시아와는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신속한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도 법무부·외교부를 경유한 형사사법공조와 마찬가지로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 주된 목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각국의 범집행당국(경찰당국)은 인터폴 사무총국 및 각국의 NCB에서 제공된 정보를 기초로 범죄발생 이전에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 범죄발생 이후에도 예상 도주로 등을 차단하여 국제수사공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협력의 채널이 경찰당국 대 경찰당국,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당국 대 지방경찰당국과도 직접 경찰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²⁹²⁾

셋째, 컴퓨터망 또는 긴급한 경우에 구두로 직접 경찰협력을 요청하고 사후에 문서로 확인하도록 하여 치고 도망가는 수범의 도피범죄자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²⁹³⁾

넷째, 실무적인 측면에서 수많은 정보교환, 국제수사공조, 각종 조회 및 범죄인 강제 송환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의 영역에서 일정한 범주로 경찰이 추적권과 감시권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²⁹⁴⁾

291) 조영준, “국외도피 형사범에 대한 검찰의 대처방안”, 『검찰』, 1995. 2, p. 150; 경찰청, 『99 INTERPOL 서울총회 보고서』, 경찰청 인터폴 서울총회 사무국, 1999. 12, p. 34.

292) 센겐이행협약 제39조 3항.

293) 한·러 약정서 제5조 2항.

294) 센겐이행협약 제40조 및 제41조 참조.

다섯째, 2002년 9월 18일에 남북철도·도로 연결공사 착공식이 착공됨으로 인하여 머지않아 남북한간에 연결된 철도와 도로를 통하여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자유왕래가 실현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 중국 및 유럽제국들과도 철의 실크로드를 통하여 경제협력이 활성화가 될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에 연결된 철도 및 도로를 통하여 중국·러시아 및 몽고와도 인적·물적 왕래가 빈번해 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자유로운 인적·물적 왕래에 수반하여 중국, 러시아 및 몽골과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실무당국자간의 채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²⁹⁵⁾ 다만, 중국, 일본 및 러시아 등과 체결한 합의서, 협의문 및 약정서 등은 국내, 국제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 개정하거나 아니면 이들 국가가 모두 포함된 새로운 다자조약을 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4) 적색수배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통일 기준의 마련

적색수배서는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인인도의 기본원칙인 쌍방가벌성의 원칙, 자국민불인도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에 관련된 문제, 어느 정도 이상의 형량이여야 하는지 및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발행되어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인터폴 사무총국은 쌍방가벌성의 원칙, 자국민불인도의 원칙 및 특정성의 원칙에 대하여 기본적인 원칙 또는 규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느 정도의 형량 이상의 수배자에게 적색수배서가 발행될 지에 대한 기준, 잘못 발행된 수배서에 의하여 침해된 권리구제를 위해서 각 회원국에게 제시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²⁹⁶⁾ 따라서 적색수배서를 발행하기 이전에 이러한 기준 또는 원칙에 상응한지에 대한 절차상 형식적 검토 또는 심사가 있어야 하고, 단지 적색수배서의 신청양식상의 일정한 기재사항만이 변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95) 남북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문규석, “남북한의 형사사건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도피사범을 중심으로-”, 『의법논집』, 제9집(2000), pp. 397-422 참조.

296) 사형제도 폐지국에서 존치국으로 인도되었을 때 사형의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는 사형제도가 폐지된 범죄인인도 피요청국이 요청국에게 그 인도 또는 강제송환할 때 인도적인 측면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다는 보증하에 인도 또는 강제송환하게 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개혁을 통한 국제경찰협력 강화방안

1) 현행체제에서 실효적 이행의 한계 및 개혁의 필요성

현행 인터폴의 체제에서 실효적인 국제경찰협력의 주된 장애는 이미 III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성법 체제, 미약한 적색수배서의 효력 및 느슨한 데이터보호 제도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모두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이 국제법과 국내법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간단계의 협력에서 유래하는 한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체제에서 야기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최대의 방안은 현재의 중간협력의 단계를 대협력의 단계로 격상하는 것이다.

그 필요성은 첫째,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객체는 보통범죄와 ICTY·ICTR·ICC의 관할권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각국에게 범죄의 예방 및 진압이라는 공통의 이익과 국제법상 인정된 보편적 관할권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점이다.

둘째, 중간협력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인터폴 체제가 대협력의 단계로 격상되면 실효적인 국제경찰협력의 주된 장애로서 지적되고 있는 경성법체제의 문제, 미약한 적색수배서 효력의 문제 및 느슨한 데이터보호 제도에 대한 비난(EU의 유럽폴·셴겐경찰협력의 당사국들이 미약한 데이터보호의 문제점 또는 인터폴이 보유한 경찰정보 또는 범죄정보의 누출에 대한 비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절차는 경찰당국 대 경찰당국 또는 이들의 관계에 인터폴 사무총국이 개입된 형태로서 범죄인인도 절차상 필요로 하는 소요기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초스피드의 통신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제화의 추세 및 교통·통신기술의 발전 정도에 버금가는 제도로써 치고 도망가는 수범의 해외도피사범을 대처하기에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는 점이다.

넷째, 수많은 양자, 다자의 범죄인인도조약, ICTY·ICTR의 소송절차 및 증거규칙, ICC규정 및 기타 여러 국제범죄에 관한 조약에서 인터폴 채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자라는 점이다.

다섯째, 적색수배서의 법적 근거가 각 회원국의 법원의 판결 또는 법집행기관이 발행한 구속영장이다. 따라서 쌍방가벌성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 자국민불인도의 원칙과 관련하여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UN협약에서 채용하고 있는 원칙,²⁹⁷⁾ 인터폴 헌장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및 어느 정도 기간 이상의 형량이 적용되는 혐의자 또는 범죄자에게 적색수배서가 발행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적색수배서는 상호주의의 측면에서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긴급한 경우에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구두로도 직접 관할 지방경찰당국에게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이다.²⁹⁸⁾

2) 개혁의 방향과 국제경찰협력의 강화

인터폴이 개혁을 하게 된다면 그 기본방향은 법적인 측면에서 경성법체제, 국제수배서의 효력 문제, 유럽폴과 같은 수준의 데이터보호, 좀더 첨단화된 통신체제 및 UN과의 관계로 요약할 수 있다.

(1) 경성법체제

인터폴 헌장은 각국 대표들이 명시적인 서명도 하지 아니하였고, 국내법상 비준 또는 국제조약이 발효되기 위한 국내법상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인터폴의 헌장은 조약적 성질을 지닌 법적 문서이긴 하지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적·국내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²⁹⁹⁾ 따라서 인터폴 헌장은 국제기구의 설립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기구의 법인격에 관한 문제, 기구의 본부에 대한 불가침권과 특권과 면제,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특권과 면제에 관한

297) 2002년 12월에 채택된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UN협약은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을 적용하여 범죄인인도를 거절한다면 자국법에 의해서 기소할 의무가 있고, 자국민을 인도요청국에게 인도할 경우에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피요청국으로 이송해야 하며, 자국민을 인도하지 아니할 경우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한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서 부과된 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동 협약 제16조 10항, 11항, 12항 참조; 문규석, *supra note* 98, pp. 99-100 참조.

298) 한·러 약정서 제5조 2항; 센겐이행협약 제39조 3항.

299) 예를 들면,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UN헌장 제102조에 따라서 UN사무국에 기탁하여야 하는데 기탁되지도 않았고, 국내법상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 비준이라는 절차 또는 공포에 의한 관보에 게재라는 절차도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Michael Fooner, *op. cit.*, p. 47 참조.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차선책으로 프랑스정부와 체결한 본부협정에서 이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³⁰⁰⁾

인터폴 헌장의 개정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조약의 성립요건과 국내적·국제적 체결절차를 이행하여 경성법체제임과 동시에 국제법과 국내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그의 개정절차는 인터폴 헌장 제42조에서³⁰¹⁾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충족해야 한다.

(2) 국제수배서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이 내세울 수 있는 주된 장점은 간소한 협력의 채널, 컴퓨터망을 통한 통신체제 및 국제수배서의 발행이다. 특히 국제수배서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 즉 국제범죄자의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하는 일종의 국제영장으로 그의 효력이 전세계의 모든 회원국의 국내법상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하고 있다면 국제범죄자의 진압에 크게 기여할 것은 자명하다. 문제는 적색수배서가 비록 적색수배서의 발행을 요청하는 국가의 법원 또는 법집행당국이 발행하는 구속영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III, 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적색수배서의 효력이 미약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인터폴 사무총국은 적색수배서의 발행을 요청한 서류에 대하여 사실상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인터폴 체제는 국제법과 국내법간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단계에서 국제경찰협력이 이행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이 바라보는 적색수배서의 효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적색수배서가 모든 회원국의 영역에서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 즉 긴급구속영장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된 인터폴 헌장에서 적색수배

300) 프랑스에서 인터폴 본부 및 인터폴의 특권·면제에 관하여 인터폴과 프랑스 정부와의 협정 (Agreements between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and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Regarding Interpol's Headquarters and It's Privileges and Immunities in France)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 참조

301) 본 헌장은 회원국 또는 집행위원회의 발의로 개정할 수 있다. 헌장의 개정 제의는 사무총장이 적어도 총회 상정 3개월 전에 인터폴 회원국 전체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헌장 개정은 재적 회원국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인터폴 헌장 제42조.

서의 효력에 대하여 언급하고, 그 효력이 발효되기 위해서 각국의 국내법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과 범죄인인도에서 필요로 하는 원칙, 즉 쌍방가벌성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과 관련하여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UN협약에서 채용하고 있는 원칙, 어느 정도 기간 이상의 형량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³⁰²⁾ 인터폴 헌장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 인종, 종교 및 군사적 성격의 범죄에 대하여 적색수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일종의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다만 비록 정치, 인종, 종교 및 군사적 성질을 지닌 범죄라고 할지라도 보편적 관할권의 범주에 해당하는 범죄, ICC의 관할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 당연히 적색수배서가 발행될 수 있어야 한다.

(3) 데이터보호

인터폴의 데이터보호 목적은 인터폴 헌장 제2조에 규정된 인터폴의 목적을 확인함과 동시에 자연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위협을 피하여 국제경찰협력 체제 내에서 처리되어 전송된 경찰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경찰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관리함으로써 인하여 인터폴의 업무를 신속히 이행함과 동시에 경찰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소망스럽지 못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Ⅲ, 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럽폴과 비교해 볼 때 인터폴의 데이터보호는 법적 근거, 안전조치, 감독위원회, 기밀유지 및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보호의 내용은 첫째, 데이터보호의 법적 근거가 연성법적인 체제가 아니라 경성법 체제이어야 한다. 즉 개정된 인터폴 헌장에서 유럽폴과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안전조치도 기기 접근 통제, 데이터 매체 통제, 저장 통제, 사용자 통제, 이송 통제, 데이터 접근 통제, 전송 통제, 입력 통제, 사고시 즉시 복구,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문제점이 발견시 즉시 보고 및 오작동으로 인한 데이터의 왜곡금지 등에 대하여 모

302) 예를 들면,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이미 형의 선고를 받는 자는 복역할 형의 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두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인터폴은 인터폴 문서의 내부 통제를 위한 감독기관은 있으나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상응하여 설치된 국내감독기관은 없다. 따라서 회원국의 국내법에 상응하여 설치된 국내감독기관도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밀유지에 필요로 하는 조치를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즉 기밀유지에 관한 규칙의 제정, 기밀의 안전성 검사 및 그 결과 통보, 기밀누설의 금지, 허가없이 재판도중에 또는 재판정 밖에서 증언 및 진술 금지, 기밀보호 의무의 위반에 대한 국내법을 도입하여 인터폴과 접촉하는 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터폴이 저장 또는 처리된 데이터에서 법적, 사실상 실수의 결과로 개인에게 야기한 손해에 대하여 국내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회원국이 부정확한 데이터를 전송하였다고 항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통신체제

제70차 인터폴 총회(2001. 9. 24-28)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X-400 통신망을 대신할 Atlas Project가³⁰³⁾ 2001년 4/4분기부터 설치하기 시작하여 2003년 1/4분기에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보안 및 A/S 문제로 2002년 9월에 중단되고 현재 Atlas Project를 대체할 인터폴 차세대 통신시스템(Global Communications System: GCS)이 개발, 완성단계에 이르러 시험가동 중이다.³⁰⁴⁾ 따라서 통신체제는 첫째, 긴급한 경우에는 국제 전화를 통하여 구두 또는 Fax로 각 회원국의 관할지방경찰당국에게 직접 경찰협력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요청에 대하여는 각국의 NCB와 관할지방경찰당국에게 사후에 그 내용에 대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적색수배서의 발행요청 서류는 인터폴의 Website에서 작성하여 인터넷으

303) 문규석, *supra note* 6, p. 53 참조.

304) 경찰청, *supra note* 72, p. 30.

로 사무총국에게 전달하고 있으나 발행된 수배서는 우편으로 각 회원국에게 배포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메시지 전송 기능 외에 범죄정보 데이터의 상호 접근, 사진, 영상의 전송기능, 실무당국자간의 회상회의도 가능하여³⁰⁵⁾ 발행된 적색수배서를 인터넷으로 직접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해킹 및 컴퓨터 바이러스의 침투에 의해서 통신의 보안성·안전성이 침해되지 아니하고,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속히 복구되어 저장된 데이터는 오작동으로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

(5) UN과의 관계

인터넷과 UN과의 관계는 1971년 5월 20일에 체결된 UN경제사회이사회와 인터넷간의 협력을 위한 특별약정(Special Arrang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³⁰⁶⁾ 따르면 비정부간기구의 Category I 에 해당한다.³⁰⁷⁾ 즉 인터넷은 정부간기구가 아니라 비정부간기구이다. 따라서 인터넷은 인터넷이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UN총회의 허가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에게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UN과의 관계에서 인터넷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타 정부간기구가 UN헌장 제57조와 제63조를 근거로 UN경제사회이사회와 제휴협정을 체결하여 전문기구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1971년에 체결된 특별약정은 개정을 통하여 UN헌장 제57조 및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UN의 전문기구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UN사무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정보·자료의 교환, 어느 일방의 요구에 의하여 공동이익의 문제에 대한 협의·공동 연구, 실질적인 계획에 대한 기술협력, 양 기구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에 서면성명서·임시안건 제출, 인터넷이 본부 소재지국 또는 회원국과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305) *Ibid.* 참조.

306) UN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E/Res/1579(L).

307) 동 특별약정 제5조, 제6조 참조.

ICJ에게 권고적 의견 요청권 부여 및 기타 상호 이익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제휴협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평가

현행 인터폴의 체제에서 국제경찰협력 강화방안은 국내적 측면에서 적색수배서의 효력을 위한 관련법 개정, 국제경찰협력의 강화를 위한 관련법의 개정, 검찰 등 여타 기관에서 KNCB에 협력관 또는 연락관 파견, 해외 경찰주재관의 파견 증가, 국제법(국제형사법) 관련 전문가의 채용·양성, 전문가 관리의 차원에서 보직 순환제 예외 검토 및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인터폴 전문가 참여 등이다.

특히 적색수배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적색수배서가 국내법상 외국이 요청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되거나 또는 적색수배서를 근거로 긴급인도구속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적색수배서가 국내법상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되어 긴급체포 또는 강제추방조치를 취하기 위한 최대의 방안은 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에 규정된 긴급체포 사유 또는 제211조 준현행범인의 유형에 적색수배자도 포함시키고, ② 범죄인인도법 제24조와 제26조를 개정하여 적색수배자가 대한민국의 범죄인인도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일치한다는 조건하에 범죄인인도요청서, 즉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를 명령하도록 하고, ③ 출입국관리법 제46조와 제11조에서 강제퇴거의 대상자 및 입국금지 자에 포함시키는 것이다.³⁰⁸⁾ 최대의 방안이 현실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차선책은 ① 위에서 언급한 범죄인인도법 제24조와 제26조를 개정하여 경찰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적색수배서를 근거로 법무부장관은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를 담당 검사에게 명령하도록 하고, ② 출입국관리법 제46조와 제11조에서 강제퇴거의 대상자 및 입국금지 자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308) 이렇게 개정하면, 적색수배자가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발견된 경우에 즉시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의 당사국인 경우에 범죄인인도가 즉시 개시될 수 있도록 하며, 당사국이 아닌 경우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수배서 발행 요청국으로 추방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대 및 차선책의 현실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적어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서 강제퇴거의 대상자 및 입국금지 자로 적색수배자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물론 자국민이 해외에서 범죄행위후 국내로 도피한 경우에 적색수배서 발행요청국으로 추방할 수 없고, 적색수배자인 자국민이 입국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다. 만약에 위에서 적색수배서의 효력과 관련된 법개정에 대하여 제시한 방안이 실현될 수 없다면 국제경찰협력법을 제정하여 적색수배자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국제적 측면의 강화방안은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터폴 활용 규정을 삽입하여 인터폴 채널이 외교채널과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확대, 인접 국가와의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조약의 체결 및 인터폴 사무총국은 적색수배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적색수배서의 효력이 미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국제적인 통일 기준의 마련 등을 제안할 수 있다.

현행 인터폴의 체제는 이미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법과 국내법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간협력의 단계에서 유래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대협력의 단계로 격상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대협력 단계로의 격상의 의미는 인터폴의 개혁을 의미하고 개혁의 방해요소는 너무 크게 도사리고 있다. 즉 개혁보다는 현상유지의 선호하는 국제기구의 관성적 성격, 형사관할권에 대한 각국의 민감한 반응, 각 회원국간의 법률문화·법제도·경찰제도의 차이로 인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다. 또한 데이터보호에 대한 국가간의 시각 차이가 있고, EU는 데이터보호가 유럽폴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되지 아니하는 한 인터폴의 개혁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만한 이유가 크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폴이 개혁을 하게 된다면 개혁의 방향은 연성법 체제에서 경성법 체제로 변경되어야 하고, 적색수배서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상 긴급인도구속의 요청서로 간주되어 범죄인인도를 위하여 긴급체포가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선진국들이 정보유출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는 데이터보호의 문제, 통신체제의 첨단화·안전성의 문제 및 UN과의 관계의 재정립의 문제 등이 모두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V. 결 론

현대의 지구촌시대·정보화시대에서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 즉 국제보통범죄의 진압에 관련된 제도적 시스템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외교채널에 의한 국가간의 형사사법공조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폴 채널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이다. 외교채널은 국제조약을 기초로 행해지고 있으므로 당사국들간의 국내법과 국제법(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이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적·국제적인 측면에서 구속력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너무 형식적인 절차를 중시하다 보니 협력의 요청과 그 이행에 관련된 절차의 번거로움 및 소요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반면에 인터폴 채널은 경찰당국간의 협력 또는 인터폴 사무총국이 경찰당국간에 필요로 하는 협력을 제공해 주는 형태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그 절차가 매우 간소하다. 또한 첨단 통신기기, 즉 컴퓨터망, 국제전화, fax 등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그 소요된 기간이 외교채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고, 범죄·경찰 정보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있다. 그러나 각국의 법률문화, 경찰제도, 경찰과 검찰간의 관계, 형사판할권에 대한 각국의 민감한 태도, 데이터보호의 수준에 대한 국가별 차이 및 오류의 정보로 발생된 적색수배서에 의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리구제 제도의 미비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형사사법공조와 같이 국내법과 국제법이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므로 그 실효성은 반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있어서 걸음마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교채널보다 효율성의 관점에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의 인터폴 시스템은 외교채널에 의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제도의 흠결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국내·국제적으로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제도적 보완조치를 단기적인 측면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그 실효적 이행방안을 제시하면, 먼저 단기적인 측면에서 ①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현재 협상중에서 있거나 또는 협상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법무부 및 외교부와 협의하여 인터폴 전문가가 협상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

다면 적어도 한국 및 협상 파트너 대표들에게 인터폴 채널의 효용성에 관한 설명, 관련 자료 전달 및 협조공문을 보내서 인터폴 채널에 관한 규정이 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재(2002. 12) 논의가 진행중인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적색수배서의 효력과 관련된 규정이 삽입할 수 있도록 소명서 제출, 의견 제시 및 기타 등이 경찰청의 이름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③ 형사사법공조에 관련된 기관간 또는 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련된 유관기관간에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KNCB에 연락관 또는 협력관을 파견하여 신속한 국제경찰협력이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① 적색수배서의 효력과 관련된 범죄인인도법, 출입국관리법, 현재 논의중인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적색수배서의 효력과 관련된 사항의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제경찰협력의 강화를 위한 국내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국제경찰협력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타당성이 있다면 국제경찰협력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④ 외교부와 협의하여 해외경찰주재관의 파견이 점차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⑤ 국제경찰협력에 관련된 전문가의 양성·채용에 대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야 하고, 이들 전문가에 대해서 보직순환제의 예외에 대한 행정적 배려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⑥ 국제적 측면에서 국제경찰협력의 강화방안으로 지적한 사항, 즉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터폴 활용 규정 삽입, 대한민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 수의 확대, 인접 국가와의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조약의 체결, 적색수배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통일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관계기관간의 적극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즉 외교채널과 인터폴 채널이 지니고 있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국내적 협력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둘째, 대한민국에서 경찰의 지위가 검찰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과 관계없이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장점과 실효성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에서 긴급인도구속과 관련하여 인터폴 채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약과 그렇지 아니한 조약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체결될 범죄인인도조약에서는 인터폴 채널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기존의 범죄인인

도조약의 경우에 추가의정서 또는 교환문서를 통하여 인터폴 채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범죄인인도시에 적용되는 기본원칙 중에서 쌍방가벌성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이 적색수배서의 효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해외도피 사범의 은신처로 알려지고 있는 러시아, 프랑스, 과테말라, 베트남, 볼리비아, 페루, 프랑스, 싱가포르 등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넷째, 경찰청은 외교부 및 법무부와 협의하여 앞으로 체결될 범죄인인도조약의 협상과정에 인터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한국 및 협상 파트너 대표들에게 인터폴 채널의 효용성에 관한 설명, 관련 자료 전달 및 협조공문을 보내고, 필요하다면 로비도 하여 인터폴 채널에 관한 규정이 삽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내에서 적색수배자가 발견되었을 때 긴급체포 또는 준현행범인으로 간주하여 체포하거나 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를 통해서 체포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과 범죄인인도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이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요청된다. 또한 국제경찰협력의 근거 규정인 국제형사사법 제38조, 관계당국이 적색수배자를 추방조치하거나 입국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제46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관련법의 개정이 용이하지 아니한다면 경찰청이 주체가 되어서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여섯째, 인터폴의 데이터보호 제도는 유럽폴의 제도와 비교해 볼 때 법적 근거, 안전조치, 감독위원회, 기밀유지 및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에서 매우 느슨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유럽폴 및 선진국들은 인터폴과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꺼리고 있고,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폴의 데이터보호 제도의 개선 및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곱째,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역동적인 국제협력체제(형사사법공조 및 국제경찰협력)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KNCB에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연락관 또는 협력관으로 하여금 상호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덟째, 해외 경찰주재관은 교민들의 형사상 권익보호, 해외도피사범의 송환 업무 및 기타 협력을 위하여 파견되고 있으나 그 숫자가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비교할 때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교민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 해외 경찰주재관을 파견하여 신속하게 국제경찰협력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요청된다.

아홉째, 국제경찰협력에 관련된 업무는 실무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언어, 국제법(국제형사법), 협상능력, 기타 등을 갖춘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특히 경찰대학에 국제법(국제형사법) 교수가 없고, 경찰청 내에도 국제법(국제형사법)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러시아, 일본, 중국과 체결한 약정서·협의문·합의서의 연성적 효력과 관련하여 입증된바 있다. 따라서 경찰대학뿐만 아니라 경찰청 내에서도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국제법(국제형사법) 교수와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물론 국제경찰협력에 관련된 전문가는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 관리의 측면에서 순환근무제에 대한 행정적 배려가 요청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參 考 文 獻

1. 국내문헌

(1) 단행본

- 경찰청, 『국제성 범죄수사』, 외사관리관실, 1996.
- _____, 『인터폴』, 경찰청 인터폴기획단, 1997.
- _____, 『경찰백서』, 1999.
- _____, 『'99 INTERPOL 서울총회 보고서』, 경찰청인터폴서울총회사무국, 1999. 12.
- _____, 『경찰백서』, 2001.
- _____, 『경찰백서』, 2002.
- _____, 『국제범죄-동향과 대응-』, 제25호, 2002. 9.
- _____, 『국제범죄-동향과 대응-』, 제26호, 2002. 10.
-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0.
- 김명기, 『국제법원론(상)』, 박영사, 1996.
- 김주덕, 『국제형법』, 도서출판 육서당, 1998.
- 김찬규·김영준, 『국제법개설』, 법문사, 1998.
- 남궁구, 『외사경찰의 국제화 전략』,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1995.
- 대검찰청, 『검찰연감』, 2001.
- 문규석, 『경찰의 지역간 협력 및 아·태폴 창설을 위한 기반 조성 방안』, 치안연구소(연구보고서 2001-10), 2001.
- 백진현·조균석,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이기현·임영철, 『미국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이병기·신의기, 『유럽의 형사사법공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5.
- 이장희,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방안』, 치안연구소(연구보고서 97-10), 1997.
- 이훈규·신의기, 『범죄인인도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2) 논문

- 고진영, “정보의 개념과 범죄정보의 수집방법 및 기술”, 『검찰』, 제1집, 1994.
- 김석현, “국제법에 있어서 Soft Law”, 『국제법평론』, 1997-1(통권 제8호), 국제법출판사, 1997.
- _____, “국제법상 국가범죄에 관한 연구”, 『국제법평론』, 창간호, 1993.
- 문규석, “국제환경법의 법원-Soft Law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2집, 1995. 12.
- _____, “인터넷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국제법평론』, 1999-II(통권 제12호), 삼우사, 2000. 2.
- _____,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연구(1)-인터넷을 중심으로-”, 『수사연구』, 2000. 10.
- _____,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연구(2)-인터넷을 중심으로-”, 『수사연구』, 2000. 11.
- _____, “국제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국제보통범죄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9권, 2000. 12.
- _____, “ICTY에서 유고연방대통령에 대한 형벌의 집행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44권 제2호(통권 제86호), 1999. 12.
- _____, “국제법상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국제보통사이버범죄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46권 제1호(통권 제89호), 2001. 6
- 문정인, “국가안보와 국가정보-바람직한 정보기구 모색을 위하여-”,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1996년 봄·여름호, 제2권 1호, 1996.
- 박한철,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 -독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중심으로-”, 법무부 『해외과건검사연구논문집』, 제6집(법무자료 제85집), 1987.
- 백충현, “형사사건에 관한 국제사법공조”, 『현대국제법론』 (이한기 박사 화갑논문집), 박영사, 1978.
- 박희권, “국제관계에서의 신사협정”, 『고시계』, 1991. 9.
- 정동기,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기본원칙”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제29권 1호, 1996. 6.
- 제성호, “국제범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세계국제법협회한국본부, 『국제법논총』, 제8권, 1996. 12.
- 조영준, “국외도피 형사범에 대한 검찰의 대처방안”, 『검찰』, 1995. 2.
- 최성호, “절실한 한국인터넷의 기능강화”, 『수사연구』, 1990. 1.

2. 외국문헌

(1) 단행본

- Anderson, M., Poling the world: *Interpol and Politics of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Oxford : Clarendon Press, 1989).
- Anderson, M., and M. Den Boer(ed.), *Policing Across National Boundaries*(London & New York : Pinter Publishers, 1994).
- Anderson, M., M. Den Boer, P. Cullen, W. Gilmore, and N. Walker, *Policing the European Union*(Oxford : Clarendon press, 1995).
- Bantekas, I., S. Nash, and M. Mackarel, *International Criminal Law*(London · Sydney : Cavendish Publishing Limited, 2001).
- Benyon, J, L. Turnbull, A. Wills, R. Woodward, and A. Beck, *Police Cooperation in Europe: An Investigation*(Leicester : University of Leicester Centre for the Study of Public order, 1995).
- Bassiouni, M. C., *International Extradition: United States Law and Practice*, 3rd ed., (New York : Oceana Publications, Inc, 1996).
- Birnie, W. P., and A. E. Boyle,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Oxford : Clarendon Press, 1992).
- Bresler, F., *Interpol*(London : Sinclair-Stevenson, 1992).
- Bunyan, T., *The Europol Convention*(London : A Statewatch publication, 1995).
- Detter, I.,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Aldershot · Brookfield USA · Singapore · Sydney : Dartmouth, 1994).
- Ethan. A. N., *Cops Across Border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U.S Criminal Law Enforcement*(Philadelphia :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3).
- Fooner, M., *Interpol: Issues in World Crime and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New York & London : Plenum Press, 1989).
- Gilbert, G., *Aspects of Extradition Law*(Dordrecht/Boston/Lond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1).
- _____, *Transnational Fugitive Offenders in International Law: Extradition*

- and Other Mechanisms*(The Hague/ Boston/ Lond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8).
- Harris, D. J.,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5th, (London : Sweet & Maxwell, 1998).
 - Harris, L., and C. Murray,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Crime*(London, Sweet Maxwell, 2000).
 - Heberton B., and T. Thomas, *Policing Europe: Co-operation, Conflict and Control*(London : St. Martin's Press, 1995).
 - Hoogh, A. dé, *Obligations Erga Omnes and International Crimes*(The Hague/London/Boston :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 ICJ Reports(1970(I))
 - INTERPOL 관련자료, (I).
 - INTERPOL 관련자료, (II).
 - Jean-Paul, B.(ed), *Comparisons in Policing: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Aldershot · Brookfield USA · Hong Kong · Singapore · Sdney : Avebury, 1995).
 - Jennings, R., & A. Watts(ed.),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9th ed., Vol. 1, (London : Longman, 1992).
 - Koenig, D. J., and D. K. Das(ed.),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A World Perspective*(Lanham · Boulder · New York · Oxford : Lexington Books, 2001).
 - Malanczuk, P.,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 ed., (London & New York : Routledge, 1997).
 - Malcom, A., & M. Den Boer(ed.), *European Police Co-operation*, University of Edinburgh, 1992.
 - McClean, D.,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Oxford : Clarendon Press, 1992).
 - Ragazzi, M.,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Erga Omnes*(Oxford : Clarendon Press, 1997)
 - Sands, P., and Klein, P., *Bowett's Law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London: Sweet & Maxwell, 2001)
 - Santiago, M., *Europol and Police Cooperation in Europe*, Criminology Studies, Vol. 11(Lewiston · Queenston · Lampeter : The Edwin Mellen Press,

2000).

- Schermers., H. G., and N. M. Blokker, *International Institutional Law*, 3rd, ed., (The Hague/London/Boston : Martinus Nijhof Publishers, 1995).
- Sunga, L. S., *The Emerging system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Developments in Codification and Implementation*(The Hague/London/Boston : Kluwer Law International, 1997).
- Tony, B., *The Europol Convention*, A Statewatch Publication, 1996.
- Tullett, T., *Inside Interpol*(New York : Walker and Company, 1965).
- 山本草二, 『國際刑事法』, 三省堂, 1991.

(2) 논 문

- Benyon, J., L. Turnbull, A. Wills, and R. Woodward, “Understanding police cooperation in Europe: setting a framework for analysis”, in Anderson, M., & M. D. Boer(ed.), *Policing Across National Boundaries*(London & New York : Pinter Publishers, 1994).
- Benyon, J., “The Politics of Police Co-operation in the European Un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w*, Vol. 24, No. 4, December 1996.
- Boer., M. D., “Police Cooperation in the TEU: Tiger in A Trojan Horse?”, *Common Market Law Review*, Vol. 32, 1995
- Bresler, F., “Inside Story: Interpol and the Changing Face of International Policing”, *Interpol: 75 years of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London : Kensington Publications Ltd, 1998).
- Das., D. K., and P. C. Kratcoski,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A World Perspective”, in Koenig, D. J., and D. K. Das(ed.),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A World Perspective*(Lanham · Boulder · New York · Oxford : Lexington Books, 2001).
- Fahlman, R. C., “Intelligence Led Policing and the Key Role of Criminal Intelligence Analysis: Preparing for the 21st Century”, *Interpol:*

75 Years of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London : Kensington Publications Ltd, 1998).

- Fijnaut, C., “Policing Western Europe: Interpol, Trevi and Europol”, *Police Studies: The International Review of Police Development*, Vol. 15, No. 3, Autumn 1992.
- Gregory, F. E. C., “Police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Proposal, Problems, and Prospects”, *Terrorism: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14, No. 3, 1991.
- ICPO-Interpol General Secretariat, “Interpol Red Notices”,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Review*, No. 468, 1998.
- Interpol, “Progress Report 1994”,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Review*, No. 454/455, 1995.
- Mahmood, S.,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An Inequitable Data Protection Regime”,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Vol. 7, No. 2, 1995, p. 184.
- Palmer, MJ, “Strategic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Policing”, *Interpol: 75 Years of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London : Kensington Publications Ltd, 1998).
- Valleix, C., “Interpol”,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Review*, Number 469/471, 1998.
- Wyngaert v. d. C, and Guy S.,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in the European Union”, in Dugard, J., & C. v. d. Wyngaert(ed.),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Procedure*(Aldershot · Brookfield USA · Singapore · Sydney : Dartmouth, 1996).
- Zein, S.I El., “Striving Towards Common Goals: Can European Organizations Works Together?”, *Interpol: 75 Years of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London : Kensington Publications Ltd, 1998).

3. 인터폴 사무총국의 보고서

- ICPO-Interpol General Secretariat, *Red Notice*, 15th -21st October(No. 8) 1997.
- _____, *Report on the Legal Status of Red Notices*, October 1997.
- _____, *Report on the Legal Value of Red Notices and the New System*, 22nd-27th October(No. 15) 1998.

4. 국제조약, 국내법 및 기타 문서

- 경찰부분에서 개인자료 사용을 규율하는 1987년 9월 17일 유럽장관위원회의 권고
- 고문방지협약
- 구 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임시재판소 규정
- 국가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 국제경찰협력 및 인터폴 문서의 내부통제에 관한 규칙
- 국제보통범죄에 관한 아세안선언
-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UN협약
-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대한민국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
- 국제형사재판소규정
- 대한민국 경찰청과 일본국 경찰청간의 경찰업무 협력에 관한 협의문
- 대한민국 경찰청과 러시아연방 내무부간의 협력에 관한 약정서
- 대한민국 경찰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대한민국과 몽골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대한민국과 과라과이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독일연방데이터보호법
- 르완다국제형사임시재판소 규정
- 멕시코와 프랑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미국과 이탈리아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범죄인인도법
- 범죄인인도에 관한 미주협약
- 범죄인인도조약에 관한 유럽협약
- 베네룩스 3국간의 형사문제에 있어서 범죄인인도 및 사범공조에 관한 조약
- 비정부간기구의 법인격 승인에 관한 유럽협약
- 사무총국이 보유한 경찰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칙
-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
-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 회원국간의 범죄인인도 협약
- 영국의 데이터보호법
- 영연방국가간 도피사범인도에 관한 약정
- 유럽연합조약
- 유럽폴협약
-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인터폴간의 협력을 위한 특별약정
- 유엔과 인터폴간의 협력협정
- 유엔과 인터폴간의 협력을 위한 특별협정
- 유엔헌장
- 유엔해양법협약
- 인도에 반한 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한 시효불적용에 관한 유럽협약
- 인터폴이 보유한 문서의 내부 통제기구에 관한 교환문서
- 인터폴본부와 그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인터폴과 프랑스정부간의 협정
- 인터폴 사무총국의 선택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및 NCB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직접 접근을 규율하는 규칙
- 인터폴헌장 및 일반규정
- 일본도망범죄인인도법
- 1949년 제네바 제1협약

- 1981년 1월 28일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에 관한 개인 보호에 관한 유럽이사회의 협약
- 1985년 쉐겐협약
- 1990년 쉐겐이행협약
-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에 대한 시효불적용에 관한 협약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 집단살해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 출입국관리법
- 캐나다와 프랑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테러자금조달 억제협약
- 폭탄테러 억제협약
- 프랑스범죄인인도법
- 프랑스와 오스트레일리아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프랑스에서 인터폴 본부 및 인터폴의 특권면제에 관한 인터폴과 프랑스정부간의 협정
- 형법
-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
- 형사소송법
- 해외주재관업무처리규칙

5. 유럽연합 관련 Official Journal

- OJ C 26, 30.01/1999, pp. 10-16.
- OJ C 86, 16/03/2001, p. 1.
- OJ C 358, 13/12/2000, pp. 2-7.
- OJ L 271, 24/10/2000, pp. 1-3.



6. 인터폴 및 UN관련 자료

- Resolution No AGN/53/Res/7
- Resolution No AGN/54/Res/1
- Resolution No AGN/63/Res/9

- Resolution No AGN/65/Res/11
- Resolution No AGN/66/Res/7
- Resolution No AGN/66/Res/10
- Resolution No AGN/68/Res/5
- Resolution No AGN/69/Res/11
- Resolution No AG-2001-Res-02
- UN경제사회이사회 결의 E/Res/1579(L)
- UN 총회 A/Res/51/1
- 적색수배서 : Control No. A-518/7-1999, File No. : 1999/29606
 : Control No. A-326/4-2000, File No. : 1998/20232
 : Control No. A-405/5-2000, File No. : 2000/18681
 : Control No. A-148/3-2001, File No. : 2001/10335

7. Website

- <http://www.cm.coe.int/>
- <http://www.coe.int/>
- <http://www.europol.eu.int/>
- <http://www.ili.co.uk/>
- <http://www.interpol.int/>
- <http://www.lawtel.co.uk/>
- <http://www.lexis.com>
- <http://www.mofat.go.kr>
- <http://www.un.org/documents>
- <http://www.un.org/English/treaty.asp>
- <http://www.un.org/icc>
- <http://www.un.org/icty>
- <http://www.westlaw.com>
- <http://www.wipo.org>

Red notice application fo...

Fugitive wanted to serve a sentence or for prosecution

May be used for text transmission. Please indicate "TEXT" under Requesting country.

[Home](#) [Identity Particulars](#) [Judicial Information](#) [Fugitive wanted to serve a sentence](#) [Fugitive wanted for prosecution](#) [Actions to be taken if traced](#) [Statistics](#)

Circulation to the media (including Internet) Yes No

Home > Notices > 24

NOTICE

Requesting country:

Information concerning a:

Fugitive wanted to serve a sentence
 Fugitive wanted for prosecution

Home > Identity Particulars > 24

1 - IDENTITY PARTICULARS

Photographs	<input type="button" value="Photographs"/>																								
Fingerprints	<input type="button" value="Fingerprints"/>																								
Caution	This person may be: <input type="checkbox"/> Violent <input type="checkbox"/> Infectious <input type="checkbox"/> Mentally ill <input type="checkbox"/> Suicidal <input type="checkbox"/> Addicted to drugs <input type="checkbox"/> Armed <input type="checkbox"/> Dangerous Other <input type="text"/>																								
1.1 Present family name	<input type="text"/>																								
1.2 Family name at birth	<input type="text"/>																								
1.3 Forenames	<input type="text"/>																								
1.4 Sex	<input type="checkbox"/> Male <input type="checkbox"/> Female																								
1.5 Date and place of birth	Date (dd/mm/yyy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Place (Town, country) <input type="text"/>																								
1.6 Also known as	<input type="text"/>																								
1.7 Other dates of birth	<input type="text"/>																								
1.8 Father's family name and forenames	<input type="text"/>																								
1.9 Mother's maiden name and forenames	<input type="text"/>																								
1.10 Identity	<input type="checkbox"/> Confirmed <input type="checkbox"/> Not confirmed																								
1.11 Nationality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Confirmed <input type="checkbox"/> Not confirmed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Confirmed <input type="checkbox"/> Not confirmed <input type="checkbox"/> Confirmed <input type="checkbox"/> Not confirmed																								
1.12 Identity documents	Document 1 <table style="width: 100%;"> <tr> <td>Type</td><td><input type="text"/></td> <td>Number</td><td><input type="text"/></td> </tr> <tr> <td>Date of issuance (dd/mm/yyyy)</td><td><input type="text"/></td> <td>Place of issuance</td><td><input type="text"/></td> </tr> <tr> <td>Expiry date (dd/mm/yyyy)</td><td><input type="text"/></td> <td></td><td></td> </tr> </table> Document 2 <table style="width: 100%;"> <tr> <td>Type</td><td><input type="text"/></td> <td>Number</td><td><input type="text"/></td> </tr> <tr> <td>Date of issuance (dd/mm/yyyy)</td><td><input type="text"/></td> <td>Place of issuance</td><td><input type="text"/></td> </tr> <tr> <td>Expiry date (dd/mm/yyyy)</td><td><input type="text"/></td> <td></td><td></td> </tr> </table>	Type	<input type="text"/>	Number	<input type="text"/>	Date of issuance (dd/mm/yyyy)	<input type="text"/>	Place of issuance	<input type="text"/>	Expiry date (dd/mm/yyyy)	<input type="text"/>			Type	<input type="text"/>	Number	<input type="text"/>	Date of issuance (dd/mm/yyyy)	<input type="text"/>	Place of issuance	<input type="text"/>	Expiry date (dd/mm/yyyy)	<input type="text"/>		
Type	<input type="text"/>	Number	<input type="text"/>																						
Date of issuance (dd/mm/yyyy)	<input type="text"/>	Place of issuance	<input type="text"/>																						
Expiry date (dd/mm/yyyy)	<input type="text"/>																								
Type	<input type="text"/>	Number	<input type="text"/>																						
Date of issuance (dd/mm/yyyy)	<input type="text"/>	Place of issuance	<input type="text"/>																						
Expiry date (dd/mm/yyyy)	<input type="text"/>																								

1.13 Occupation (Skills, professional qualifications, etc.)		
1.14 Languages spoken	Usual <input type="text"/>	Others <input type="text"/>
1.15 Description	Height (cm) <input type="text"/>	Hair <input type="text"/>
	Weight (kg) <input type="text"/>	Eyes <input type="text"/>
	Build <input type="text"/>	
1.16 Distinguishing marks and characteristics (Scars, tattoos, deformities, amputations, etc.)		
1.17 DNA Code		
1.18 Regions/Countries likely to be visited		
1.19 Additional information (Date and place of previous criminal activities, etc.)		

2 - JUDICIAL INFORMATION			
2.1 Facts of the case (Events, date, place, circumstances, modus operandi, etc.)	Date (dd/mm/yyyy)	<input type="text"/>	
	Place (Town, country)	<input type="text"/>	
	Summary	<input type="text"/>	
2.2 Accomplices	Family name	Forenames	Date of birth (dd/mm/yyy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Comments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More accomplices"/>	

FUGITIVE, WANTED TO SERVE A SENTENCE	
2.3 Charge on which convicted	<input type="text"/>
2.4 Law covering the offence (Article, section, etc.)	<input type="text"/>
2.5 Sentence imposed	<input type="text"/>
Remainder of sentence to be served	<input type="text"/>
2.6 Time-limit for enforcement	<input type="text"/>
2.7 Conviction/Sentence (Number, date and place of issuance, issuing or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input type="text"/>
2.8 Name of signatory	<input type="text"/>
	Record of conviction/sentence available at the General Secretariat in the language used by the requesting country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button" value="Documents"/>

FUGITIVE WANTED FOR PROSECUTION		Fugitive wanted to serve a sentence	Action to be taken if traced	Top
2.3	Charge			
2.4	Law covering the offence (Article, section, etc.)			
2.5	Maximum penalty possible			
2.6	Time-limit for prosecution or expiry date of arrest warrant			
2.7	Arrest warrant (Number, date and place of issuance, issuing or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2.8	Name of signatory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Copy of arrest warrant available at the General Secretariat in the language used by the requesting country		
<input type="button" value="Documents"/>				
3 - ACTION TO BE TAKEN IF TRACED		Fugitive wanted for prosecution	Signature	Top
3.1	Immediately inform INTERPOL [] (Reference [] of []/[]/[] (MM/DD/YYYY)) and the ICPO-INTERPOL General Secretariat that the fugitive has been found.			
3.2	For countries which consider red notices to be valid requests for provisional arrest, please provisionally arrest the fugitive. In this connection, please state whether your country is a party to one of the following Conventions: <input type="checkbox"/> For countries party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 this red notice is equivalent to the request for provisional arrest referred to in Article 16. <input type="checkbox"/> For countries party to the Arab Convention on Mutual Assistance in Legal Matters, this red notice is equivalent to the request for provisional arrest referred to in Article 43. <input type="checkbox"/> For countries party to the Convention on Extradition concluded by the member of ECOWAS, this red notice is equivalent to the request for provisional arrest referred to in Article 22.			
<input type="checkbox"/> EXTRADITION WILL BE REQUESTED FROM ANY COUNTRY WITH WHICH THE REQUESTING COUNTRY IS LINKED BY A BILATERAL EXTRADITION TREATY, AN EXTRADITION CONVENTION OR BY ANY OTHER CONVENTION OR TREATY CONTAINING PROVISIONS ON EXTRADITION.				
<input type="checkbox"/> EXTRADITION WILL BE REQUESTED FROM ANY COUNTRY WITH WHICH THE REQUESTING COUNTRY IS LINKED BY A BILATERAL EXTRADITION TREATY, AN EXTRADITION CONVENTION OR BY ANY OTHER CONVENTION OR TREATY CONTAINING PROVISIONS ON EXTRADITION, WITH THE EXCEPTION OF THE FOLLOWING COUNTRIES []				
<input type="checkbox"/> EXTRADITION WILL BE REQUESTED FROM ANY COUNTRY WITH WHICH THE REQUESTING COUNTRY IS LINKED BY A BILATERAL EXTRADITION TREATY, AN EXTRADITION CONVENTION OR BY ANY OTHER CONVENTION OR TREATY CONTAINING PROVISIONS ON EXTRADITION, AND ALSO FROM THE FOLLOWING COUNTRIES []				
SIGNATURE		Address to be taken if traced		
Address of the requesting NCB (Telephone and fax numbers)				
[]				
Name of the Officer in charge of this matter				
[]				
E-mail address (necessary for confirmation of receipt)				
[]				
<input type="button" value="Get a local copy"/> <input type="button" value="Validate"/> <input type="button" value="Cancel"/>				

※ p. 562 상단 오른쪽에 있는 적색수배서 마크가 적색으로 인쇄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